

한국정치사상학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동서양 외교개념사 연구



- ▣ 일시 : 2022년 5월 21일(토), 14:00
- ▣ 장소 : 국립외교원 외교타운 12층 KNDA홀
- ▣ 주최 : (사)한국정치사상학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한국정치사상학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동서양 외교개념사 연구>>

[제1부 :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 관념]

□ 좌장: 이화용(경희대)

■ 제1발표

장현근(용인대) “중국 춘추전국시대 외교 개념 및 외교 사상의 전개:
존왕양이에서 합종연횡으로”

■ 제2발표

윤대식(한국외대) “조선의 외교 관념”

■ 제3발표

송완범(고려대) “일본 고 · 중세의 ‘외교사’: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을 중심
소재로”

■ 토론

안효성(대구대), 송재혁(고려대), 김태진(동국대)

[제2부 : 근대 서구의 외교 관념]

□ 좌장: 이화용(경희대)

■ 제1발표

오영달(충남대)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전후 근대유럽 외교개념의 등장과
변천”

■ 제2발표

최형익(한신대)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 불간섭, 중립, 비동맹 개념
을 중심으로”

■ 토론

강진옥(성균관대), 김주형(서울대)

제 1 부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 관념

장현근(용인대)

“중국 춘추전국시대 외교 개념 및 외교 사상의 전개:
존왕양이에서 합종연횡으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외교 개념 및 외교 사상의 전개: 존왕양이(尊王攘夷)에서 합종연횡(合縱連橫)으로

장현근(용인대학교)

1. 서론

현대 국제정치 관련 개념과 고대 중국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늘날 통용되는 ‘외교(diplomacy)’라는 개념은 중국 고대의 ‘外交’와는 약간 다르다. 한자어 뜻으로야 안[內]의 반대어로서 밖을 뜻하는 외(外)와 상호 왕래와 연계를 뜻하는 교(交)의 결합어이므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중국의 문헌을 보면 『국어(國語)』 「진어(晉語) 8」의 ‘外交’ 용례처럼 국(國)들 사이의 왕래를 뜻하기도 하지만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예기(禮記)』, 『한비자(韓非子)』 등 여러 문헌에 따르면 ‘외교’를 천자의 명령 없이 사사로이 제후들을 만나는 것, 사적으로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모사를 꾸미는 것 등 부정적 인식을 함유하고 있어 국가 간 교류와 교섭을 뜻하는 오늘날의 diplomacy와 관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과거 중국 외교 관련 연구 경향을 보면 중국 고대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춘추전국시대에만 외교 관련 법이 존재하였다는 주장, 중국 고대 어느 시기든 국제법이 존재하였다는 주장 등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李澤民 2016). 중국 고대 외교 관련 관념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지만 중국과 일본에선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외교 관련 연구가 늘어나면서 중국 고대 외교 관념, 정책, 제도, 사례 등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서경』 「대우모(大禹謨)」 편에 “사이(四夷)가 王에게 조회를 온다.”¹⁾라고 한다. 춘추전국 이전 중원지역에 존재했던 서주 왕조의 천자는 천하공주(天下共主)로서 조빙(朝聘)과 예의(禮儀) 제도를 갖추었고 천하 관념, 책봉, 조공 제도 등으로 이민족 국가와 교섭하였지만 독립된 외국과의 교섭이라고 보긴 어렵다. 춘추시대엔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명분으로 회맹(會盟)과 쟁패(爭霸)의 국제관계를 수행했으며, 기본적으로는 가국(家國)이 일체화된 독립된 국가체계를 가지고 외교교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²⁾ 外交란 말 외에 방교(邦交)란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주례(周禮)』엔 행인(行人)이란 외교 전문 관직이 존재했으며 각국은 구속력 있는 외교 관련 증서, 원칙, 규정 등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한 의미의 독립 국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진 전국시대에 이르면 존왕양이의 명분은 사라지고 전쟁의 억지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종 외교 관련 관념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 제

1) 四夷來王. 이 「대우모(大禹謨)」 편이 후대의 위서인 『고문상서』에 들어있으므로 춘추 이전의 관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금문상서』와 『시경』에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

2) 보통 1648년의 베스트팔렌조약을 기점으로 현대적 의미의 국가 관념과 주권 개념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중국 내 연구자들은 다른 견해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예즈칭(葉自成)은 「중국 춘추전국 시기의 외교 사상 유파 및 서양과의 비교」라는 글에서 춘추전국시대 각 제후국들은 대부분 독립된 주권 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면서 독립된 정치권력, 상대적으로 명확한 영토와 인구, 독립된 내정 및 외교정책의 결정과 처리, 명확한 국가관계 원칙 작성 및 상호 승인을 예로 든다. 그리하여 서양의 체계보다 일찍 화하(華夏) 체계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葉自成 2001, 24).

자백가의 활동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도(道), 예(禮), 신(信) 등 외교 규범이 강조되었고 유세를 통해 외교적 책략을 실천하는 종횡가(縱橫家)가 나타났다. 유가의 도덕주의, 도가의 자연주의, 묵가의 공리주의, 법가의 실력주의 등은 당시 국제관계 및 외교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사상적 논의를 제공해준다. 강대국을 중심에 두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소진(蘇秦)의 합종(合縱)과 장의(張儀)의 연횡(連橫)은 진나라의 천하통일이 있기 직전까지 외교 전략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고대 중국의 정치와 국가 관련 연구에 현대, 특히 서구정치학의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로 중국 안과 밖의 중국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정치의 특색을 찾기 위한 탐색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관계와 외교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의 독자적인 정치 전통에 기반을 둔 국제관계 또는 외교 사상 등을 탐구하고 있으며(王博 2015, 李澤民 2016 등), 어떤 학자들은 현대 국제정치학에 기반을 두고 중국 고대 국제관계 또는 외교의 성취를 연결한다(李璞·王林敏 2006, 판보싱·김태형 2015 등). 그러한 연구들이 중국굴기(中國崛起)를 표방한 시진핑(習近平) 정권 이후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고대 정치사상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오랜 경험이 깔려 있어서 이를 국제관계 혹은 외교의 영역에 접목한다면 ‘최근 현상’이 가져오는 기초의 부재라는 오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중국 고대 정치사상에 기반을 두고 외교를 바라보는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 글 또한 시론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프로젝트 전체가 동서양 고금의 문제를 고루 다루고 있어 이 글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발표로 보완할 수 있고, 또 시기를 ‘춘추전국’에 한정하면, 이 시기가 유럽 근현대시기와 유사하다는 연구 성과들이 더러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 관련 연구를 이끌어가는 학자는 베이징대학의 예즈청(葉自成) 교수이다(특히 葉自成 2001, 2003, 2006). 이들 선행연구 가운데, 예컨대 “유럽 각국은 로마교황청을 최고권위로 받들며,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독교 국가이며, 세속 국가 자체는 세속적 사무에 대한 통치권만 가지고 있었다. 그 국가형태의 완성성은 춘추시대의 제후국만 못하였다.”(李璞·王林敏 2006, 21) 등 과도한 중국 중심주의 지향성은 배제하고, 동맹을 다루면서 춘추시대 회맹(會盟)을 언급하지 않은 판보싱·김태형(2016)의 연구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무미(李無未)의 『주대조빙제도연구(周代朝聘制度研究)』(2005)는 춘추전국시대 조빙(朝聘) 제도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이다.

이 글이 주된 관심은 춘추전국시대에 어떤 외교 관련 개념들이 있었으며, 국제관계를 둘러싸고 제자백가는 어떤 정치사상적 지향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외교의 지향점이 춘추시대엔 화합의 숭상과 존왕양이(尊王攘夷)가 주된 사상적 경향이었다면, 전국시대로 넘어오면서 현실주의 힘의 정치가 중시되면서 합종연횡(合從連橫)의 실력주의와 권모술수의 외교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 현대 국제정치학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접목해서 중국 고대 외교 사상을 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2. 춘추시대의 외교 이상주의: 존왕양이(尊王攘夷)

주(周)나라는 천하를 71개로 나누어 53개 국(國)엔 희(姬)성의 인척을 제후로 봉하고(『荀子』 「儒效」 편)³⁾, 나머지는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였으며, 이를 조회(朝會), 책봉(冊封) 등 수단으로 통제한 것이 봉건(封建) 정책이었다. 적장자가 종주(宗主)가 되어 권력 및 가산을 이어받고 지

차들은 종주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소종(小宗) 위의 가장 높은 대종(大宗)을 주 왕실로 삼는 종법(宗法) 제도 또한 봉건과 함께 주나라를 지탱한 핵심 기재였다. 그런데 건국 후 3백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가족 관계를 따질 수 없게 됨으로써 종법제도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은 실력을 기르면서 약한 나라를 겸병함으로써 봉건질서가 무너졌다. 왕실의 권위는 사라지고 마침내 서융(西戎)을 끌어들이는 정변으로 주나라 12대 유왕(幽王)이 살해당하였다. 이어 즉위한 평왕(平王)은 융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B.C.770년 수도를 호경(鎬京, 현 시안부근)에서 동쪽으로 4백 킬로미터 쯤 떨어진 낙읍(洛邑, 현 뤼양)으로 옮김으로써 춘추시대가 열렸다.

동주와 서주를 가르는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는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⁴⁾(『논어』「季氏」편)

예(禮)란 인간사회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절제’의 규범이고, 악(樂)은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화합’의 상징이다. 『예기』「명당위(明堂位)」편에는 주공(周公)이 섭정 6년 만에 제례작악(制禮作樂)하여 천하의 제후들을 명당의 조회에 들게 하였다고 한다.⁵⁾ 한편, 정벌(征伐)의 征은 천자의 명령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어떤 제후국을 치는 것을 말하고, 伐은 정의의 이름하에 제후들이 동원되어 다른 제후국을 치는 것을 말한다. 『맹자』「진심 하」편에 따르면 征은 위에서 아래를 치는 것으로 적국과의 전쟁행위는 征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장현근 옮김 2019, 615) 다시 말해 서주 초기엔 사회문화적 제도와 일체의 전쟁행위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동주시대에 이르러 제후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제후국끼리의 독자적 외교를 비판하며 3백년이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논어』「계씨」편) 그의 예측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공자의 말을 통해 춘추시대 국가관계가 근대 유럽의 국제관계와 유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성립 시기를 둘러싼 문제는 있지만 주나라 초 정치제도의 기본을 담고 있는 『주례(周禮) 또는 周官』를 통해 당시 국가들 간 외교의 개념 및 전례를 살펴볼 수 있다. 「추관사구(秋官司寇)·대행인(大行人)」편의 몇 가지 내용을 보자:

“대행인⁶⁾은 대빈(大賓)의 예절 및 대객(大客)의 위의를 관장함으로써 제후들과 친하게 지내는 역할을 한다. 봄에 제후들이 조회에 들면[春朝] 천하의 일을 도모하고, 가을에 배알하러 오면[秋覲] 방국의 공로를 비교하고, 여름에 찾아오면[夏宗] 천하의 계책을 펼치고, 겨울에 만나면[冬遇] 제후들의 생각을 합치시킨다. 때맞춘 회합[時會]으로 사방의 금기를 발표하고, 함께 천자를 배알함[殷同]으로써 천하의 정치를 시행하고, 때맞춘 방문을 통해 제후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성대한 알현으로 방국들의 사특함을 제거하고, 격년 문후를 통해 제후들의 뜻을 깨우쳐주고, 제사 고기를 보냄으로써 제후들의 복을 나누게 하고, 경사를 축하함으로써 제후들의 기쁨을 찬양하고, 푸닥거리 재물을 보냄으로써 제후들의 재

3) 兼制天下，立七十一國，姬姓獨居五十三人。

4) 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

5) 六年，朝諸侯於明堂，制禮作樂，頒度量，而天下大服。『일주서(逸周書)』「명당해(明堂解)」편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며, 주공이 세운 제도라고 한다.

6) 대행인(大行人)은 외빈 접대와 국제외교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에서 외교부 차관(또는 그 이상) 정도로 생각된다. 한 대에 대행령(大行令)으로 쓰이다 조금 지나 대홍려(大鴻臚)로 바뀌는데 이 때는 권력서열이 더 높아져 외교부장관 정도로 보인다.

양극복을 도와준다.”⁷⁾

“나라의 기내(畿內)는 사방 천리로 한다. 그 바깥 사방 5백리는 후복(侯服)이라 부르고 1년에 한 번 알현하고, 제사 공물을 바친다. 또 그 바깥 사방 5백리는 전복(甸服)이라 부르고 2년에 한 번 알현하고, 빈객 접대용 공물⁸⁾을 바친다. 또 그 바깥 사방 5백리는 남복(男服)이라 부르고 3년에 한 번 알현하고, 술그릇 등의 공물을 바친다. 또 그 바깥 사방 5백리는 채복(采服)이라 부르고 4년에 한 번 알현하고, 의복 등의 공물을 바친다. 또 그 바깥 사방 5백리는 위복(衛服)이라 부르고 5년에 한 번 알현하고, 목재 등의 공물을 바친다. 또 그 바깥 사방 5백리는 요복(要服)이라 부르고 6년에 한 번 알현하고, 재화로 공물을 바친다. 9주의 바깥은 번국(蕃國)이라 부르고, 1세대(30년)에 한 번 알현하고, 각자 사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배를 들고 온다.”⁹⁾

“왕이 방국 제후를 위무하는 바는 매년 두루 안부를 묻는다[存]. 3년마다 두루 알현토록 한다[覲]. 5년마다 두루 돌아보게 한다[省]. 7년마다 통역관(象胥)을 모아 왕의 언어를 깨우쳐주고, 외교사령(辭命)을 따르게 한다. 9년마다 악사와 사관을 모아 문서이름을 깨우쳐주고, 음악을 들려준다. 11년마다 부절을 통하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희생물을 갖춘 제례를 이루게 하고, 수지와 그릇을 동일하게 하고, 법칙을 보수토록 한다. 12년마다 왕이 직접 순수(巡守)하며 제후국에서 친견을 한다.”¹⁰⁾

「추관사구·소행인(小行人)」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소행인¹¹⁾은 방국 빈객의 예절과 문서들을 관장하여 사방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대한다. 제후들로 하여금 봄에 공물을 들이고 가을에 공적조서를 올리게 한다. 왕이 친히 그것을 받아 각자 그 나라의 문건으로 만들어 예우한다. …… 사방에서 온 사자 중 큰 손님은 왕에게 인도하고, 작은 손님이면 폐물을 받고 그의 건의사항을 왕에게 들려준다. 사자를 사방에 보낼 때는 아홉 가지 행동규범[九儀]으로 빈객의 예절을 맞춘다. 조(朝)·근(覲)·종(宗)·우(遇)·회(會)·동(同)은 군주의 예절이며, 존(存)·조(覲)·성(省)·빙(聘)·문(問)은 신하의 예절이다.”¹²⁾

『주례』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매우 세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외교 담당부서인 「대행인」편과 「소행인」편만 보더라도 수행원의 숫자에서부터 가지고 가야할 예물의 구체적 재

7) 大行人：掌大賓之禮及大客之儀，以親諸侯。春朝諸侯而圖天下之事，秋覲以比邦國之功，夏宗以陳天下之謀，冬遇以協諸侯之慮。時會以發四方之禁，殷同以施天下之政；時聘以結諸侯之好，殷覲以除邦國之慝；問問以諭諸侯之志，歸賑以交諸侯之福，賀慶以贊諸侯之喜，致禴以補諸侯之災。

8) 제후가 왕에게 바치는 빈객 접대용 공물은 주로 명주나 삼베 등 여성들이 생산한 물품이었다.

9) 邦畿方千里，其外方五百里謂之侯服，歲壹見，其貢祀物。又其外方五百里謂之甸服，二歲壹見，其貢嬪物。又其外方五百里謂之男服，三歲壹見，其貢器物。又其外方五百里謂之采服，四歲壹見，其貢服物。又其外方五百里謂之衛服，五歲壹見，其貢材物。又其外方五百里謂之要服，六歲壹見，其貢貨物。九州之外謂之蕃國，世壹見，各以其所貴實為摯。

10) 王之所以撫邦國諸侯者，歲遍存，三歲遍覲，五歲遍省；七歲，屬象胥、諡言語、協辭命；九歲，屬瞽史、諡書名、聽聲音；十有一歲，達瑞節、同度量、成牢禮、同數器、修法則；十有二歲，王巡守、殷國。

11) 소행인(小行人)은 대행인의 아래 직무로 『주례』엔 하대부(下大夫) 4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날 직제로 보면 외교부 의전장 등 차관보급(또는 실·국장)에 해당된다.

12) 小行人：掌邦國賓客之禮籍，以待四方之使者。令諸侯春入貢，秋獻功；王親受之，各以其國之籍禮之。……凡四方之使者，大客則摯，小客則受其幣而聽其辭。使適四方，協九儀賓客之禮。朝、覲、宗、遇、會、同，君之禮也。存、覲、省、聘、問，臣之禮也。

료까지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³⁾ 위의 짧은 인용만 살펴보더라도 무수한 외교관련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어에 능통한 재능 있는 통역을 뜻하는 상서(象胥¹⁴⁾), 여러 나라들 간 외교사절의 방문과 응대를 뜻하는 사명(辭命), 외교문서의 공통된 표준 양식을 뜻하는 서명(書名), 외교 방문 신임장 또는 아그레망에 해당하는 서절(瑞節¹⁵⁾), 외교 사절에 대한 외교 공관의 연회를 뜻하는 뇌례(牢禮¹⁶⁾) 등이 보인다. 마치 영국 여왕이 영연방국의 수뇌부를 친견하는 예와 비슷한 은국(殷國¹⁷⁾), 수교를 맺은 나라들끼리 축하사절을 보내는 한문(閒問¹⁸⁾), 국가적 재난이 있는 나라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과 유사한 치회(致禮)¹⁹⁾,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른 후 수교국에 선물을 돌리는 행사와 유사한 귀신(歸賑²⁰⁾) 등도 보인다. 그밖에 고대 중국외교에 공식적으로 쓰인 특별한 용어들, 예컨대 천자를 알현하는 명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기 달랐으며 천하의 정치를 모여서 함께 논의한 회동(會同)도 있다. 조근(朝覲)이나 회동은 오늘날에도 쓰이는 용어이다.

제후국들 상호관계는 어떠했는가? 『주례』「추관사구·대행인」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후들끼리의 방교(邦交)는 1년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일이 있으면 서로 방문을 하고, 세대가 바뀌면 서로 알현을 한다.”²¹⁾

후한 정현(鄭玄)의 주석에 의하면 ‘세대가 바뀐다.’는 말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서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부자계승의 한 세대는 30년으로 본다. 즉 정권교체가 있으면 찾아가 알현을 한다는 뜻이다.

이상 서주시대에 쓰인 외교 관련 개념들의 의미를 종합하면 한 마디로 화합의 숭상임을 알 수 있다. 예약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오느냐, 천자에게서 나오느냐는 공자의 지적을 제외하면, 이 시기 국제관계의 대부분은 예상왕래(禮尚往來²²⁾) 즉 양보와 배려에 기초한 평화로운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예기』「곡례하(曲禮下)」편에 “최고는 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이 베풀고 보답에 힘쓰는 것이다. 예로 서로 왕래함을 숭상한다. 갖는데 오지 않으면 예가 아니고, 왔는데 가지 않으면 역시 예가 아니다. 사람에게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롭다.”²³⁾라고 한다. 이 시기 외교는 power politics가 아니라 천하의 화합을 목적으로 두고 덕과 예를 강조하는 일종의 harmony politics를 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13)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가 거의 없으며 중국 고대 외교의 구체적 사례 및 개념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도 없다. 구체적인 접근을 하려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글은 사상사에 입각하여 당시 외교 관념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이므로 더 상세한 분석은 잠시 보류하기로 한다. 참고로 중국의 연구로는 李冠云, 「古代的“外交” - 聘問之禮」(闕里書院發表, 2016.9.26.)에 매우 상세하다.

14) 상(象)은 이적의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란 뜻이고, 서(胥)는 재능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15) 옥으로 만든 증명서로 천자에게 조회를 오거나 방문을 할 때 신임을 받았다는 뜻으로 보이는 부절이다.

16) 뇌(牢)는 제사나 행사에 사용하는 희생물을 말하며, 여기서 뇌례는 소, 양, 돼지 세 가지 희생물로 외교 빈객에게 베푸는 연회의 예절을 뜻한다.

17) 주나라 천자가 제후국을 방문해서 행하는 친견례를 말한다.

18) 주나라 천자가 격년으로 제후국에 사자를 파견하여 제후들의 안녕을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난을 겪은 나라에 푸닥거리를 하여 벗어나라는 의미로 재물을 보내 위문하는 것을 말한다.

20)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를 지낸 뒤 거기에 쓰인 생고기를 제후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21) 凡諸侯之邦交，歲相問也，殷相聘也，世相朝也.

22) 미중관계가 한창 좋았던 2010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길은 달라도 궁극적 목적은 같다는 ‘수도동귀(殊途同歸)’를 얘기하자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부장은 소통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예상왕래(禮尚往來)’로 화답한 유명한 외교 사례가 있다.

23) 太上貴德，其次務施報。禮尚往來。往而不來，非禮也；來而不往，亦非禮也。人有禮則安，無禮則危.

춘추 시대 제후들은 정신적으로만 주 왕실에 충성하였을 뿐, 국가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독립 국가의 군주였다. 그들 사이에 행해진 일과 관념은 변화가 있었을 뿐 국제관계의 양상은 서주와 완전히 달라졌지만, 외교개념과 국가 간 관념 등은 여전히 서주시대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13년의 기록을 보자.

“명왕의 제도에 따르면 제후들로 하여금 매년 방문토록 하여 본업에 뜻을 두도록 하고, 3년이면 조회에 들어 예절을 강론케 하고, 두 번 조회 즉 6년이 되면 제후들을 회합시켜 위엄을 드러내고, 두 번 회합 즉 12년이 되면 맹약을 함으로써 천자의 밝은 덕을 드러나게 한다.”²⁴⁾

시기, 내용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춘추 이후 문헌들에 따르면 춘추시대 제후들이 인식하는 국제관계와 외교의 이상은 『주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호관계에 본업의 뜻을 두고, 등급에 맞추어 예를 강론하고, 다수 대중에게 위엄을 보이고, 신에게 밝은 덕을 드러나게 하는”²⁵⁾(『춘추좌전』 소공13년) 방법은 주나라 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기』 「왕제(王制)」편엔 이렇게 말한다.

“제후들은 천자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소빙(小聘)하고, 3년에 한 번 대빙(大聘)하며, 5년에 한 번 조(朝)한다. 천자는 5년에 한 번씩 제후국을 순행한다.”²⁶⁾

「왕제」편은 중국 땅을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 다섯 등급의 제후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떤 관직을 설치해 어떤 급으로 나누어주고, 작위에 합당한 능력은 무엇이고 어떤 제례와 예법을 수행해야 하는지, 예산과 국방과 외교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이다. 내용 중의 구체적인 숫자는 『주례』나 『춘추좌전』 등과 일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담고 있는 이상은 큰 차이가 없다. “천자가 특별한 사건에 관계없이 제후와 상견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예를 자세히 살피고 형벌을 바로잡고 덕을 일치시키는데, 이로써 천자를 드높이는 것이다.”²⁷⁾(『예기』 「왕제」편) 바로 왕실을 존중하고 천하를 화합시키며 덕과 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외교행위 또한 ‘왕실 존중’, ‘화합 숭상’, ‘덕과 예’라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현은 소빙(小聘) 즉 작은 방문은 차관(또는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대부(大夫)를 사신으로 보내고, 대빙(大聘) 즉 큰 방문은 장관급인 경(卿)을 사신으로 보내며, 조(朝)는 군주가 직접 조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석하였다. 정현은 덧붙여서 대빙과 조는 춘추오패 중 하나인 진문공(晉文公) 때 만들어진 제도라 하는데, 춘추시대 일반 제후들이 패자를 찾아뵈는 것을 조빙(朝聘)이라 부른 사례를 보면 일리가 있으나, 서주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주의 제도를 춘추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하다.

춘추시대 외교의 대원칙은 주 왕실을 드높이고 주변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존왕양이(尊王攘夷)’였다. 첸무(錢穆)는 관중(管仲)의 패업을 평가하면서 “패자는 정의를 표방했는데 크게 넷으로 나뉜다: 하나는 존왕(尊王)이고, 둘은 양이(攘夷)고, 셋은 권력 찬탈 및 시해 금지이다. 어느 나라에 왕위 찬탈이나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동맹국들이 서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면 출병해

24) 明王之制，使諸侯歲聘以志業，間朝以講禮，再朝而會以示威，再會而盟以顯昭明，

25) 志業於好，講禮於等，示威於眾，昭明於神，

26) 諸侯之於天子也，比年一小聘，三年一大聘，五年一朝。天子五年一巡守。

27) 天子無事與諸侯相見曰朝，考禮正刑一德，以尊于天子。

난을 평정하고 별도의 새 군주를 세운다. 넷은 검병에 대한 제재이다. 동맹국끼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다툼의 기미가 있으면 맹주의 공적 판단을 요청한다. 어느 나라가 외부 오랑캐의 공격을 받으면 동맹 국가들이 출병하여 구제한다.”(錢穆 1996, 53)라고 하였다.

춘추시대 국제법규범은 제후국들이 회맹(會盟)하고 맹주가 주도하여 공포한 맹약(盟約)이었다. 제후국 간 회합의 외교형태는 크게 의상지회(衣裳之會)와 병거지회(兵車之會) 두 가지였다. 의상지회는 화려한 의례용 의상을 입고 모이는 비군사적 모임이고, 병거지회는 군대를 동원한 무력시위의 모임이다. ‘일광천하(一匡天下), 구합제후(九合諸侯)’로 알려진 제 환공의 회맹은 사실상 15차례 열렸는데, “의상지회가 11차례였으며 삼혈(歃血)의 맹약은 없었다. ……병거지회는 4차례였으며 전쟁이 발생하진 않았다.”²⁸⁾(『春秋穀梁傳』莊公27년) 의상지회든 병거지회든 제나라는 맹주의 신분으로 제후들을 호령하였으며, 회맹의 목적은 현대어로 국제간 행위규범과 분쟁해결 협조 기제를 만듦으로써 국제간 장기적 평화를 실현하고 천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춘추시대 제나라가 주재한 회맹은 현대의 국제연합과 매우 비슷하게 그 목적이 장기적인 국제평화 기제를 건립하는 데 있었다.”(李璞·王林敏 2006, 22)

그 구체적인 국제법 사례는 제환공의 규구지회(葵丘之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춘추곡량전』 희공(僖公)9년에는 회맹맹약의 내용으로 “물길을 막지 말 것, 곡식을 사들이지 말 것, 적장자를 바꾸지 말 것, 첩으로 아내를 삼지 말 것, 부인이 나랏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²⁹⁾을 말한다. 맹자는 이에 대해 다섯 가지 명령이란 뜻의 오명(五命)으로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패 중 환공이 가장 강성했다. 규구에서 제후들을 회맹하면서 희생물을 묶고 문서로 서약하였으나 삼혈을 하지 않았다. 초명(初命)은 ‘불효자를 주벌하고, 왕위를 계승할 적장자를 바꾸지 말고, 첩을 본처로 삼지 않는’ 것이다. 2명은 ‘어질고 재능 있는 인물을 높이고 키워서 유덕한 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3명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를 보살피며 외국 여행객을 잊지 않는’ 것이다. 4명은 ‘사(士)는 세습관료를 시키지 않고, 관직의 겸직을 없애며, 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얻도록 하며, 대부분을 마음대로 죽이지 않는’ 것이다. 5명은 ‘그릇된 제방을 쌓지 말고, 재난지역 곡식을 사들이지 말고, 봉지를 주면서 왕실에 알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³⁰⁾(『맹자』「告子下」편)

그런 동맹을 맺은 후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우호관계로 돌아가야 하는데, 맹자 당시 제후들은 이 다섯 가지 금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춘추오패만도 못하다고 맹자는 비판하였다. 전국시대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다. 어쨌든 이 얘기만 보자면 쿠데타 등 정통성을 결여한 권력쟁탈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사회복지 및 여행객 안전 등에 대한 국제적 보장, 재난이 발생한 나라의 식량 안보 지켜주기, 수자원을 공유한 나라들끼리 자원무기화를 하지 않을 것 등 오늘날에도 본받을만한 조항이 대부분이다(李璞·王林敏 2006, 21).

이렇게 춘추시대 국제관계 및 외교는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화합의 숭상과 상대국 배려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물론 실제로 춘추시대 제후국 군주가 주 왕을 조현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노(魯)나라 군주가 주 왕을 조현한 것은 두 번이었고, 패자 제환공(齊桓公)은 한

28) 衣裳之會十有一，未嘗有歃血之盟也，……兵車之會有四，未嘗有大戰也。

29) 毋雍泉，毋訖糴，毋易樹子，毋以妾為妻，毋使婦人與國事！

30) 五霸，桓公為盛。葵丘之會諸侯，束牲載書而不歃血。初命曰：‘誅不孝，無易樹子，無以妾為妻。’再命曰：‘尊賢育才，以彰有德。’三命曰：‘敬老慈幼，無忘賓旅。’四命曰：‘士無世官，官事無攝，取士必得，無專殺大夫。’五命曰：‘無曲防，無遏糴，無有封而不告。’

번도 주 왕실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규모 제후들이 패자를 조현(朝見)하거나 빙문(聘問)하는 일이 훨씬 잦았다. B.C.545년 6국 군주가 패자 진문공을 공동으로 조현하였고, 노 군주는 진문공을 12차례나 빙문하였다. 이들의 빙문은 서주처럼 예법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국가안보를 위한 심리적 압박과 국제관계의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후왕박래(厚往薄來) 즉 작은 공물을 가져오면 많은 답례품을 하사한 서주의 전통이 지켜진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춘추시대는 ‘제후국들 간 맹약’ 등 이상주의 깃발 아래 강제성을 띤 평화의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추좌전』 소공13년의 기록처럼 여덟 번 방문, 네 번의 조회, 두 번의 회맹, 한 번의 순수를 맹약의 과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의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춘추시대 외교는 신의를 중심에 둔 약간 강제적 화합의 이상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전국시대의 외교 현실주의: 합종연횡(合從連橫)

전국시대로 넘어오면 춘추시대에 강제적으로라도 내걸었던 국제적 신의, 화합의 추구, 평화의 이상 등은 한꺼번에 사라지고 오로지 물리적 폭력에 기초한 ‘힘의 정치’만 판을 치게 되었다. 명말 지식인 고염무(顧炎武)는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춘추시대에는 예를 존중하고 신의를 중시했으나 전국시대 7국은 절대로 예와 신의 따위는 말하지 않았다. 춘추시대는 주 왕실을 종실로 삼았으나 7국은 절대로 왕을 말하지 않았다. 춘추시대는 엄격한 제사 의례를 하고 빙문 예절을 중시했으나 7국은 그런 일이 없었다. 춘추시대는 종성과 씨족을 따졌으나 7국은 그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춘추시대는 연회를 열고 시를 지었으나 7국에선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춘추시대는 국내 일을 타국에 알리거나 문서로 써두었는데 7국은 없었다. 나라끼리 일정한 교류도 없었고 선비들은 정해진 주인이 없었다. 이 모든 일이 1백3십여 년 사이에 바뀌게 된 것이다.”³¹⁾

이상주의적, 도덕주의적 국제관계는 전국시대에 이르러 완전한 현실주의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시대 말기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춘추좌전』의 서문에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완전한 실질적 대내 통치권, 독자적 법률제도, 독자적 문자와 언어시스템, 독자적 도량형 및 화폐경제 제도, 독자적 군대 보유 등 독립국이었지만 적어도 명분상으론 주 왕실을 종주(宗主)로 삼던 춘추시대와는 달리 전국칠웅은 완전한 ‘주권³²⁾’을 소유하였고, 약육강식의 냉혹한 세상을 열었다. 외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조빙(朝聘) 제도의 파괴였다(李無未, 2005).

31) 春秋時猶尊禮重信，而七國則絕不言禮與信矣。春秋是猶宗周王，而七國則絕不言王矣。春秋是右嚴祭祀，重聘享，而七國則無其事矣。春秋時猶論宗姓氏族，而七國則無一言及之矣。春秋時猶宴會賦詩，而七國則不聞矣。春秋時猶赴告策書，而七國則無有矣。邦無定交，土無定主，此皆變於一百三十三年之間。

32) 고대 중국에 주권(主權, sovereignty) 개념은 없었으나 주권 평등 관념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晏子春秋』「內篇·雜下」엔 안영(晏嬰)이 초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벌어진 일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모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데 대해 주권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강한 힐난이 담겨 있다. 전문은 이렇다: “晏子使楚，以晏子短，楚人為小門于大門之側而延晏子。晏子不入，曰：‘使狗國者，從狗門入；今臣使楚，不當從此門入。’僕者更道從大門入，見楚王。王曰：‘齊無人耶？’晏子對曰：‘臨淄三百閭，張袂成陰，揮汗成雨，比肩繼踵而在，何為無人？’王曰：‘然則子何為使乎？’晏子對曰：‘齊命使，各有所主，其賢者使使賢王，不肖者使使不肖王。嬰最不肖，故直使楚矣。’”

이런 대변동에 대하여 제자백가들은 각기 다른 접근을 하였고, 외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기하였다. 『관자(管子)』서가 위서이고 후대에 성립된 것이긴 하지만 믿을만한 사료에 근거한 관중의 사상과 행적에 따르면 그는 단일패권을 통해 국제평화와 질서를 추구하였다. 그는 부국강병(『관자』「制分」편)의 하드파워와 예의엄치(『관자』「牧民」편)의 소프트파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패권하의 질서’와 ‘패권하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상주의 패권학파’라고 부를 수 있다(葉自成·龐珣 2001, 25-26). 공자는 폭력에 반대하고 인(仁)과 덕(德)을 강조하면서도 관자의 패권주의가 중국문화를 이민족으로부터 지켜냈다고 칭찬을 했다(『논어』「憲問」편). 이 점에서 공자 또한 이상주의 국제정치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묵자(墨子)는 철저한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이해관계로 외교문제를 생각하였다. 그는 사랑에 기초한 세계평화를 구상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는데 ‘서로를 아끼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겸애교리(兼愛交利)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 보듯이 하면” “제후국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전쟁을 벌이지 않게 될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아끼면 강자가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지 않게”³³⁾(『묵자』「兼愛中」편) 되어 ‘천하의 치세’ 즉 세계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공격전쟁에 반대하였다.

“오늘날 천하의 왕공대인이나 사군자들이 내심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빈번히 공격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확실히 천하의 거대한 손해이다. ……정말로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비공(非攻)’ 주장에 대해 깊이 있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³⁴⁾(『묵자』「非攻下」편)

묵자는 공격 전쟁이 공격자에게 전쟁비용을 키우고, 수비국가의 방어비용을 키워서 모두에게 손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공격전쟁을 하는 정책을 바꾸어서 (이해타산의 설득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효과는 반드시 배가될 것이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는 비용을 계산하여 제후들의 피폐한 사정을 어루만지는 방법을 쓰면 얻는 이익이 훨씬 두터울 것이다.”³⁵⁾(『묵자』「비공하」편)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랑과 정의의 실천, 즉 soft power를 통한 외교가 훨씬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격전쟁을 하는 국가가 있으면 묵자는 묵도(墨徒)를 이끌고 놀라운 방어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³⁶⁾

한편, 공자의 진정한 후계자를 자처한 전국시대의 맹자와 순자(荀子)는 이익을 앞세운 묵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인의, 왕도, 덕과 예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특히 맹자는 법가의 부국강병, 묵가의 공리주의, 그리고 양주(楊朱)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비판하면서 오직 인정(仁政)과 왕도(王道)만이 국제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한 것이 패도이다. 패도를 행하려면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이다. 왕도를 행하는데 나라가 클 필요는 없다. 탕(湯)왕은 70리 땅으로, 문(文)왕은 백리 땅으로 천하의 왕자가 되었다. 힘으로 타자를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이다. 덕으로 타자를 복종시키면 마음

33) 視人之國若視其國，……是故諸侯相愛則不野戰，……天下之人皆相愛，強不執弱，眾不劫寡。

34) 今且天下之王公大人土居子，中情將欲求興天下之利，除天下之害，當若繁為攻伐，此實天下之巨害也。……欲中國家百姓之利，故當若非攻之為說，而將不可不察者也。

35) 易攻伐以治我國，攻必倍。量我師舉之費，以爭諸侯之斃，則必可得而序利焉。

36) 유덕화와 안정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묵공(墨攻)>은 이 사상을 잘 담아내고 있다.

에서 즐거움이 우리나라와 진실로 복종하게 된다.”³⁷⁾

맹자는 약육강식의 검병은 국제평화를 위한 장기적 대안이 아니며,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인의(仁義)를 실현하는 방법만이 항구적인 질서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곳곳에서 power politics가 현실이 아니라 moral politics가 현실이라고 강변하였다. 불인인지정(不忍人之政)을 펼치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니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현실적 정책으로 채택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왕도의 세계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장현근 2010).

순자는 ‘왕도를 존중하되 패도 또한 배척하지 않는’ 공자의 존왕이불출패(尊王而不黜霸³⁸⁾)의 입장을 따랐다. 똑같이 왕도의 국제평화를 주장하였지만 방법에서 순자는 맹자와 생각이 달랐다. 춘추시대 패자들이 그는 국제관계에서 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신뢰 때문이다. “모두 한쪽에 치우친 누추한 나라였음에도 그 위세가 천하에 진동하였고 강성함이 중원 국가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뢰의 정치 때문이다.”³⁹⁾(『순자』 「王霸」 편) 순자는 현실을 중시해 패도를 인정했지만 당시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던 강권 정치나 자국 이익만 쫓는 외교적 권모술수는 반대하였다.

“왕자는 그 인민을 빼앗으며, 패자는 그 동맹국을 빼앗으며, 강자는 그 땅을 빼앗는다. 그 인민을 빼앗는 자는 제후들을 신하로 거느리게 되고, 그 동맹국을 빼앗는 자는 제후들을 친구로 삼게 되고, 그 땅을 빼앗는 자는 제후들을 적으로 만들게 된다. 제후들을 신하로 삼는 것이 왕도이고, 제후들을 친구로 삼는 것이 패도이고, 제후들을 적으로 삼는 것이 위도(危道)이다.”⁴⁰⁾(『순자』 「王制」 편)

‘동맹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활발한 외교활동을 한다는 뜻이니 패도는 튼튼한 대외관계로 제후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정치적 안정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왕패(王霸)」 편엔 “국가를 운용하는 사람이 예의를 수립하면 왕업을 이루고 신뢰를 확립하면 패업을 이루고 권모술수를 앞세우면 멸망하게 된다.”⁴¹⁾라고 말한다.(이상 장현근 2015, 184-196)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외치는 노장(老莊)은 “군대가 머문 곳엔 가시덤굴이 생기고, 대군이 지난 뒤엔 반드시 흉년이 든다.”⁴²⁾(『노자』 30장)라며 강한 군사력으로 천하에 군림하는 패권에 반대하였다. 동시에 너무 작위적이고 인위적이라면서 유가의 도덕적 국제질서관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소국과민(小國寡民)처럼 자연과의 화해를 전제한 최소한의 국제질서와 소극적인 평화를 추구하였다. 도가사상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당시의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노자의 주장은 자연회귀라는 복고주의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권모술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비자(韓非子)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⁴³⁾

37) 以力假仁者霸，霸必有大國，以德行仁者王，王不待大。湯以七十里，文王以百里。以力服人者，非心服也，力不贍也；以德服人者，中心悅而誠服也。

38) 예컨대 『논어』 「八佾」 편에선 관중이 왕에 대한 존중이 없어 그릇이 작다고 비판하면서, 「憲問」 편에선 관중으로 인한 패업이 없었다면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라며 관중을 어질다고 칭찬한다.

39) 皆僻陋之國也，威動天下，疆殆中國，無它故焉，略信也。

40) 王奪之人，霸奪之與，疆奪之地。奪之人者臣諸侯，奪之與者友諸侯，奪之地者敵諸侯。臣諸侯者王，友諸侯者霸，敵諸侯者危。

41) 故用國者，義立而王，信立而霸，權謀立而亡。

42) 師之所處，荊棘生焉。大軍之後，必有凶年。

43) 『한비자』 「유노(喻老)」 편과 「해노(解老)」 편은 노자의 주장을 군주남면(君主南面)의 술, 즉 신하와 백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통치술로 본다.

전국시대는 후기로 갈수록 극한 경쟁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 외교사상이 훨씬 유행하였다. 제자백가의 학설을 집대성한 스승 순자의 예(禮) 중심 사상을 법(法) 중심으로 재해석한 한비는 power politics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비는 “고대엔 덕을 좋아했을 수 있고, 중세엔 지혜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힘의 경쟁이다.”⁴⁴⁾(『한비자』「八說」편)라며 국제정치를 힘으로 정의한다.

“적국의 군주가 비록 나를 의롭다고 칭송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로 들어오라고 할 수 없고, 관내의 제후가 비록 나와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나는 필경 그를 붙잡아 입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힘이 많으면 사람들이 입조하고 힘이 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조공하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힘에 힘쓴다.”⁴⁵⁾(『한비자』「顯學」편)

한비자의 실력중심주의는 내용이 매우 풍부한 개념인데, “부국강병 외 국가의 정치제도, 조직력과 국가의 응집력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葉自成·龐珣 2001, 29) 그는 강력한 법치로 군주의 권력과 중앙집권을 강화함으로써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훨씬 심각하였다. 한비의 실력주의 외교사상이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읽어내긴 했지만 진(秦)나라의 압도적인 군사적, 경제적 실력 아래 그의 조국 한(韓)의 운명은 풍전등화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였다. 전국시대엔 덕이 힘을 이길 수 없었고, 한비의 시대엔 사상이 책략을 이길 수 없었다. 더 이상 사상적 고민과 토론은 어려워졌고 종횡(縱橫)의 책략만이 모든 나라의 조정을 덮어버렸다.

종횡가의 주장이 외교사상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권모술수이고 외교적 생존전략이거나 책략이기 때문이다(楊陽 2019, 143). 그러나 합종연횡은 전국시대의 국제관계 및 외교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주장이자 당시 외교계의 주선율임에 틀림없다. 여러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강대국에 대항하는 합종(合縱 또는 合從)의 외교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강대국과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연횡(連橫 또는 連衡)의 외교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는 전국시대 거의 모든 조정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정책논쟁 중 하나였다. 유향(劉向)이 편집한 『전국책(戰國策⁴⁶⁾』은 그 대표적 저작이다.

전국칠웅은 거의 대부분 법가사상을 채용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했는데, 가장 성공한 나라가 서쪽 진(秦)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으로 문화적으로 후진국이고 인구는 적고 국력은 약했던 진나라가 최대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군사국가 진의 공격적인 영토 확장 전략을 두고 각 국은 고심하였다. 소진(蘇秦, ? - B.C.284)은 나머지 6국 외교사령 인수를 확보하여 종(縱)으로 진에 대항하는 합종책을 개진하였고, 그의 동문 장의(張儀, ? - B.C.310)는 진나라 재상으로 여러 나라에 가서 횡(橫)으로 진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가안보와 영토보전을 이룰 수 있다는 연횡책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소진의 합종을 깨뜨렸다. 귀곡자(鬼谷子) 문하 두 동문이 세 치 혀로 천하의 외교를 뒤흔든 것인데, 이 드라마틱한 활약 때문에 수많은 애깃거리가 양산되었다. 『사기(史記)』의 과장된 기록도 이를 부추겼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장의가 소진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며, 대부분의 얘기는 꾸며진 것이다(예를

44) 古人亟於德，中世逐於智，當今爭於力。

45) 敵國之君王雖說吾義，吾弗入貢而臣；關內之侯雖非吾行，吾必使執禽而朝。是故力多則人朝，力寡則朝於人，故明君務力。

46)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마왕퇴(馬王堆) 발굴의 『전국종횡가서(戰國縱橫家書)』를 이 책과 동일 서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들면 傅海燕 2019).

귀곡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책략은 유세로 군왕을 설득하는 각종 기술, 속임수, 이간계, 모략 등으로 보인다. 현존 『귀곡자(鬼谷子)』 책이 위진시대 위서라는 설이 강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소진과 장의 등의 외교 전략과 일치한다.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hard power만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 예컨대 뛰어난 관찰력, 시의 적절한 책략, 기회 포착능력, 이익에 대한 선택 능력과 취사선택 능력, 장점의 극대화과 단점의 최소화 등이 있다. 소진과 장의는 이러한 ‘종합 국력’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야 적절한 외교 수단을 선택하고 외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처음부터 합종파가 있고 연횡파가 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합종파로 알려졌지만 소진이 처음 진(秦) 혜문왕(惠文王)을 만나 건의한 것은 연횡책이었다.

『사기』 「소진열전」과 「장의열전」을 보면 두 사람의 책략은 비슷하다. 굳이 구분하자면 장의는 속임수 외교를 부렸다는 것이고, 소진은 반간(反間) 즉 간첩을 이용 또는 역이용하거나 이간시키는 외교 책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소진이 장의보다 합리적이고 뛰어났다는 평가도 있으나(王立 2020) 외교적 권모술수에 도덕이나 능력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 진나라에 대항하는 합종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순을 활용하고, 동맹을 깨뜨리는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덕이나 신의를 돌아보지 않고 많은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았던 장의는 그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소진 또한 합종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Shuttle diplomacy를 창안하고(葉自成·龐珣 2001, 28)⁴⁷⁾ 간첩을 활용하여 외교와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는 전쟁보다 외교적 수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현명한 군주는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재상이 진실로 패왕이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쟁이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중앙과 지방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 손해와 낭비가 앞서 발생하고도 제후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는 적다.”⁴⁸⁾(『전국책』 「齊策齊五」 편)

특히 국제정세와 상대 국가들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는 행위는 이길 확률이 낮은 더 위험한 짓이 될 수 있다. 소진의 전쟁 반대론은 이상주의적 반전론과는 다르다. “외교적 평화해결 방식이 전쟁보다 국가의 목적과 이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 것이지 도덕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葉自成·龐珣 2001, 29)

전국시대 종횡가의 외교 전략은 힘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balance of power로 국제관계를 인식한 것이다. 소진은 세력균형을 이루어 국제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이었고, 장의는 균형을 깨뜨려 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을 기도한 것이다. 소진이 제나라에서 암살을 당한 후에도 전국시대 말기 각 국의 조정은 합종이나 연횡이나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다. 『전국책』에는 장의와 비슷한 시기의 공손연(公孫衍), 소진 이후의 범수(范雎), 채택(蔡澤) 등과 유방(劉邦)의 참모였던 역이(酈食其)까지 다양한 사례를 상세히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끝내는 연횡의 다른 형태인 원교근공(遠交近攻)책으로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였다(B.C.221년).

47) 당사국끼리 해결 못한 난제에 대한 제3자 중재외교를 뜻하는 Shuttle diplomacy는 전국 종횡가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중국어로는 천사외교(穿梭外交)라고 번역한다.

48) 故明主察相，誠欲以伯王也為志，則戰攻非所先。戰者，國之殘也，而都縣之費也。殘費已先，而能從諸侯者寡矣。

4. 결론

이상 중국이 전통 외교의 성취를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최근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외교가 근대 서양에서 발전한 diplomacy와 개념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주 시대 외교는 power politics가 아니라 천하의 화합을 목적으로 두고 덕과 예를 강조하는 일종의 harmony politics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어 독립된 국가체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 교섭이 이루어진 춘추시대는 교황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유럽 국가들의 외교관계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전통적 화이분변(華夷分辨) 사유에 기초한 전통적 권위가 지배하였고, 춘추시대 외교는 전통의 주 왕실을 받들며 평화와 화합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존왕양이(尊王攘夷)를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강력한 패자가 주도한 ‘제후국들 간 맹약’외교의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춘추시대 외교는 강대국의 신의에 기초한 강제적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천하를 뒤덮은 전국시대에 이르면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현실주의적 힘의 질서가 국제관계를 구성하였다.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며 도덕과 화합의 평화외교를 주창하는 사상이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실력주의와 권모술수의 외교를 주창하는 사상도 출현하였다. 묵자는 외교를 공리주의에 입각한 이해관계로 접근하며 soft power를 통한 외교가 훨씬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하였다, 맹자와 순자는 인의, 왕도, 덕과 예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power politics가 현실이 아니라 moral politics가 현실이라고 강변하였다. 노장(老莊)은 군사적 패권과 도덕적 국제질서 둘 다 반대하며 자연회귀의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였다. 한비자는 힘의 정치를 긍정하며 강력한 법치와 중앙집권을 통한 실력중심주의를 제창하였다.

끝내는 덕이 힘을 이길 수 없었고, 사상이 책략을 이길 수 없었다. 합종과 연횡의 책략만이 모든 나라의 조정을 덮어버렸다. 소진과 장의는 hard power 외 관찰력, 책략, 기회 포착능력 등 ‘종합 국력’을 제시하고 이간질과 속임수를 가리지 않은 외교 전략을 통해 외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진은 Shuttle diplomacy를 창안하였고, 장의는 balance of power를 깨뜨리는 외교 전략으로 성공하였다. 진시황의 통일로 중국은 춘추전국의 다양한 국제관계가 소멸되고 대일통의 제국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외교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참고문헌>

『書經』
『周禮』
『禮記』
『國語』
『春秋左傳』
『春秋穀梁傳』
『晏子春秋』
『戰國策』(『戰國縱橫家書』)
『史記』
『管子』
『論語』
『墨子』
『鬼谷子』
『孟子』
『荀子』
『韓非子』

- 李澤民 2016. 「中國古代外交制度的發展歷史」. 『科學與財富』 2016年第34期
- 葉自成·龐珣 2001. 「春秋战国时期的中国外交思想流派及与西方的比较」. 『世界经济与政治』 2001年12期
- 葉自成 2003. 『春秋战国时期的中国外交思想』. 香港社会科学出版社
- 葉自成·王日華 2006. 「春秋战国时期外交思想流派」, 『國際政治科學』 2006年第2期(總第6期)
- 李璞·王林敏 2006
- 판보싱·김태형 2015. 「중국 선진(先秦)시대와 미국의 현실주의적 동맹이론의 비교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5집 3호
- 李無未 2005. 『周代朝聘制度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錢穆 1996. 『國史大綱』(上册). 商務印書館
- 장현근 옮김 2019. 『논어』. 위즈덤하우스
- 장현근 2015. 『순자: 예의로 세상을 바로잡는다』. 한길사
- 장현근 2010. 『맹자: 바른 정치가 인간을 바로 세운다』. 한길사
- 楊陽 2019. 「春秋戰國時期的外交戰略與外交技巧」. 『人民論壇』 2019年7月中
- 李冠云, 「古代的“外交” - 聘問之禮」. 『闕里書院發表論文集』 2016.9.26.
- 王立 2020. 「試論蘇秦的外交藝術」. 『https://www.sohu.com/a/368214625_618422』 2020.01
- 傅海燕 2019. 「蘇秦·張儀與合縱連橫」. 『前線』 2019年8月
- 王博 2015. 「從“尊王攘夷”到“合縱連橫” - 春秋霸政新探」.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年第3期

「중국 춘추전국시대 외교 개념 및 외교 사상의 전개」에 대한 논평

안효성(대구대학교)

감히 후학으로서 이런 언급을 내 놓는다는 것이 적절한지 조심스럽지만, 언제나 장현근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면 출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설정한 연구 주제를 탐구해 가는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채택되고, 체계적인 논의 구도 하에서 수많은 문헌들을 파헤쳐가며 유의미한 구절들을 골라내 적재적소에 적절한 논거로 펼쳐 놓고 정미한 논증을 전개해나간다. 따라서 장현근 선생님의 글은 화려하고 꼼꼼하면서도 튼실하고, 언변도 뛰어나 읽는 재미와 배우는 바가 쏠쏠하다. 항시 후학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평에 들어간다.

발표자(장현근)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 고대의 국제관계와 외교 관련 개념이나 관념에 대한 국내연구, 그것도 정치사상에 기반을 둔 연구는 드문데, 발표자는 서주(西周)의 끝자락에서 진(秦)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춘추전국시대 외교 양상과 사상의 전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연구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자는 춘추전국시대 열국의 상호관계와 각국의 대응전략을 현대 국제정치학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구분법을 적용해 살펴보고, 현대적 개념 감각에 입각해 제자백가의 정치외교 관점을 해석하면서도, 중국 고대의 전통과 제도의 원형을 별다른 훼손 없이 설명해 내고 있다.

발표자의 연구에 따르면, 서주 시대의 외교는 천하의 화합을 목적으로 두고 덕과 예를 강조하는 harmony politics였고, 춘추시대의 외교는 서주의 질서를 계승한 이상주의적 존왕양이의 패러다임에 기초하되 패자가 주도한 맹약 외교의 형태로 약간의 강제적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국시대의 외교는 현실주의적 힘의 질서가 국제관계를 구성하게 되면서, 도덕과 화합의 평화외교 사상 및 실력주의와 권모술수의 외교 사상 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제자백가의 다양한 외교 사상이 제출되었다.

발표자는 목가는 외교를 공리주의에 입각한 이해관계로 접근하여 soft power 외교를 지지하였고, 맹자와 순자는 패권 인정 여부에 있어 판단 차이를 보이긴 하나 power politics가 아닌 moral politics가 현실이라고 강변하였으며, 노장은 군사적 패권과 도덕적 국제질서를 모두 부정하면서 자연회귀의 소극적 평화를 추구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한비자는 힘의 정치를 인정하면서 강력한 법치와 중앙집권을 통한 실력중심주의를 주창했고, 종횡가의 등장으로 합종과 연횡의 권모술수 책략이 외교술의 중심이 되면서 국제관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전반적으로 중국 고대 열국 간의 외교 양상과 국제질서를 지배한 패러다임, 주요 제자백가의 외교관의 역사적 전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잘 변별되어 있어, <동서양 외교 개념사 연구> 중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 관념 연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평자로서는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많이 배웠다면 배웠지 특별한 이견은 있지 않다. 평자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의 내용에 있어서도 판단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몇 가지 더 분명히 알고 싶어 여쭙고자 하는 바와 연구의 완성성을 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군데 발견을 전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누락 내용과 비문, 오역을 발견하여 의견을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째, 논문의 3절 첫 번째 인용문은 고염무의 말인데 원문은 각주로 달려있지만 출처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둘째, 10쪽 두 번째 단락의 3째 줄 문장 “춘추시대 패자들이 그는 국제관계에서 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비문이므로 수정이 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12쪽에 직접 인용문으로 나오는 『전국책』 구절의 첫 문장은 아마도 오역이 아닌가 싶다. 논문에서는 “故明主察相，誠欲以伯王也爲志，則戰攻非所先.”이 “현명한 군주는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재상이 진실로 패왕이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평자가 보기에는 “현명한 군주는 상황을 잘 살피니, 진실로 방백이나 왕자가 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전쟁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 드리는 바이다. 첫째, 논문의 2절을 시작하면서 논자는 주나라가 천하를 71개로 나누어 53개 국엔 회(姬)성의 인척을 제후로 봉했다고 하였는데, 주나라 천자의 성이 ‘회’이니 외척과 처족인 ‘인척’을 제후로 봉한 것이 아니라 ‘친족’을 제후로 봉한 것이라고 정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둘째, 논문의 8쪽 각주 32에서 “고대 중국에 주권 개념은 없었으나 주권 평등 관념은 존재하였다.”라 하였는데, 있지도 않은 주권에 대한 평등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싶다. 각 나라에 대한 평등대우 관념이나 나라 각각의 평등한 자존 관념이라면 모를까 조금은 논리가 엄밀하지 못한 서술이라고 여기는데 논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셋째, 9쪽에서 목자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이해관계로 외교문제를 생각하였다고도 하고 사랑에 기초한 세계평화를 구상하였다고도 하는데, 목자가 ‘겸상에 교상리(兼相愛 交相利)’를 아울러 말하니 이해는 가지만, 이해타산에 입각한 외교와 사랑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구상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목자의 ‘겸상애교상리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대상에 따른 차별이 없는 보편적 박애에 대한 주장이 공리주의를 극대화하는 실천법이라는 이해가 있는 만큼, 이 논문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한 세계평화” 구상이라는 언급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논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넷째, 10쪽의 말미와 각주 43을 통해 논자는 노자의 주장을 현실적 권모술수로 여기는 평가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군주남면술을 권모술수로 여겨야 하는가? 한비자의 경우야 그 자신 그런 통치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군주남면술 자체는 궁극의 자비로운 무위정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논문의 문맥상 읽기에 따라서는 권모술수를 대변하는 개념처럼 여겨질까 우려되기도 한다. 끝으로 논문의 종미에서 논자는 진시황의 통일로 대일통 제국시대 중국의 외교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그 형태는 어떤 것인지 살짝 예비적으로 언급해 준다면 독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물론 논자가 발표 현장에서 그 얘기를 보태 박진감을 주기 위한 심모원려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귀한 글에 대한 논평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윤대식(한국외대)

“조선의 외교 관념”

조선의 외교 관념

윤 대 식
한국외대

<개요>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특징을 말할 때 흔히 조공-책봉체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공-책봉이라는 용어와 동반되는 개념이 사대(事大)이다. 중국을 천하(天下)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정의하고 통치자인 왕을 천자(天子)라고 명명했던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하늘의 원리에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대 동아시아 정치문화의 원형으로 알려진 삼대(三代)의 정치로부터 출발한 질서관념은 유교교의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특히 국가 간 사대와 사소의 개념은 동아시아 질서구조에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리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화와 이해는 고대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의 현상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보편사의 맥락에서 원 제국의 멸망과 명나라의 출현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했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유목제국의 멸망과 함께 중화문명의 회복과 군주집권체제로 회귀한 명나라의 질서관념은 대외적으로도 일관되게 세계의 중심으로서 명을 정점으로 하는 규범적 위계질서의 국제관계를 상정했다. 이를 규제하는 원칙이 사소-사대이다.

반면 명 왕조의 출현과 함께 조선왕조도 동시에 출현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구조에 편입되었는데, 이 지점에서 동아시아 질서구조 내에 보편사적 흐름과 일국사적 흐름, 즉 명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 사소-사대의 국제관계와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 사소-사대의 국제관계라는 이중적 구조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사실 조공-책봉체제라고 불리는 동아시아 질서구조가 명 왕조의 출현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동했던 시기부터 조선은 명에 대한 지성사대의 태도를 일관되게 취함으로써 자주적 외교노선이 아닌 종주국인 중국왕조의 속방 또는 속국으로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밟았던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질서구조 자체가 보편사와 일국사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접점을 이루며 운행되었기 때문에 조공-책봉체제 역시 중층적 구조로 운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항상 사방으로 팽창하려는 동서남북의 파장을 흡수하여 분열보다 질서로 전환시켜주는 에이전트로의 역할을 수행한 독자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바로 동아시아 질서의 이중성을 가져온 중층구조 속 행위자들을 매개하는 에이전트로서 조선의 대외정책이 단순히 사대주의로 매도되기보다 얼마나 외교의 정의에 충실했는지를 당대 동아시아 질서의 참여자들이 갖는 외교관념과 대외정책에서 추출하려는 것이다.

I. 들어가며

조선(朝鮮)왕조는 ‘조선’이라는 국명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Land of the Morning Calm)임을 시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으며, 전적으로 잘못된 인식에 간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식할 경우 ‘조선’이 지극히 수동적이고 폐쇄적이며 정적(static)인 국가로 외부 지향정보보다 내부지향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때문이다.¹⁾ 특히 이러한 오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왕조들이 중국왕조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대중이나 학문영역조차 역대 한국의 왕조들이 중국왕조들로 국한했던 세계관만을 유지했다는 이해가 상식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²⁾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반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계획도 없다. 다만 상식으로 자리 잡은 한-중관계사의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가 역사적 실체에 토대해서 한-중관계사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시점이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더구나 현재 동아시아 역내 질서와 패권양상이 기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한-중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재현 또는 미러링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그 사실과 이해의 왜곡 또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오기 때문이다.³⁾

1) ‘조선’의 국호 제정과정은 다 알려져 있듯이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국왕으로 등극한 일을 명 홍무제에게 표문을 보내 알리고 그 승인을 요청한 데서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국호 제정문제는 이성계가 1392년 7월 28일 반포한 즉위교서에서도 고려라는 이전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조선 건국을 주도한 세력 역시 당초 계획에 없었다. 오히려 명 왕조에서 고려왕조의 새로운 국왕이 이성(異姓)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왕조의 개창으로 보고 국호를 문의한 것인데 시급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던 셈이다. 이에 이성계는 도평의사사에서 ‘조선’(朝鮮)과 ‘화녕’(和寧) 두 후보를 정했고 명 황제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명 측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국호선택을 명 측에 위임한 전례 없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1395년 2월 15일 예문관 학사 한상질(韓尙質)이 귀국하여 ‘동이의 국호로 오직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답고 유래가 오래되어 그 명칭을 근본으로 하라’는 명 홍무제의 교지를 가져오자 이날로 이성계는 조선의 국호를 선포했다. ‘조선’으로의 국호 결정은 홍무제가 가진 한반도에 대한 기존 인식과 함께 ‘화녕’이란 명칭이 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 영흥 지역을 지칭하는 옛 용어로 동북면에 대한 새로운 왕조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에 명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호 결정에서 중화문명의 전달자로서 기자(箕子)를 계승하겠다는 정도전의 화이관적 문명관 등이 작용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선’의 국호에 담긴 의미는 중국의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중화문명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견지한 채 왕조교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주체임을 강조하려는 건국 세력의 이념과 지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종석, “태조대 대명관계의 양상과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동북아역사재단, 2018), 84-89쪽.

2) 20세기 내내 학문적 경향은 조공체제를 중국중심적이고 낡고 진부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껏해야 외부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동조했던 완전히 인위적인 체제로 ‘상상의 세계제국’(imaginary world empire)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존 페어뱅크는 명 왕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조공체제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비중국인과의 관계에서 중국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유용한 수단들의 레파토리-한 극단에는 군사적 정복과 행정적 동화 다른 극단에는 완전한 교류의 단절과 접촉의 회피-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더 나아가 하마시타 타케시는 이 상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사실상 하나의 통일된 지역체제에 참여했다는 의미에서 조공체제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중심으로 되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Timothy Brook, Walt van Praag, and Miek Botjes ed., *Sacred Mandate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pp. 62-63.

3) 2022년이 한-중수교 30년이라는 한-중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동계올림픽의 문화 왜곡에 따른 양국 간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은 과거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기존 상식과 정서에 거리를 둔 객관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성을 더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특히 30년이라는 한 세대 만에

한-중관계(Sino-Korean relationship)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역사에서 오래되고 불가피하게 왕조 간 관계를 형성하고 우호적-적대적 태도를 교차하면서 진행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성을 보다 더 체감했던 경우는 중국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우호이건 적대이건 한국으로 힘의 이동이 진행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대 왕조에서 항상 중국으로부터 힘의 변화가 대외 관심의 최우선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과 기억에 근거해서 보면 그래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의 역사 속 대외정책의 기조 또는 방향에 대한 연구전통이 혹시나 중국의 어느 왕조가 들어서건 한국의 왕조나 정부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는 구축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일종의 클리셰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점은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중관계의 중요성과 비중, 다시 말해서 중국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관이 성립되고 그 안에서 자국의 위상을 확보하려고 했던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큰 나라에 사대(事大)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하여 명 왕조 중심의 천하질서에 복속되어 조공-책봉체제에 순응했다고 평가받지만, 이 사대의 대외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비록 명 중심의 천하질서관이 그 실질적 영향력과 통제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크지 않았을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주변부와의 관계를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로 포섭하고 중심부로서 명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는 안정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거란의 요 제국-여진의 금 제국-몽골의 원 제국으로 이어졌던 북방 이민족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 역사적 전환을 선언한 명 홍무제는 한족(漢族) 왕조의 복귀를 강조했고, 정신적으로 중화 문화와 전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리학적 이념을 내세웠다. 같은 시기 조선의 건국세력 역시 이념적인 측면에서 명 왕조와의 일체성을 시도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국’(中國)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명 왕조와 관계를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의 사대(事大)로 부르기 시작했다.⁴⁾

이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근거가 무슬림 정화의 해외 원정을 명령하고 베트남 정복과 타타르 친정을 감행해 가면서 명과 주변국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영락제의 대외정책을 두고 “황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기뻐하니 만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사대(事大)의 예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지성(至誠)으로 섬기고 한편으로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의 급무”⁵⁾라고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진 근원적 배경에는 단지 중국경제의 과도한 의존이나 중국의 굴기에 따른 역내 패권이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중국왕조에 대한 사대(事大)를 전통과 상식으로 받아들이던 관성과 굴종 의식도 작동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한-중관계에서 종속적 사대주의자들의 자발적 출현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4)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 옮김, 『제국과 의로운 민족』(서울: 너머북스, 2022), 56쪽.

5) 『太宗實錄』 <7年 4月 8日>.

강조한 조선 태종의 ‘지성사대’ 발언에서 비롯했다는 평가는 지나친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명료해진다. 즉 조선을 제후국으로 상정한 태종 이방원의 발언이 자발적으로 왕조 초기 중국의 천하질서에 편입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로부터 향후 명-청 시대와 조선왕조 말기까지 중국에 사대하는 속방(屬邦), 속국(屬國)의 위상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던 것인지 아니면 천하질서의 체제 속에서 자주(自主)의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구사했던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⁶⁾ 왜냐하면 사대의 원래 취지가 “예라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혜택 줌을 이르는 것 … 큰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그 시절의 명을 공손히 받드는데 있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은 작은 나라에 없는 바를 구휼해 주는 것”⁷⁾이라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기준, 즉 춘추의 질서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오직 어진 자만이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 지혜로운 자만이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⁸⁾는 『맹자』의 언명처럼 사대자소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큰 나라는 어질어야 하고 작은 나라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공(朝貢)이라는 용어는 주(周) 왕조 이후 역사서에서 북면(北面)하는 제후국 신하들이 왕에게 직접 조회했던(親朝) 것과 주변부 이적까지 공납을 바쳐(獻貢)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을 합쳐 놓은 의미이다. 주 왕조의 분봉제를 기원으로 했던 조회하는 의미가 후대에 쇠퇴하고 입조하여 공납을 바친다는 의미만 강조되면서 표문과 정례적인 사절단의 파견 등을 통해 내조(來朝)와 헌공이 일체화되어 조공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⁹⁾ 이 점에서 국가 간 관계성은 사대(事大)와 사소(事小)의 예제 틀에서 규모와 실력의 현실적 차이에 따른 이중적 구조를 여전히 유지했다.

그 이중적 구조에서 대국의 사소는 “대개 듣기로는 천자가 이적의 오랑캐를 상대할 때 그 뜻은 (그들을) 구슬려서 관계를 끊지 않을 뿐”¹⁰⁾이라는 기사의 표현처럼 기미(羈縻)로, 현실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소국의 사대는 “음이 주 왕실에

6) 박홍규는 이를 ‘중화공동체 전략’으로 명명한다. 이미 조선건국의 주역인 정도전은 동쪽의 주변국인 조선을 고대문명의 상징인 주나라 같은 이상적인 국가, 곧 동주(東周)로 만들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것은 소중화(小中華)의 선언이었지만, 단순히 문화적 차원의 모방이 아니라 큰 나라인 명과 함께 작은 조선이 중화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비대칭적 협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즉 중화공동체 전략은 대중화인 명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이 소중화로서 존재하는 조선 예외주의 전략이었고, 소국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주체적 전략이었다. 특히 명 왕조가 조선을 승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성의를 다해 상대가 인정해 줄 때까지 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성사대를 채택했던 것인데, 태종 역시 정도전의 중화공동체 전략과 그에 따른 국가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명의 팽창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북방 여진에 대한 통제권과 영향력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협력체제의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선의 독자성을 관철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홍규, 『태종처럼 승부하라』(서울: 푸른역사, 2021), 211-234쪽.

7) 『春秋左氏傳』「昭公30年」, “禮也者, 小事大, 大字小之謂 … 事大在共其時命, 字小在恤其所無.”

8) 『孟子』「梁惠王下」, “惟仁者爲能以大事小, 惟智者爲能以小事大.”

9) 이에 따라 조공의 근거는 봉전(封典)이었는데, 조공국의 국왕은 책봉을 받음으로써 해당 국제질서에서 비로소 정통성을 인정받고 국가로서 공식승인을 받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사하게 된다. 김경록, “홍무년간 명의 봉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 106집(2017), 69-70쪽.

10) 『史記』「大宛列傳」, “蓋聞天子之於夷狄也, 其義羈縻勿絕而已.”

조회하고 공경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범나라 백작이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¹¹⁾는 기사처럼 조공(朝貢)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사대와 사소는 도덕적·현실적 우열의 차이에 따른 국가 간 관계를 안정과 질서의 틀 속에 고정하기 위해 양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쌍무적인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사대와 사소는 고대 국가 간 공유한 의례의 관념이었을 뿐, 중국(中國)이라는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의 존재 그 자체가 실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제 기능과 효력이 입증될 수도 없고 된 적도 없다. 오히려 현재 중국이라고 불리고 한국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의 범주 내에 명멸했던 왕조국가 간 질서의 이념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왕조(조선)가 중국왕조(명-청)의 조공국 모델로 종종 회자되지만, (조선의) 정치제도와 높은 수준의 문화발전에 중국왕조와의 조공관계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과대포장에 불과하다.¹²⁾ 반면 조선왕조의 후반부 이른바 문명개화론자들 vs 위정척사론자들 간 이항대립구도로 표출되었다고 평가받는 정치적, 정신적 긴장관계는 근대화를 둘러싸고 양자 모두에게 ‘서양과 일본 vs 중화와 소중화=문명 vs 야만’의 이항대립구도로 치환되었을 뿐 더 이상 자주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지 못한 한계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대한제국~일제 식민시기를 일관해서 중국의 근대화 노정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관심 역시 동아시아 질서회복을 위한 결정적 키워드로 중국의 본래 모습 또는 근대화 성공 여부에 주목했다는 사실 역시 한-중관계에 오랜 전통과 역사가 존재했다는 착각을 가져다주었을 수 있다.¹³⁾

요컨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중관계사는 실재했지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조공-책봉체제, 기미-교린체제 등의 용어와 천하질서-중화공동체 관념 등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들의 정의(definition)는 최근에 성립되고 학습되었던 것일 수 있다. 그런 가정이 전제될 경우 비로소 조선왕조의 출현이라는 일국사의 맥락이 단순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패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계사 또는 보편사의 맥락과 접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즉 조선의 역사전개와 동아시아의 역사전개 그리고 세계사의 역사전개라는 3개의 구조가 중첩되는 과정으로 바라볼 경우, 조선왕조의 대외관계성을 단순히 한-중관계로만 국한시킬 수 없는 복잡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특정 국가와 시대의 국가 간 관념과 대외정책의 속성을 현재 우리의 외교 관념과 대외정책의 속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11) 『春秋左氏傳』「隱公」7年, “初, 戎朝于周, 發幣于公卿, 凡伯弗賓.”

12) Donald N. Clark,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8,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272.

13) 당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루쉰(魯迅), 쑨원(孫文)에 대한 언급과 연구가 아직도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근대성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종속적 사대주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II. 동아시아 질서 관념의 두 경로와 이중성

여기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동아시아 질서구조에서 작동하는 힘의 방향성, 특히 상반된 힘의 작용으로 인한 동서 간 긴장관계와 남북 간 긴장관계의 양상이다. 또 그것은 한국, 특히 조선왕조가 힘의 쌍방향 작용과정의 중간에 놓인 매개자(agent)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선은 건국과 함께 중국왕조에 조공체제의 사대외교로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여진 및 일본과 기미교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완성을 가져오는 연결고리로 기능했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유가적 춘추질서관을 공유한 규범외교를 완성한 동시에 현실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압력으로부터 양극단의 충돌과 대립의 요소를 안정과 질서로 흡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실용외교의 발현이기도 했다.

상기한 개괄적 추론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면, 조선은 국가이익 보전이라는 내부 문제를 동아시아 질서구조라는 외연과 상부(相符)시켰던 통치기제를 운영한 셈이다. 이러한 전통의 맥락에서 접근할 경우, 동아시아 질서구조 내에서 현재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고, 세계 질서구조 내에서 운신의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단서를 추출할 수도 있다.

1. 동서 간 긴장의 쌍방향성

중간 분석수준에서 접근하면, 동아시아 질서구조는 동서 방향 중 어느 곳에서 긴장이 발생할 경우 정치변동과 문명전환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4세기 원명(元明)교체와 여선(麗鮮)교체의 동시성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동일한 이념과 정치문화의 토대 위에서 사유와 통치기제의 일원성이 확립되었다는 우연도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즉 성리학 이념의 채택으로 일반화된 동아시아 고유의 정신적-문화적 기제는 역내 개별국가의 내적 기제로 채택되었고 그 순간 개성을 초월한 보편통칙(covering-law)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런 보편통칙이 추출될 수 없었던 이전 시기까지 동아시아 질서는 역내 국가(민족) 간 관계가 전쟁의 반복이라는 분열성을 특징으로 했던 반면, 동아시아 질서의 분열성이 일원성으로 귀결되는 시점에서 교린의 양상으로 전환된다. 사실 동아시아 전통의 춘추질서관에 의거해서 국가 간 관계를 조망할 경우, 국가 간 관계의 이중적 구조와 규범적 구속력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즉 열국 간 관계의 대등성과 주 왕실과 열국 간 군신관계로부터 파생된 춘추질서관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국가로부터 자발적으로 자기 위치와 역할에 순응하는 국가들의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의 교차라는 특징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규범적 권위로서 왕이 중심에 위치한 질서를 하나의 이념형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춘추』의 의도처럼 보이지만,¹⁴⁾ 실제 『춘추』의 의도는 폭력과 규범

어느 것을 선택해도 최종 결과로 질서를 도출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패(霸)의 정당화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이미 고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서 우호적인 질서의 수립과 개별 국가생존의 결정요인으로 실력자의 노골적인 폭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⁵⁾

이런 전통적 프레임을 전제로 14세기를 들여다보면, 역사적 분기점에 접어든 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주요 구성인자인 명-조선-여진-왜의 관계는 적대적이기보다 조공-책봉체제의 틀을 완성하여 사대-사소의 규범외교와 기미교린의 실용외교로 이원화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서쪽으로부터 출발한 힘이 동쪽으로 파급되었을 때 전체 구조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동아시아 질서구조 내부의 장력(張力, tension)이 작동하는 방향성에 대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진 전환점은 조선 건국 이후로 파악된다. 건국세력은 성리학적 이념에 기초한 화이적 세계관을 채택했고, 당대 그들이 이해했던 성리학 수준으로부터 점차 세계관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질서의 방향이기도 했다. 즉 사서(四書) 중심의 경학적 세계관을 학습한 성리학자들은 과거 오경(五經)과 훈고(訓詁) 중심으로 학습된 유가관료들과 달리 이념적 순수성을 더 분명히 했던 것이다.¹⁶⁾ 그 시발점은 “관중이 제환공을 도와 제후들의 패자가 되어 천하를 하나로 평정하니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¹⁷⁾이고 “환공이 제후를 아홉 번 규합한 것은 무기와 전차로 한 것이 아니라 관중의 힘이었으니 어질구나!”¹⁸⁾라고 찬양한 공자(孔子)의 진술일 것이다.

상기한 공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공자로부터 출발하는 중화(中華)=문명(文明)을 말하는 근거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이라는 문화적 양태에 의해 이적(夷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클리셰로 사용되었다. 공자가 지적인 관중의 공헌은 바로 이적으로부터 중화 문명의 담지자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 진술의 이면을 추론해보면 그만큼 춘추시대가 실제로는 문명 vs 야만의 이항 대립구도로 경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정신적, 물리적 교감과 혼융상태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14) 김문준, “춘추사상의 국제평화정신과 민족국가의 자주정신,” 『범한철학』 23집(2001), 208-210쪽.

15) 윤대식, “『춘추좌씨전』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 『정치사상연구』 19집 2호(2013), 40-42쪽.

16) 고려 우왕 시기 신흥하는 명 왕조에 사대했던 외교정책이 다시 이인임 일파에 의해서 복원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당대 성리학자들은 반발했다. 물론 성리학자들의 판단은 형세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복원세력이 아직은 강력한 상태에서 복원과 관계 회복을 반대한 이유를 본다면, 공민왕의 반원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몽주가 주장하듯 고려가 천명을 받은 의로운 천자를 중화의 예로 섬겨왔는데 원 제국 스스로가 파천을 조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여몽 관계가 조공-책봉체제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천명을 받은 의로운 천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배우성,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파주: 돌베개, 2014), 94-95쪽.

17) 『論語』「憲問」,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18) 『論語』「憲問」,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왜 공자는 인위적으로라도 자신들의 경계 짓기를 시도한 것일까? 즉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춘추시대라는 혼재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어떤 이념적 지표를 제시한 것일까? 그 선행한 역사적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춘추시대를 가져온 성립 선행조건은 주 왕실의 멸망과 동천(東遷)이었다. 『사기』는 주 유왕(幽王)이 왕비인 신후(申后)와 태자를 폐위시키자 왕비의 아버지인 신후(申侯)가 증(繒)나라 및 견융과 함께 유왕을 공격해 죽였고 제후들이 신후와 함께 태자를 옹립해서 평왕(平王)을 즉위시켰다고 기술한다.¹⁹⁾ 고염무(顧炎武)는 “이 때 견융은 관중에서 정비하여 기거할 수 있었고 동쪽의 신후를 끼고 함께 결맹하여 구 지역으로 들어갔다”²⁰⁾고 분석함으로써 당시 주 왕실의 제후와 외부 세력 간 동맹체결의 사실을 지적한다.²¹⁾ 요컨대 서쪽의 이적인 용족의 침입이 주 왕실의 동천을 가져왔고 춘추시대를 개막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춘추시대 열국 간 경쟁의 격화로 당대인들이 화이의 혼재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각인했으며, 패(霸)의 출현을 질서로의 복귀를 위한 변화로 평가했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춘추시대의 혼란이나 질서로의 복귀 열망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서쪽에서 시작된 흐름이 동쪽으로 파급되면서 구조적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것을 훗날 동아시아 질서구조에 적용하면 춘추시대의 혼재양상과 그 파장이 주변 개별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 국가 간 관계변동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기』 「조선열전」의 “연나라 왕이던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위)만은 망명하여 천명이 넘는 무리를 모으더니 머리를 묶어 늘어뜨리고 오랑캐 복장을 한 채로 동쪽으로 도망쳐 요새를 나가 패수를 건너더니 진나라의 옛 빈 땅 상, 하장 지대에서 머물렀다. 진번과 조선에 차츰 부러지고 속해 있다가 그 땅의 오랑캐들과 옛 연나라 제나라에서 온 망명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매 왕함을 도움으로 삼기에 이르렀다”²²⁾는 기사는 한 제국의 등장과 함께 고조 유방의 충신이자 연왕이었던 노관이 제국에 도전했다 실패한 후 북쪽 흉노로 망명한 이후 위만이 연나라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 이적에게 자발적으로 망명했음을 소개한다.²³⁾

위만의 실체가 누구였든지 이 기사는 서쪽의 제국 질서에 의해 경계로 구별된 동쪽으로 서쪽세력이 침습하여 정치변동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머리를 풀어헤친’ 오랑캐의 습속을 가진 동쪽으로 이동한 서쪽세력에 의해서

19) 『史記』 「周本紀」, “又廢申后, 去太子也. 申侯怒, 與繒西夷犬戎攻幽王 … 於是, 諸侯乃即申侯而共立, 故幽王太子宜臼, 是爲平王.”

20) 『日知錄』 「大原」, “戎得以整居其間, 而陝東之申侯, 至與之結盟而入寇.”

21) 윤대식(2013), 앞의 글, 37쪽.

22) 『史記』 「朝鮮列傳」,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真番朝鮮, 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23) 이 원문번역은 문성재 역주, 『정역중국정사-조선 동이전 1』(우리역사연구재단, 2021), 41-44쪽을 참조했다. 여기서는 기존 번역의 오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위만이 애초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 복속했다가 동쪽에서 도주한 무리와 모의하여 반란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세력에 의해 정치변동과 이에 따른 새로운 질서수립이 이루어진 최초의 의미로 제시된 것이다.

문명국가로의 정체성이 이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정형화된 동아시아 질서 관념은 화이적 세계관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서에서 동으로의 파장을 문명전환과 안정적 질서 수립의 징표로 인식하게끔 작용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공-책봉체제에 기초한 사대외교의 규범성이 시작된다.

상기한 역사 전개과정을 전제로 14세기 말 등장하는 조공체제=사대외교라는 규범적 모형은 원명 교체와 여선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원명 교체는 명 왕조에게 중화회복이라는 과제를 던져준 동시에 고려왕조에게는 원 제국의 붕괴라는 서쪽으로부터 출발한 변동에 따른 자주회복이라는 과제를 제공했다. 더구나 이미 고려의 공민왕은 몰락하는 원 제국질서에 도전함으로써 오히려 서쪽변동의 힘에 따른 응전으로서 동쪽으로부터 출발한 변동의 파장을 증폭시켰고, 신흥하는 명 왕조에 규범적인 사대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기존 원 제국의 물리적 구속력에 저항했다.

정말 명 왕조는 원 제국에 비해 훨씬 질서정연함을 비교할 만큼 규범적이었을까? 외형상 명 왕조는 고려의 자발적 사대에 “자고로 천하에는 중국이 있고 외국이 있다. 고려는 바다 밖의 나라이며 자진하여 와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대하는 예를 잃지 않으며 본분을 잘 지키고 있다”²⁴⁾는 만족을 표시한다. 사실 명 홍무제는 원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의 복귀라는 과제를 표방함으로써 이념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성공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동아시아 질서구조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태생이 빈천하고 생존을 위해 승려도 되었고 반체제적인 명교(明敎)의 신도였던 홍무제 주원장이 얼마나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관계의 역사성을 체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상기한 답변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동아시아 질서구조의 상부에서 작동하는 역사성과 전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뿐더러 그 장력이 이율배반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점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와 이적이라는 관념적인 이항대립 구도만을 공유할 뿐 사대 속 자주를 확보하려는 의지와 또 다른 사대로의 치환을 기획한 매개자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즉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질서의 구조적 속성이 이중적이며 그 접점에서 안정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홍무제는 전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 시해와 무신연합세력의 복귀과정에서 고려가 북원과의 사대로 환원하고 이어 요동공벌을 추진하자 명 홍무제는 자연스럽게 그 의도를 의심함으로써 명-고려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 창왕 원년 3월 명나라는 “오늘에 신하가 아비를 쫓아내고 그의 자식을 세워놓고 조근하러 오겠다고 청한다. 이것은 인륜상도의 큰 변고로서 임금이 자기 도리를 전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신하도 또한 신하로서 못할 대역을 감행한 것이다. 온 사자를 타일러서 돌려보

24) 『高麗史』 卷43, 「世家」〈恭愍王 壬子 21年〉, “自古天下有中國有外國. 高麗是海外之國, 自來與中國相通, 不失事大之禮, 守分的好有.”

내고 동자(창왕)도 조근하러 올 것 없다고 지시하라. 세우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
이요 폐위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다. 우리 중국은 상관치 않겠다”²⁵⁾는 홍
무제의 말을 전하는데, 우왕의 폐위와 최영의 사형 등 요동공벌의 관련자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찬탈을 문제 삼아 고려를 압박하는 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반면 고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동공벌의 실상은 내부 정치세력의 제거와
권력회복을 동기로 자주를 쟁취하려는 고려의 대외정책에 일관된 것이었음도 불
구하고 그 역사성에 무지한 홍무제가 시작부터 원 제국의 강역전부에 대한 점유
권을 주장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즉 고려의 자주 욕구로부터 출발한 파장과 명
왕조의 지배 욕구로부터 출발한 파장이 충돌한 결과였다. 따라서 조선건국은 대립
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질서구조의 동요를 안정화시킨 계기로 작동한다.²⁶⁾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 왕조 스스로 종주를 자임함으로써 시작된 동아시아 질
서재편의 파장이 고려의 도전, 즉 동으로부터의 파장에 의해 불안정해졌지만, 조
선의 사대, 즉 동으로의 파장을 수용하는 경우에 안정으로 진입했다는 평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소라는 대국의 은밀한 압력을 수용하려는 소국의 사대 자체가
최선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검증해야 한다. 이미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에서
“소국으로서 대국을 거역하니 한 가지 불가”²⁷⁾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이로 인해
조선건국은 태생적으로 역성혁명인 동시에 외교상 춘추질서관념에 충실하다는 교
의적 모순을 지닌다. 그것 역시 동아시아 질서구조에 내포된 원형적인 이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은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한 것일까? “소방(少邦)에서는 공
민왕이 이미 죽은 뒤로부터 변고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신은 매양 사대
에 전심하여 다만 절개를 지키기를 더욱 굳게 했다”²⁸⁾는 이성계의 표문에서 밝
히듯이,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명 왕조에 사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건국기 불안정성을 해결해 줄 경제적·문화적 실리를 추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 중심의 천하 질서하에서 한-중관계의 변화는 조공체제
가 어떻게 양측에서 정치적 도구이자 안보 메카니즘으로, 그리고 무역과 문화적
전파의 관로(管路)로 기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²⁹⁾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조선의 사대는 국가보전이라는 내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대국의 통치자로 소국을 섬기는 자
는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자이고 소국의 통치자로 대국을 섬기는 자

25) 『高麗史』 卷137, 「列傳」50, 〈辛禡〉, “今臣子逐其父立, 其子請欲來朝, 盖爲彝倫大壞, 君道專無, 不臣之逆大彰. 諭使者歸, 童子不必來朝. 立亦在彼, 廢亦在彼, 中國不與相干.”

26) 물론 조선 역시 애초부터 명과의 사대관계를 복속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원명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특히
요동지역의 판도변화는 곧 조선의 통치영역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북방개척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윤훈표, “조선전기 북방개척과 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집(2005)을 참조.

27) 『高麗史節要』 卷33, 〈辛禡 14年〉, “太祖曰, 今者出師有四不可. 以小逆大一不可.”

28) 『太祖實錄』 〈1年 12月 17日〉.

29) Clark(1998), Op. cit., pp. 272-273.

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³⁰⁾라는 『맹자』의 정언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국의 위세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을 잘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국을 섬기는 것은 단지 자기 국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³¹⁾이라는 조선내부의 해석은 명종시대(1554)에 이르는 16세기까지 조선이 사대의 규범성을 통해 내부체제의 공고화라는 실용성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결국 사소·사대의 관념은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내부의 질서를 부합시키는 합리적 선택, 즉 외교적 실천지(prudence)인 셈이다.³²⁾

2. 남북 간 긴장의 쌍방향성

동아시아 질서구조의 역동성은 16세기 왜란과 17세기 호란이라는 남북방향으로 부터의 압박에 의해 전쟁과 질서의 궤적을 반복 교차한다.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도는 명 영락제 집권 이후 내치의 안정과 국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일본의 경우 남북조 내전이 정점을 지나 마무리로 접어들었던 국면이다. 이로 인해 조선은 조공체제와 사대외교의 공고화라는 흐름 속에서 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세종 즉위 직후 “섬에 있는 왜구는 우리 족류가 아니기에 마땅히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에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깊고 궁벽한 곳에 나누어 두어야 한다”³³⁾는 박은과 허조의 건의나 세종 16년 파저강 여진의 귀순과 왕래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제 그들을 토벌한 후에 얼굴을 바꿔 내부(來附)하니 예의상 후하게 대해야 마땅하나 우리 족류가 아니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검은 면이 있을 것이니 어찌 귀부하는 마음만을 믿고 출입의 방지를 엄중히 하지 않겠는가”³⁴⁾라고 계고하는 세종의 모습에서 조선 초기 정치적 경계 짓기와 통제력을 바탕으로 기미(羈縻)정책 기조에 따른 교린관계 설정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반대로 명-여진-조선-일본으로 구성된 사대-기미의 이중적 질서구조는 왜란에 의해, 그리고 여진의 중원진출과 호란으로 파괴되면서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켰고 압박과 충돌의 점점에 사대와 기미의 에이전트로서 조선이 위치함으로써 긴장의 관리 및 해결의 연결고리 역할에 실패했을 때 임란-호란-청일전쟁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질서의 이중적 구조에 가장 먼저 도전한 변수는 일본의 내부정국과 연계된 왜구(倭寇)였다. 왜구의 출몰은 명-조선 각자의 내부문제로 즉각적으로 전화되었던 동시에 명-조선-일본 삼국관계를 언제든지 적대관계로 변질시킬 휘발성을 안고 있었다.³⁵⁾ 특히 제국으로의 팽창을 보여주는 명 영락제의 초기 대외정책

30) 『孟子』「梁惠王 下」2,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31) 『明宗實錄』〈9年 7月 18日〉.

32) 노재봉, “외교와 Prudence,” 『세계정치』 8권 1호(198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89쪽.

33) 『世宗實錄』〈1年 7月 6日〉.

34) 『世宗實錄』〈16年 1月 12日〉.

35) 현재 인문학에서 말하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한국, 일본, 중국의 개별적인 역사에 대한 비교사적 차원의 연구를 넘어서서 이들을 개별단위가 아닌 ‘동아시아’라는 확대된 범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삼국 간 역사연구에서 ‘바다’라는 새로운 지역이 설정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왜구’는 삼국 간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왜구는 동아

은, “일본국 노왕은 지성으로 사대하여 도둑질함이 없었는데, 지금의 사왕은 초절을 금하지 아니하여 우리 강토를 침요하고 또 명 태조의 영정을 벽에 걸어 놓고 그 눈을 찌른다니 그 부도덕함이 이와 같다”³⁶⁾는 진술에서 드러나듯, 규범적 대응으로서 사소보다 물리적 폭력사용을 명시한 불관용이 우선적인 선택임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명 왕조의 불관용에 기초한 군사적 응징계획은 정왜론으로 조선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영락제의 정왜론이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전개되었을지는 의문이다. 명 왕조의 개국과정에서 체제위협의 요소는 북방 유목국가였다. 명 왕조 초기 전력했던 북원 견제와 함께 여진 등 요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북변경략은 홍무제로 하여금 남경(南京)에서 북경(北京)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판단까지 가져왔다. 그것은 1420년 영락제에 이르러 실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영락제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의 주요기관을 북경으로 이전하고 이에 저항하는 강남세력을 제거함으로써 화북지역의 발전에 전력하는 상황이었다.³⁷⁾ 그렇기 때문에 명 왕조 내부정책과 평화의 해외원정(6차) 같은 대외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소, 절강, 복건, 광둥 등 강남지역 전반에 걸친 왜구의 피해는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중앙정부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명 왕조가 왜구에 대한 원정을 정말 감행할 의지와 실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³⁸⁾

외형상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그 파장이 확장되는 경우,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긍정적 과정으로 전제했지만, 명-조선-일본 삼국 관계 속 ‘왜구’라는 공통분모에 의해 명-조선-일본으로 이동하는 질서의 파장을 매개하는 조선의 대외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즉 명은 조선에 대해 왜구토벌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조선의 대응 여부에 따라 한-중 관계를 조정하려는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³⁹⁾

사실 사대자소의 규범성이 작동하는 예제는 명(천자)-조선(제후), 조선(제후)-일본(이적)으로 구별되는 중층적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것인데, 명-일본의 긴장은 준왕양이의 기초에서 작동하는 예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기도 했다. 그 파장으로

시아 삼국의 자국사 내에서도 영향을 준 역사상 특이한 존재의 하나인 동시에 각 자국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윤성익, “명대 왜구론에 대한 재고찰,” 『명청사연구』 14집(2001), 1-2쪽.

36) 『太宗實錄』〈13年 3月 20日〉.

37) 남의현, “명대 요동정책과 대외관계,” 『강원사학』 15-16집(2000), 279-280쪽.

38) 비록 명 황제가 동아시아의 다른 정치체에 종주임을 공언했음지라도 중국왕조는 주변국들에 대한 중심부로서 기능하지 못했고 합법적인 폭력사용에 동의하거나 독점을 강요할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국들, 특히 조선(Chosŏn Korea), 태국(Ayutthaya), 운남(Sipsongpanna) 등은 독자적인 군대와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고 자원과 영토를 둘러싸고 중국왕조와 경쟁했다. 몇몇 국가들은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서슴없이 중국과 전쟁에 돌입했다. 국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정치적 구조 역시 모든 국가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였다. 조공은 중국이 정점에 놓인 계서적 질서구조를 보여주지만 아시아의 국제관계사는 실제로 무정부 상태와 계서적 질서 간 긴장에 의해 작동되었다. Brook&van Praag&B tjes(2018), Op. cit., p. 70.

39) 윤대식, “이천의 문무겸전 리더십,” 정윤재 외 지음, 『세종과 재상: 그들의 리더십』(파주: 서해문집, 2010), 200쪽.

인해 명-조선의 사대-사소 관계 역시 규범성에서 이탈하여 폭력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고, 조선-일본 간 기미교린의 통상적 관계조차 의심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반면 조선은 초기부터 일본 중앙정부와 교린을 통해 왜구 통제의 기대와 더불어 “더욱 교린의 신의를 두텁게 하고, 다시 도적을 금하는 의에 힘써서, 영구히 추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뒷근심이 없게 하고, 사로잡혀 간 인구로서 귀하의 경내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를 두루 추쇄하여 모조리 돌려보내서 수혜를 영구히 하기 바란다” 40)는 기미(羈縻)정책의 기초를 유지했다.

더 나아가 상왕 태종에 의해 추진된 이종무의 1차 대마도 정벌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보다 대마도주의 순응에 따른 조기 철군으로 마무리되었고,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조선의 해안지역 안전을 위해 왜구토벌이라는 기미관계의 이중구조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선은 명에 대해 변병 역할을 유지한 채 일본과 교린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왜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41)

한편 조선-여진의 교린 역시 왜구의 존재를 상정한 조선-일본 관계와 동일하면서도 좀 더 복잡적이었다. 물론 원 제국 멸망 이후 조선의 북방지역은 지배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 지역 여진이 조선으로 귀순이 보다 용이해지거나 의존적이 되었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여진 내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동아시아 세계 질서’는 명 왕조를 중심으로 조공-책봉체제라는 위계질서를 막 형성했기 때문에 질서의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새로운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명-조선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는 건주여진의 존재였다. 명-고려 관계에 이어 명 홍무제가 태조 이성계의 즉위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만주지역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었다. 원 제국의 영역을 모두 승계한다고 주장한 명의 입장에서 과거 다루가치 지위를 계승하고 이두란과 같은 여진 출신의 공신까지 배출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된 동북면에 대한 태조 이성계의 권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잠재적으로 이성계와 동북여진 간 협력의 위험성이 명 왕조의 만주 통제력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42)

이후 명 영락제는 다섯 차례의 몽골친정에 따라 배후지역인 만주의 여진을 회유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건주위를 설치하고 아합출(阿哈出)을 건주위지휘사로 초무함으로써 지배의 공백상태로 남겨진 만주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여진 입장에서조차 경제적 이익 여부에 따라 명과 조선에 입조하거나 무력침탈을 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그 손자 이만주(李滿住)의 건주여진은 오랑캐(兀良哈)로서 농경생활을 하던 부족이었는데 내지의 우디

40) 『太宗實錄』〈2年 7月 11日〉.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선시대 군사전략』(2006), 68쪽.

42) Clark(1998), Op. cit., p. 277.

케 침입을 막는 강력한 변병을 필요로 했기에 명의 후원을 받았고, 그 결과로 명 왕조는 건주본위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 명의 요동정책은 왕조의 창업근거지(肇基之地)를 침범할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비쳤기에 이 지역을 보전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조선건국과 태생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던 두만강 지역 여진에 대한 통제력까지 도전받는 것이었으며, 조선에 순응하던 여진이 오히려 체제위협 요소로 돌변할 위험성이 커졌던 것이다.⁴³⁾ 이미 조선건국과정에서 “즉위한 뒤에 적당히 만호와 천호의 벼슬을 주고, 이두란을 시켜서 여진을 초안하여 피발하는 풍속을 모두 관대를 띠게 하고, 금수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복역과 납부를 편호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문무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되게 되었고, 천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로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았다”⁴⁴⁾는 태조 치세 기사로부터 여진 교린의 방법론은 일차적으로 생계와 교화에 중점을 둔 사소의 채택이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 여진 교린은 고려 이후 계속 진행된 향화인(向化人)에 대한 포섭과 동화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의 적극성은 그 배후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즉 명-조선의 책봉-조공체제라는 틀 내에서 여진에 대한 통제력을 둘러싼 경쟁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과정에서 이성계의 사병에 참여했던 토착 여진에 대한 포상, 그리고 고려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정책으로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정치적 지위를 통한 공동체로의 포섭 등 정치적-경제적 동기가 작동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수직(授職)정책은 고려에 비해 수직대상과 범위, 인원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성공적인 영토 개척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⁴⁵⁾

다시 말해 조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틈새를 바라보면, 내부적으로 고려 후기에 들어서야 뚜렷하게 나타난 성관(姓貫)제도의 확산⁴⁶⁾과 더불어 외부적으로 여진인에 대한 포상으로 경제적 욕구를 들어주는 내조(來朝)와 정치적

43) 이성계는 이미 왕조 건국 전부터 여진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명과의 사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진의 잦은 침입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명-여진의 결탁을 견제하거나 여진-몽골 잔여세력의 결속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고려 말기부터 다시 적극적인 수용정책으로 전환된 여진에 대한 초무책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어 두만강 유역의 오도리(吾都里), 울랑합(兀良哈), 울적합(兀狄哈) 등에 대해 본래 우리에게 속해 있었다는 귀속인식이 형성되어 이들을 ‘번리’(藩籬)로 명명했다. 유재춘, “여말선조 조명 간 여진 귀속경쟁과 그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42집(2012), 42-43쪽.

44) 『太祖實錄』 <4年 12月 14日>.

45) 태조~성종 대까지 조선의 관직을 받은 수직 여진인은 총 952명으로 태조 대 34명, 태종 대 28명, 세종 대 135명, 문종 대 6명, 단종 대 237명, 세조 대 426명, 예종 대 3명, 성종 대 83명이다. 수직정책은 세종대에서 변화를 맞이하여 급격히 증가하면서 명과 공조하여 이만주를 제거한 모련위 정벌과정에서 종군한 여진인들에 대한 대거포상이 이루어진 세조 대에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경인문화사, 2011), 20-40쪽.

46) 귀화정책이 가장 개방적이었던 고려 초기 100년 동안 20만명 가까이 귀화했는데, 『송사』 「고려전」에 ‘男女二百十萬口’로 소개하는데, 『송사』 편찬시기(1340년대)를 감안하면 고려 초기에 대한 소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려 초기 인구가 210만 정도로 추산될 경우 귀화인의 비중은 10%에 달할 정도로 문화와 사람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박옥걸,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국학자료원, 1996), 182쪽.

지위를 인정하는 수직이 본격화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⁴⁷⁾

세종의 친정이 이루어진 5년부터 두만강 지역의 몽케테무르(童孟哥帖木兒)가 회령으로 귀환하고 건주의 이만주가 파저강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과 맞물려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며 이에 발맞춰 두만강 지역 여진인의 내조가 빈번해지기 시작한다.⁴⁸⁾ 이에 따라 “중국 조정이 이적에게 도둑 이하의 관직을 아낌없이 제수하는 것은 시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난폭한 짓을 기미(羈縻)하고자 하는 것. 또 우리나라 초기에도 만호와 선략장군이라는 직계를 멀리에서 제수하기를 아끼지 않았음은, 또한 그들을 기미하고자 한 것”⁴⁹⁾이라는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의 전통적인 이해를 최선의 외교정책으로 동의했던 세종의 정책은 서북의 사군과 동북의 육진 설치로 이만주 세력을 압록강에서 축출하고 변경의 소요를 잠재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명-조선의 사대자소 관계와 조선-여진의 사대자소 관계를 일치시키는 합리적 선택이었던 셈이다.

결국 명-조선의 조공체제, 명-여진의 책봉체제 속에서 조선-여진의 관계는 세종 시기 호조 참판 심도원의 견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에 야인의 걱정이 있는 것은 중국에 용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어하는 방법과 방책에 갖추 실려 있으니, 대요는 정벌과 화친 두 가지에 불과”⁵⁰⁾하다는 조공사대(朝貢事大)와 기미교린(羈縻交隣)을 모두 수용하여 연계하는 중층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III. 축소된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 관계

‘동아시아 세계’는 지역명칭과 보편적 명칭이 혼용되는 형식모순을 갖지만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시대 동아시아가 주민들에 의해 ‘세계의 일부’가 아닌 ‘전 세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시아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세계를 이루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전통시대에 정치적-문화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이루고 있었던 역사적 범주를 의미하며 그 구성요소로서 중국, 한국, 베트남, 몽골, 티베트, 만주, 일본 등은 별개의 역사공동체를 형성하여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동아시아 ‘세계’라는 한 차원 높은 역사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운명과 문화를 공유했다. 비록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에 중국왕조가 놓여 있었지만 동아시아 세계와 그 문화가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형성하고 창출한 것이듯, 동아시아 세계질서도 모두에 의해 구축되고 운

47) 한성주(2011), 앞의 책, 5쪽.

48) 박정민, “조선 세종대 여진인 통교체제의 정비,” 『한국사연구』 163호(2013), 192-197쪽.

49) 『世宗實錄』〈19年 12月 24日〉.

50) 『世宗實錄』〈15年 2月 15日〉.

영된 것이기도 하다.⁵¹⁾

여기서 상정한 동아시아 질서구조의 장력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 곳으로 집중되어 질서의 형태로, 사방으로 분산되어 분열의 형태를 취한 듯이 보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질서를 의미하는 일원성을 향한 변동의 힘과 그 방향성이 서로부터 동으로 진행된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다. 바로 직전 당(唐) 제국의 개방성과 일원성에 기초해서 신라의 통일로 유지되었던 동아시아의 안정성이 당 제국의 멸망이라는 외연의 붕괴와 우리 내부의 후삼국 경쟁이라는 내포의 분열과 맞물려 붕괴되면서 10세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일원성을 향한 요 제국-금 제국-원 제국 등 변동의 힘이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이러한 역사의 순환을 전제로 한다면, 조선건국은 동아시아 질서 내부를 흐르는 장력, 즉 원명(元明) 교체라는 서쪽으로부터 변동의 파장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해결이었고, 고려 멸망과 신왕조 건설이라는 내포 분열의 장력이 외연의 일원성과 조응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관건은 파장의 근원인 동쪽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명 교체라는 변동의 근원에서 원 제국은 상기한 10세기부터 이어져 온 요-금-송으로의 분열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했다는 명분을 찾아냄으로써 몽골의 중국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의 통일체에 대원(大元)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다. 원 제국의 창시자 쿠빌라이는 제국을 선언하면서 요-금-송의 합법적 계승자임을 선포한 셈이었고 일통(一統) 개념으로 이를 포괄했던 것이다.

반면 주원장의 지배영역은 쿠빌라이가 일통한 영역과 달리 몽골과 시베리아 영토를 포기했고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원 제국보다 광대하지 못하고 당 제국에도 미치지 못했다. 후대 영락제의 팽창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명 왕조의 힘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결국 외부팽창이 가장 어려웠던 북쪽 변경에 만리장성을 건립하여 외부와 경계 짓기를 시도해 버렸다.⁵²⁾

이민족을 몰아내고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자부한 명 왕조 초기 홍무제-영락제 연간 의욕적인 북방원정과 팽창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명 왕조는 스스로를 중심부로 규정하는 중화(中華)와 주변부를 이적(夷狄)으로 구분하는 관념적 경계 짓기로 출발하여 마침내 만리장성 구축과 명 중심의 천하질서라는 조공체제를 통해 외부와 물리적 경계 짓기를 완성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개방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했던 전임 왕조와 달리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축소된 세계관을 가지고 질서를 주재한 셈이며, 자신들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더 분명한 경계 짓기에 몰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⁵³⁾

51) 김한규,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 50호(2000), 282-283쪽.

52) 명 왕조 중엽이 되면 원 제국 때보다 변경이 훨씬 축소되는데 북으로 500킬로, 동북으로 250킬로, 서북과 서남으로 각각 1000킬로 축소되었다.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서울: 너머북스, 2014), 63-69쪽.

그렇게 보면 열국 간 생존을 위해 치열한 투쟁에 돌입했던 춘추시대부터 상시적인 사신, 조근, 빙문, 회맹, 향연 등 외교사절의 끊임없는 왕래와 소국이 입조하면 대국이 빙문을 하는 국가 간 경계출입의 절차와 의례가 형성되었던 것처럼,⁵⁴⁾ 천자국을 자처하는 명을 중심으로 제후국으로 명명된 주변부 국가들과의 의례로서 사대자소의 조공-책봉체제를 유도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서로부터 동으로의 파장: 명의 과시적 사소와 조선의 지성적 사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종결되고 진 제국에 이어 한무제(漢武帝) 이후 사방으로 팽창을 진행함으로써 이후 중국왕조들이 외국과 관계를 맺을 때 채택한 공식적인 방식으로서 조공과 부분적 형식으로서 교역의 패턴이 형성되었다. 특히 한 제국 시기 제국팽창을 위해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대외정책 기조와 교역에 전력을 기울인 방향이 서북쪽이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⁵⁵⁾ 즉 중국의 어느 왕조에게도 외부로부터 침투에 가장 쉽게 노출된 곳이 서쪽 변경이었고, 한 제국 이후로 팽창의 방향성 역시 서북-서남쪽을 향한 것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서 서쪽 변방의 흡수-교체-멸절의 내부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 과정이기도 했다.⁵⁶⁾

이렇듯 조공체제는 중국대륙을 지배하는 권력을 세계의 중심축으로 하고 이로부터 물결무늬가 퍼져나가듯이 유교문화와 통치권이 확산되는 위계질서가 화이사상에 기반한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심부-주변부 관계는 중국왕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공체제는 주변 이민족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지배부터 동등한 관계 또는 다른 민족의 우세한 상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대외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의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조공체제에 참여하는 데는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 쌍방향적 관계라는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⁵⁷⁾

따라서 조공체제의 실질을 들여다본다면, 주변 외국에서 조회하러 입조하면서 공물로 현지의 진귀한 물건을 함께 보내면 중국의 황제가 답례로 회사품을 하사하거나 책봉을 부여하거나 왕위계승 논쟁에서 지지자를 통치자로 임명하는 등 상호인정과 상호합법화를 위한 장치로 기능했고 질서구조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

53) 시혜적인 조공체제는 종종 갈등적재적인 세력균형 정치의 베스트팔렌 체제와 비교되는데, 패자의 배경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제국의 시혜를 찬양하는 연사들, 공평무사함, 유교와 같은 가치들의 수용에 달려 있었다. 즉 순수하게 문화적 요소들과 유교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체제였다. 유가 사상가들은 조공품의 교환의례에 외국인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문명화된 백성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복속의 자세가 그들에게서 중국왕조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내면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모리스 로자비가 말한 외부공격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로 조공체제를 이해하게 한다. Brook&van Praag&B tjes(2018), Op. cit., p. 71.

54) 송진, 『중국 고대경계와 그 출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10-113쪽.

55) 윤대식, “고대 중국의 서진(西進) 전략에 혼재된 공사 동기의 실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권 1호 (2021), 5쪽.

56) 티모시 브룩(2014), 앞의 책, 68-69쪽.

57)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21쪽.

국왕조의 야욕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이었다.⁵⁸⁾ 따라서 조공을 통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상대국의 교역기회라는 윈-윈 하는 국가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할 때, 명의 대외정책 기초가 관용에 기초한 조공관계와 불관용에 기초한 군사적 응징으로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히 관용과 불관용의 교차라는 특징은 주원장의 《황명조훈》(皇明祖訓)에서 찾아진다. 《황명조훈》은 홍무제가 후대 황제들에게 조언과 훈계하는 내용으로 안정적 통치를 위해 남긴 일종의 가훈인 셈인데, 여기 첫 조항에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함께 15개의 부정제이국(不征諸夷國)을 거론함으로써 윈의 멸망과 명의 건국 사실을 주변국에 알리는 데 힘쓰면서 주변국에 대한 방침을 미리 구상했음을 보여준다.⁵⁹⁾

《황명조훈》의 내용은 중화의 회복, 해외제국의 초무와 불관용이다. 중화의 회복은 한족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명 왕조가 중국의 정통 정부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해외제국의 초무는 중화사상과 유교이념으로 주변국들을 교화시켜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조공을 통한 위계질서하에 주변국에게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시혜하는 한편, 명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불관용을 내세워 군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⁶⁰⁾ 물론 군사적 응징을 행사할 실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 사안이다.

홍무제는 “무릇 해외 夷國, 예를 들어 安南·占城·高麗·暹羅·琉球·西洋·東洋 및 南蠻 諸小國들은 산과 바다로 막혀있고, 한구석에 있다. 그 땅을 얻어도 공급에 부족하고, 그 백성을 얻어도 부리기 부족하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와서 우리의 변방을 소란스럽게 한다면, 그들에게 복(祥)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중국의 우환(患)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가버리면 정벌한다면 역시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胡戎은 중국 서북에 가까워 대대로 변방의 환이 되어 왔기에 반드시 장수를 정선하고 병사를 훈련시켜 시시로 그들을 신중히 경계해야 한다”(홍무 4년 1371)고 계고함으로써 만약 명에 우환이 되지만 않는다면 함부로 정벌하지 않겠다는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을 세웠다. 그 대상은 동북쪽의 조선, 정동편북(正東偏北)쪽의 일본, 정남편동(正南偏東)의 류구(대류구, 소류구), 서남쪽의 안남, 진랍(眞臘), 지나(暹羅), 점성(占城), 소문답자(蘇門答刺), 서양, 조와(爪哇), 분형(湓亨), 백화(白花), 삼불제(三佛齊), 발니(渤泥) 등이었다.⁶¹⁾

58) 티모시 브룩(2014), 앞의 책, 425-426쪽.

59) 임상훈, “명대 국제관계의 기틀-홍무제의 15개 부정제이국 구상과 그 형성과정,” 『한중관계연구』 6권 3호 (2020), 223-224쪽.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6), 앞의 책, 58-59쪽.

61) 홍무제는 빈한한 출신으로 황제에 오른 자였기에 대대손손 안정된 통치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심했다. 특히 그는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자 했고, 국제관계에서도 역시 수양제의 류구 정벌이라는 역사를 통해 감계(鑑戒)했던 것이다. 즉 홍무제는 수양제의 교훈을 통해 주변국을 정벌해서 함락해봐야 다스리기도 힘들고, 땅이나 백성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듯하다. 국제관계에 대한 홍무제의 실용적인 인식은 이후 명의 외교 방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틀림없다. 명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海禁’ 등으로 대표되는 폐쇄성이다. 영락 연간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명은 ‘확장’ 보다는 ‘수렴’을 중시하였다. 홍무제가 수양제로부터 얻은 교훈 역시 ‘한 글자도 바꾸

동시에 서북 변경의 취약성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빈천한 출신의 홍무제가 강력한 황제권으로 국가통치를 주도하기 위해 주변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과 신하들에 대한 불신으로 철저한 사찰정치를 시행하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보수적인 정치운영을 했던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이 점에서 내부적으로 적장자 계승원칙을 세우고 황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황자는 분봉을 통한 친왕(親王)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봉제도의 기원이 주 왕조에서 시작되었지만 홍무제가 모델로 삼은 것은 군사적 거점을 분봉받아 실질적인 군사권과 독립적인 재정-행정-사법권을 행사했던 요-금-원 제국의 가산제적 분봉제도에 가까운 봉전제(封典制)였다.

바로 이 봉전제가 내부적으로 황제를 정점으로 한 일원적 통치체계를 지향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선 등과 같은 조공국에 대한 책봉(冊封)의 은전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⁶²⁾ 즉 친자식들을 변경지역에 분봉하여 명 왕조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황제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들을 가장 먼 거리로 배제하면서도 외부의 도전 또는 침략을 방어하는 변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 이민족 국가들의 자발적인 사대와 조공에 응답으로 책봉과 회사품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들에 대한 초무와 함께 왕조의 안전을 규범화로 방어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무제가 명을 방문하는 사신단을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사신을 보낸 변경 너머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조공사신을 맞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는 점도 분명했다. 『명사』에는 홍무제 2년~30년까지 빠지지 않고 매년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입공(入貢)한 주변국 명단소개로 마무리하는데, 안남-고려-참파-자바-보르네오-수마트라-시암-일본-캄보디아-류구-티베트 등이 조공했고 이에 홍무제가 만족했지만, 작은 무시와 잘못에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었다.⁶³⁾ 대표적으로 1379년(홍무제 12년) 명에 점성, 조와, 지나, 일본, 안남, 고려가 조공을 바치려 입조했는데, 고려가 황금 1백근, 은 1만냥을 조공하자 약속이 같지 않다고 물리쳤고(高麗貢黃金百斤, 白金萬兩, 以不如約, 却之), 다음 해 류구, 일본, 안남, 점성, 진랍, 조와 등이 입조했는데 일본은 표문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쳤다(日本以無表却之)는 기사를 보면,⁶⁴⁾ 홍무제 자신이 의례를 엄격히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손상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컸음을 엿볼 수 있다.⁶⁵⁾

어서는 안 되는’ 철칙으로 남겨져, 이후 명의 국제관계에 대한 주요 방침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임상훈(2020), 앞의 글, 224-229쪽.

62) 김경록(2017), 앞의 글, 70-75쪽.

63) 티모시 브룩(2014), 앞의 책, 428-429쪽.

64) 『明史』〈本紀第二 太祖二〉.

65) 사실 『高麗史節要』〈辛禡 2年〉 기사에는 오히려 홍무제가 “마땅히 전왕(前王)의 약속대로 금년에 말 1천 필을 바치고 김정배신 반수(半數)를 보내어 조회하고, 명년에는 금 1백 근, 은 1만 냥, 좋은 말 1백 필, 세포 1만 필을 조공하여 해마다 이를 상례로 만들고, 또 잡아간 요동 백성을 몇만 명이 되든지 따지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런 뒤에야 왕위가 진실하고 정령이 행하여지는 것을 짐이 의심하지 않을 것” 이라고

요컨대 홍무제는 건국 초기 상황 때문에 내부적으로 황제 중심의 일원적 통치 질서를 갖추기 위한 일련의 제도정비와 정치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당면한 최대 위협세력이었던 북원에 대한 대단위 정벌전쟁과 주변에 산재한 북원세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군사활동, 그리고 기존 원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던 고려를 비롯한 주변국을 회유하여 명 중심 국제질서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병행했던 것이다.⁶⁶⁾ 따라서 대국의 사소는 주변국의 자발적 복종과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규범적 성격이 짙지만 실제 대국의 규범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선행조건으로서 소국의 자발성이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명의 관점에서) 탈규범적 행위로 도전할 경우, 춘추오패가 보여주듯, 그 논리적 수순으로 언제든지 물리적 폭력전환을 내포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공체제하에 소국의 사대 자체는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제 조선의 관점으로 되돌아오면, 합리적 선택이 언제든지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건국 초기 불안정한 내부기반을 고려하면 규모와 실력에서 차이를 가진 명 왕조와 직접적인 대결 또는 북방세력과의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할 사안이기도 했다. 그 내부 불안정이 왕조의 정당성과 국왕의 정통성에서 비롯한 찬탈이나 선양이나 하는 문제로 비화되면 더더욱 조심해야 했다. 더욱이 조선의 건국세력은 이념적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수용한 성리학적 학습배경을 지닌 자들이었고, 혁명을 통한 왕조교체를 천명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천자의 승인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하고 있었다.

관건은 조선건국에 관한 홍무제의 인식과 태도였다. 그런데 명 왕조의 반응은 이중적인 것이었다. 특히 홍무제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의심과 임시책봉을 거론하며 언제든지 관용의 정책을 불관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협박과 허세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태조 집권 내내 하나의 핸디캡으로 남게 된다.⁶⁷⁾ 왜 그랬던 것일까?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성계는 명 홍무제에게 표문을 보내 국호개정을 요청하며 책봉을 통한 정통성을 보장받으려 했는데, 『명사』에는 “고려 이성계가 그 주인 왕요를 유폐시키고 스스로 왕위를 세워 국인으로 하여금 표문을 가지고 내조하여 황명을 요청하니 불러 듣고 그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했다”⁶⁸⁾고 소개한다. 아주 간단한 기록이지만 명 왕조 입장에서 자발적인 조공과 책봉을 요구하는 새로운 왕조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 듯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조는 중화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정복과 유대(cohesion)의 기획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명 왕조보다 더 급진적인 기획을 추구했다는 점에서,⁶⁹⁾ 양자 간 관계의 불안함이 노정되어 있었다.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11월 29일 예문관 학사 한상질을 남경으로 파견하여 조

압박한 것으로 소개된다.

66) 김경록(2017), 앞의 글, 62-65쪽.

67) Clark(1998), Op. cit., p. 276.

68) 『明史』〈本紀第三 太祖三〉.

69) 베스타(2022), 앞의 책, 52쪽.

선과 화녕 중 하나로 국호를 개칭할 것을 명에 요청했다. 『명사』의 기록은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듬해 2월 15일 한상질이 명 예부의 자문(咨文)을 받아 전달하자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국호를 반포한다.⁷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홍무제와 태조 이성계, 그리고 명-조선 간 조공-책봉 과정과 형식요건이다. 그런데 동년 5월 23일 명나라 흠차내사 황영기·최연 등이 홍무제의 조칙을 가지고 들어와서 명-조선의 혼단(釁端) 3가지와 2가지 모욕-대략 절동과 절서지역의 불량한 무리들이 이성계에게 은밀히 정보를 보냈다는 점, 요동지역민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변경침탈의 마음이 있다는 점, 여진인의 귀속을 유인했다는 점 등이고 자신을 업신여겨 앞에서 신하라고 말하며 바친 조공이 쓸모없는 것들뿐이라는 점, 국호개칭을 허용했더니 그 이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이 명-조선 간 관계의 어그러짐을 가져온 모욕-을 받은 사유를 거론하며 “동방을 정벌하여 업신여기고 혼단을 일으킨 두 가지 일을 설욕할 것”이라는 홍무제의 협박을 전한다.⁷¹⁾

정말 홍무제는 조선의 ‘혼단’을 발견해서 그 응징의 조치로 관용과 불관용의 대외정책 기조를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조선은 명의 처지와 트집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과 명의 내부상황이 갖는 공통점에서 이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아낸다. 조선의 건국세력은 성리학의 이념 위에 새로운 사회로의 완전한 재조직을 기획했고, 그것은 인간행동, 국가건설, 사회발전을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일련의 이상을 제시한 이념 위에 보편통칙으로서 도덕적 원칙(理)에 따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조선은 이념이 중심이 되는 국가였고 중앙집권 국가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⁷²⁾

명 왕조 역시 황제를 정점으로 봉진된 친왕들과 주변국이 포진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양자의 내부분제 해결책은 외부분제 해결책과 일관된다. 양자 모두 성리학의 이념 위에 명 왕조가 전통회복과 내면화의 방향을 취하고 조선왕조가 새로운 사회조직과 급진적인 방향을 취함으로써 접점에서 충돌보다는 타협을 찾아냈던 셈이다. 요컨대 명 왕조는 안팎의 도전으로 인해 조선이 취한 사대의 찬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조선의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⁷³⁾

그렇게 보면 조선 건국세력은 명으로 하여금 기사(箕子)와 중화문명이 연관된 ‘조선’으로 국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인데, 조선으로의 개칭 의도는 예조전서 조박이 올린 상서에서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⁷⁴⁾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중국과 구별되는 별도의 세계인 ‘동방’의 시조 단군의 조선이고 기사를 통

70) 『太祖實錄』〈2年 2月 15日〉.

71) 『太祖實錄』〈2年 5月 23日〉.

72) 베스타(2022), 앞의 책, 52-53쪽.

73) 베스타(2022), 앞의 책, 57-59쪽.

74) 『太祖實錄』〈1年 8月 11日〉.

해 중화문명을 향유하게 된 계기를 얻어 중국과 구별되고 여타 이적과도 구분되는 문명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정체성의 선언이었다.⁷⁵⁾ 조선 건국세력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체제 틀 내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고 중화문명을 꽃피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도전이 구상한 새로운 왕조 ‘조선’의 탄생이었고, 중화공동체 전략이었던 셈이다.⁷⁶⁾

이러한 조선-명의 개별적인 내부문제가 일단락되고 내부질서의 동기가 밖을 향해 나가면서 양자 간 점점에 이르렀던 것이 표전사건이다. 먼저 명 내부적으로 홍무제 13년 좌승상 호유용(胡惟庸)이 모반을 꾀해 그 무리인 어사대부 진녕, 중승도절 등과 함께 처형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베트남 조공단의 입조를 호유용이 보고하지 않았던 데서 비롯했다.⁷⁷⁾ 조공단의 영접은 재상의 업무가 아닌 황제의 특권이고, 이렇게 재상권력이 황제권위를 압도할 잠재적인 위협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빈천한 출신의 황제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피해망상을 자극하기 충분했으며, 15,000명의 관련자 처형과 14년 동안 4만 명의 관료들이 추가로 처형될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이었다.⁷⁸⁾ 홍무제는 중서성을 철폐하고 승상 관직을 없앴으며 6부 관직을 정비하고 대도독부를 중-좌-우-전-후 5군 도독부로 개편해 버린다.⁷⁹⁾ 모든 권력을 황제 1인이 독점하는 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더불어 문자옥(文子獄) 사건도 외부대상에게 투영되는 동기로 작용했다. 그것은 포의(布衣) 출신 창업군주로 자부했던 홍무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이었다. 홍무제는 원 말 반란집단에서 출발하여 출신지인 안휘성을 근거지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군사집단의 조력과 지주층 출신 지식인과 정치집단을 흡수하면서 명 왕조를 개창했기 때문에 중화 전통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유교주의에 입각한 교화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했으며 지속적인 지식인층의 충원과 제도화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까지, 황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유교적 이념을 확장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했다.⁸⁰⁾

이렇듯 출신과 배움에 대한 홍무제의 열등의식은 황제가 되어서 더 강렬한 자존감으로 표출되었는데, 대부분 무장들이었던 훈척들이 문인을 우대하는 홍무제에게 반발하여 그의 라이벌이었던 장사성의 예를 들어 문유(文儒)들이 『맹자』에서 ‘소인을 뜻하는 사성(士誠)’⁸¹⁾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장사성 자신은

75) 최중석(2018), 앞의 글, 88-89쪽.

76) 중화공동체는 3가지 차원이 중첩된 개념으로 첫째 도(道)의 동일성, 둘째 문화의 동질성, 셋째 정치체제의 동존성(同存性)이다. 조선과 중국은 동일한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동질적인 유교문화를 실현하면서 정치적으로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정도전이 구상한 국가전략이었다. 박홍규(2021), 앞의 책, 214-215쪽.

77) 『明史』〈本紀第二 太祖二〉.

78) 티모시 브룩(2014), 앞의 책, 178-179쪽.

79) 『明史』〈本紀第二 太祖二〉.

80) 윤정분, “명조 경연제도의 배경과 그 특징,” 『명청사연구』 25집(2006), 3-9쪽.

81) 사실 『孟子』「公孫丑下」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나라 윤사(尹士)라는 사람의 맹자비판에 맹자의 답변이 있었고, 그 답변을 들은 윤사가 ‘내가 정말 소인배구나’ (尹士聞之, 曰, “士, 誠小人也.”)라고 했던 고백이다. ‘장사성’ 이름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은 한자로 기록한 문장을 읽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오독이고 이를 빙자한 정치적 프로퍼갠더일 뿐이다.

끝내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항의를 듣고 드디어 문사들에 대한 의심이 가중되어 문자의 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⁸²⁾ 따라서 표전에 쓰인 문장에서 혼단을 찾아내서 모욕감을 토로했던 홍무제의 반응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결국 재상제의 철폐와 관제개편, 그리고 문자옥과 같은 사건들 모두 강력한 황제권력을 정점으로 한 집권적인 군주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구성요소들이 되었으며, 명의 내부통치기제 완비라는 우선과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호를 고친 데 대한 사은하는 표전(表箋)에 업신여기는 언사를 섞었으니, 소국으로써 대국을 섬기는 정성이 과연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⁸³⁾라고 혼단으로 트집을 잡은 홍무제의 모욕감은 경멸적인 문장표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된 문장을 써가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감추고 이를 지성사대라고 호도했다는 판단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된 출신과 학문의 비루함 그리고 국가통치의 이념성이라는 객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홍무제 자신의 열등의식을 황제권위로 은폐하려는 의도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피해의식의 발로였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명-조선의 불편한 관계는 양자 간 내부문제의 우선 해결과 함께 내부문제의 해결기제를 그대로 외부문제로 연계한 일원적 특성에서 비롯했다. 즉 양자 모두 성리학적 이념 위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주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양자 모두 대외문제에서도 규범적 기제를 동원하는 것을 우선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홍무제와 이성계의 개성에 따라 과시-지성이라는 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소-사대의 규범적 관계로 고정되었던 셈이다.⁸⁴⁾

조선과 명의 조공-책봉체제는 기본적으로 중국 내 열국 간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규칙이 중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에도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명-조선 조공관계의 동기는 명 왕조의 권위를 공고화하려는 욕망과 조선의 안보, 경제 및 통상, 문화의 습득 등 국가이익 관철 욕망이 의례라는 규범으로 투영된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 점에서 양자는 쌍무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⁸⁵⁾

이제 각자 내부정변을 통해 새로운 통치자로 교체되는 공통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 내부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실질적인 대외문제의 접점에서 규범이 아닌 실력의 충돌 가능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명의 관점에서 요동지역에 대한 조선의 침투와 조선-여진의 협력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를, 조선의 관점에서 명 왕조의 요동 통제력 확산은 조기지지(肇基之地)에 대한 위협이자 영토와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82) 박원호, “명초 문자옥과 조선표전문제,” 『사학연구』 25호(1975), 95쪽.

83) 『太祖實錄』 <3年 2月 19日>.

84) 홍무제가 조선의 요동에서의 분란 야기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조선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사실로부터 명 왕조가 말한 모욕감은 평계일 뿐 3가지 혼단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최종석 (2018), 앞의 글, 92쪽.

85) 최동희, 『조선의 외교정책』(서울: 집문당, 2004), 27-28쪽.

2. 동으로부터 남북으로의 파장: 조선과 여진-일본의 전략적 사소-사대

초기 외형상 명-조선의 책봉-조공관계는 양자 간 의심과 허세 그리고 전략적 의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지속되었고, 내부 체제정비와 권위확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인해 힘의 방향성이 서로 내부로 향했기 때문에 교묘히 충돌을 피하는 상황이었다. 명-조선의 관계 정상화는 홍무제의 죽음과 함께 즉각 이루어졌다.

적장자 원칙을 내세웠던 홍무제의 후계자 선정은 황태자였던 주표(朱標)가 사망했기에 그 아들인 주윤문(朱允炆, 건문제)이었다. 1398년 즉위한 건문제는 당시 명 왕조의 수도이자 근거지인 남경에 있었고, 1399년 동북지역을 방어하던 연왕 주체(朱棣, 영락제)가 친왕들과 도모하여 북평(북경)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역사적으로 정난의 변(靖難之變)으로 알려진 이 반란은 명 내부 권력투쟁이었지만 오히려 건문제와 연왕측 모두 조선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경쟁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건문제는 연왕 주체에 대항해서 방어를 위한 조선의 군마 조공(貢馬)을 필요로 했고 연왕 입장에서도 남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의 조선변경이 안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은 홍무제보다 관계 정상화를 복원하려는 의지가 더 컸고, 건문제의 경우 양자강 지역에서 연왕의 기병에 맞서 결전을 준비하며 조선의 군마 조공이 절실했기에 조선에서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세자가 살해되고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포기한 채 둘째 아들 이방과(정종)과 다섯째 아들 이방원(태종)이 왕위에 연이어 오른 일을 추궁하지 않고 즉시 승인했던 것이다.⁸⁶⁾ 건문제의 책봉승인은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있지만, 숙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조선의 견제와 군사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403년 남경을 함락시킨 연왕은 건문제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황제에 즉위한 다. 영락제는 ‘오경’ (五經)만으로 통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황위를 찬탈한 영락제에게 반발하는 관료 지식인들의 처형과 탄압에서 유교윤리의 핵심인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도덕적 호혜주의를 발견할 수 없었고, 부친인 홍무제와 마찬가지로 수만 명의 관료 지식인 학살이라는 군주전제를 재현함으로써 고대 제국을 회복하여 의무와 호혜주의라는 유교적 가치를 육성하겠다는 이념적 공언과 달리 이런 가치들을 말살해 버린 닳은꼴을 보여주었다.⁸⁷⁾

조선의 내부사정도 명 왕조와 닳은꼴을 보여주는데,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을 위시한 공신세력에 의해 세자책봉과 공신책봉에서 배제된 왕자들, 특히 다섯째 정안군 이방원에 의해 1398년 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戊寅靖社)이 일어난다.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두 아들인 무안군 이방번, 세자 이방석이 모두 살해되고, 둘째 아들 이방과가 정종으로 추대되었다. 다시 1400년 넷째 아들

86) Clark(1998), Op. cit., p. 278.

87) 티모시 브룩(2014), 앞의 책, 184쪽.

회안군 이방간이 이방원을 상대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패배한 후 유배되었고, 이방원은 세제가 되어 명실상부 자신의 왕위에 오를 준비를 마친다.

앞서 언급했듯 건문제와 영락제 모두 이 시기 내전에 돌입해 있었기에 조선의 내부정변을 규범의 일탈로 개입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영락제가 즉위한 후에도 여전히 내부안정을 우선해야 했던 점, 연왕 시기 이방원이 정안군의 신분으로 홍무제에게 표전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해 사절로 파견되어 북경을 지날 때 만났던 인연도 양자 간 관계의 정상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⁸⁸⁾ 따라서 태종 역시 영락제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입조하여 조공했던 것이고 영락제 역시 지체없이 책봉했던 것이기도 하다.⁸⁹⁾ 『明史』에는 영락제가 즉위한 원년부터 조선이 들어와 조공한 것이 6회인데, 그 이후로 세시에 공물과 축하사절단이 항상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⁰⁾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영락제에게 지성으로 사대정책을 유지했다. 그것은 이미 정도전에 의해 채택된 지성사대의 대외정책 기초를 계승하는 동시에 중화공동체 전략을 따름으로써 동아시아 질서구조에서 독자적인 위상과 주변국인 여진-일본에 기미교린의 주체로 역할하는 근거를 만들어냈다. 정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태종의 중화공동체 전략은 명 왕조의 대외정책과 접점을 이루는데, 조카의 황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영락제가 자신감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복종과 복속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통성의 혐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그 방법이란 스스로가 제국의 권위임을 주변국으로부터 확인받는 작업이었다.⁹¹⁾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환관 정화의 6차례 대규모 해외원정은 시장개척이나 교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공국으로 알려진 모든 나라를 방문하여 영락제가 새 황제로 등극했으니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정화의 항해는 정치적 제스처였고 황위를 찬탈한 영락제를 외교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었다.⁹²⁾

88) 영락제는 연왕 시절 주변 세력에 대한 회유를 통하여 우호관계를 형성했다. 단적인 예로 태종 이방원이 명에 사신으로 가면서 연왕부를 방문하였을 때, 시위 1명만 있는 상황에서 이방원과 연왕은 면담했으며, 이방원에 대해 극진한 대접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연왕이 경사에 조회하는 길에 연도에서 이방원 일행을 만나자 거듭 상면하여 면담했다. 이러한 연왕의 태도는 조선이 동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향후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軍史』 83호(2012), 246쪽.

89) Clark(1998), Op. cit., p. 278.

90) 『明史』〈本紀第六 成祖二〉.

91) 초기 명 황제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점을 연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국왕조가 조공품과 특권을 맞추는 국제체제에 의존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연극(political theater)이었던 것일 수 있지만 참여하는 배우, 특히 명 황제에게 관건은 그를 위해 외교적 교환품이 거래되는 조공의례를 통해 중국중심적 질서를 보여준다는 점을 광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통성의 결여에 직면한 황제들에게 조공의례의 퍼포먼스야말로 천하에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 관객을 위해 상영했던 이 연극은 국제관계의 정치적 복잡성을 더 분명하게 하는 증거이다. Brook&van Praag&B tjes(2018), Op. cit., p. 70.

92) 티모시 브룩(2014), 앞의 책, 187쪽.

바로 이 점에서 영락제 시기 해양과 북방을 향한 대외정책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한다. 즉 핵심적인 유교경전의 규약을 따르는 것이다.⁹³⁾ 여기에서 조공체제의 이중적 구조가 출현하고, 그 틀 내에서 조선의 독자성과 주변국에 대한 사소로서 기미교린의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조공체제는 주변국의 위상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왕국(kingly realm)으로 불리는 하위 파트너(junior partner) 국가들과 사이(四夷, four tribes)로 불리는 주변국으로 구성되었다.⁹⁴⁾ 왕국이라는 하위 파트너는 조선-일본-베트남과 같이 유교적 세계관과 규약을 공유하는 규범적 행위자인 반면 사이는 유교적 문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목민족 국가들이나 서남부 변경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왕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공체제는 주변 외국과 관계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어려운 과제에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중국왕조가 규범을 제공하면 주변 외국이 이에 순응하려는 의지가 있는 한 문명화된 위계질서에 배치하는 것이었다.⁹⁵⁾

그렇게 보면 조공체제 틀 내에서 명-조선의 관계는 엄격한 의례가 지켜졌고 그 의례의 숨은 의미가 명 왕조가 상국(上國)이기에 유교경전에 나오는 형-동생 관계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를 양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즉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고 형은 동생을 보호하고 깨우쳐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형제가 힘을 모아 가족의 부, 명예, 지위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⁹⁶⁾ 이로부터 영락제-태종 간 명-조선 관계의 정상화는 19세기 말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고, 명-조선 간 사소-사대라는 규범성은 조선-사이(四夷)의 사소-사대라는 규범성으로 확장될 여지를 갖게 된 셈이었다.

이제 조선의 관점으로 되돌아와서 동아시아 질서의 이중적 구조에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사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해 나갔는지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초기 조선-여진 관계는 기미교린의 실용성을 선택했다. 명 왕조 입장에서 위협의 요소는 북방세력이었다. 초기 전력했던 북원견제와 함께 발흥했던 여진 등 요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북변경략은 명 황제 주원장으로 하여금 남경(南京)에서 북경(北京)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져왔다. 따라서 요동지역은 명과 조선의 입장에서 대외적 위협요소로 통제해야 할 변경지역이고, 요동의 여진에 대한 견제는 명의 경우 조선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조선의 경우 명의 권위와 힘을 필요로 하는 상보적 관계였으며 여진의 경우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구조적 특성상 명과 조선의 협력이 필요로 했던 특수한 경우였다.⁹⁷⁾ 즉 기미교린 정책은 조선-여진 관계의 균형을 통해 명 중심의 질서를 견제하고, 조선

93) 베스타(2022), 앞의 책, 60쪽.

94) Brook&van Praag&Botjes(2018), Op. cit., p. 61.

95) Ibid., p. 62.

96) 베스타(2022), 앞의 책, 61쪽.

97) 김선민, “명말 요동 변경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중국사연구』 55집(2008), 214쪽.

에게는 여진의 불합리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이며, 여진에게도 내부수요에 대한 충족의 범위 내에서 명-조선의 물리적 대응으로부터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외교정책이었다. 그것은 행위자 모두의 합리성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이 점은 정도전의 중화공동체 전략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태종 이방원의 현실적 고민과 함께 그가 공언한 지성사대의 태도 역시 정도전의 국가전략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14세기 말~15세기 초 조선은 내부질서를 안정시키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였고, 이를 위해 성리학적 규범으로 명-조선 관계까지 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듯이, 주변 여진-일본과의 기미교린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관건은 명 왕조의 적극적인 후원 여부였다. 따라서 명 왕조에 조공관계를 지성사대로 구매하는 동시에 명 왕조의 불편함에 아랑곳없이 이런 사대의 성공방식을 몽골, 여진, 일본과의 관계에도 적용함으로써 대내 안정정보다 대외 자주성을 더 중시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⁹⁸⁾

명-조선 관계에서 사대와 자주의 긴장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는 요동지역 통제와 관련되어 만산군(漫散軍, 탈영병) 송환문제와 여진 관할권 갈등이다. 여기에서 규범에 근거한 위계질서라는 조공체제에서 상국(上國) 명 왕조에 조선이 자발적 사대를 취하는 구조임에도 조선은 국가목표에 따른 군사-외교정책을 이행해나가는 모습을 취한다. 먼저 만산군 문제는 원 제국 시기로 소급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 시기 고려인들이 요동으로 옮겨가 지역민으로 정착했고 원명 교체기에 다시 고려로 대거 이주했다. 원 제국의 영역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명 왕조는 요동의 군적에 올라 있는 자신들의 신민이고 요동지역 역시 자신들의 관할권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진 교체를 틈타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⁹⁹⁾ 또 정난의 변에서 요동의 군대는 건문제 측에 서서 북경의 연왕을 배후에서 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패배한 후 1402년(태종 2년)부터 만산군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태종 2년 만산군 2천명이 강계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만산군 유입은 총 4만 여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압록강을 넘은 상황이었다. 만산군의 리더 임팔라실리가 포주 강변에서 농사짓도록 허락하거나 각 도에 나누어 보내 백성으로 삼아주면 조선을 보좌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서북면 찰리사가 보고하자 하륜을 비롯한 조정 신료들은 굶주림에 죽거나 소요를 일으킬 우려를 표시하며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만산군의 즉각적인 소환을 요구하는 명나라에 만산군이 명나라 관군일 수도 있어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다.¹⁰⁰⁾ 명의 자군도독부에서 만산군을 돌려보내라는 문서를 계속 보내지만 수세에 몰린 남경정부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태종은 계속 만산군을 받아들이고 각 도에 분산배치한다.

98) Clark(1998), Op. cit., p. 279.

99) 김경록(2012), 앞의 글, 231쪽.

100) 『太宗實錄』〈2年 4月 16日〉.

영락제 즉위 후 명은 당연히 조선에 들어와 있는 만산군 쇄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조선정부로 하여금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¹⁰¹⁾ 이 때 태종은 명 정부의 직접적인 추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우리가 만산군을 추쇄하도록 지시하고, 요동천호 왕득명이 영락제의 칙서를 들고 와 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에도 칙서와 조서의 차이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명의 만산군 쇄환요구에 소극적인 군사외교를 전개한 이유는 조공-책봉체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세자책봉이었다.¹⁰²⁾

3년의 지루한 공방 끝에 태종은 만산군 10,755명을 동녕위 등으로 돌려보내고 미쇄환 인원 4,940명의 현황을 알리면서 마무리한다. 요동천호 왕득명의 보고에 따라 명 조정에서는 예부의 자문(咨文)¹⁰³⁾으로 이를 접수했음을 통보하면서 더불어 세자책봉 인준과 표류한 조선인 6명의 송환을 알려온다.¹⁰⁴⁾ 태종 8년(1408) 마지막으로 요동도사에게 1,153명을 송환했다는 사실을 명 예부에 알리면서 만산군 문제는 더 이상 외교현안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그것은 만산군 문제가 명-조선 간 요동지역의 현안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이 지역의 여진문제까지 비화될 것을 우려한 데다 일정한 외교적 실리를 거두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정부도 미쇄환 만산군과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월경하는 인원들을 더 이상 추쇄하거나 추궁하지 않고 국경경비의 차원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양국 간 긴급한 사안으로의 의미가 퇴색했던 것이다.¹⁰⁵⁾

다음 단계의 문제는 바로 요동지역의 여진이었다. 요동의 여진은 명-조선 모두에게 왕조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였다. 물론 외형상 여진은 명-조선의 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제로 15세기 내내 명-조선-여진의 삼각구도(triangle) 하에서 명과 조선이 정치적 상징과 조공무역을 통해 여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쟁했던 것이다.¹⁰⁶⁾

이미 조선의 통제력과 지배를 여진이 인정하고 조공을 하는 상황에서 여진문제의 핵심은 요동지역에 대한 명 왕조의 팽창야욕이었다. 과거 요동공벌은 북원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친원파를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내부 정치세력의 제

101) 정동훈, “15세기 조명 관계와 조선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동북아역사재단, 2018), 124-125쪽.

102) 김경록(2012), 앞의 글, 249-250쪽.

103) 조선시대 대외관계는 중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계서적인 국제질서의 특성으로 외교문서 중심의 외교활동이 전개됐다. 조선시대 외교문서는 명·청대 表文, 箋文, 狀文, 咨文, 奏文, 啓文, 申文, 呈文, 單子 등이 있으며 명 건국 이후 홍무제가 황제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계 일환으로 엄격한 공문제도를 성립시키자 명 중심 국제질서에 속한 조선은 명의 공문체계를 적용하여 대명 외교문서를 행하게 됐다. 외교문서로서 자문은 명·청대 2품 이상 아문 사이에 왕래한 平行文으로 구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문서의 첫머리에 “朝鮮國王은 무슨 일을 위하여 …… 합니다.”라는 문서명을 기재하고, 이후 상세한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이것을 위하여 마땅히 咨文을 행이니, 상세히 照驗하고 施行하기를 請합니다.”라는 말로 본문을 끝맺는다. 조선문서의 경우, 발급주체는 조선국왕이며, 접수주체는 명대에 예부, 병부, 오군도독부, 요동도사 등이다. 김경록, “朝鮮時代 外交文書 咨文의 行移體系와 변화과정,” 『고문서연구』 46호(2015), 23-26쪽.

104) 『太宗實錄』 <5年 3月 17日>.

105) 김경록(2012), 앞의 글, 252-253쪽.

106) Clark(1998), Op. cit., p. 284.

거와 권력회복을 동기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우왕과 최영의 대외정책이었다. 하지만 철령 이북은 원래 원나라에 속하고 있었으니 모두 요동에 귀속시키라는 명 홍무제의 요구는 철령위의 설치로 구체화 되었는데, 우왕은 최영과 비밀히 의논하여 요동공벌을 모의하고 그해 3월 독자적으로 최영과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물론 원정군에 참여한 이성계가 네 가지 불가(不可) 사유를 밝히고 위화도 회군을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애초부터 요동공벌 결정과정에서 이성계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성계의 불가 사유 대부분은 군사적 조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즉 “소국으로서 대국을 거역하니 한 가지 불가”¹⁰⁷⁾라는 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여름 군사활동의 어려움을 거론하고 가을 출정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성계는 요동공벌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¹⁰⁸⁾

그렇게 보면 명 홍무제-영락제와 조선 태조-태종 시기 요동의 관할권을 둘러싼 양자 간 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였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외형상 사소-사대의 규범적 양상이 정립된 조공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조공체제 그 자체에 내포된 이중구조로 인해 명-조선의 사소-사대와 조선-여진과 명-여진의 사소-사대 간 틈새를 기미로 통제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바로 몽골제국의 잔여세력인 나하추의 항복을 받아낸 1387년을 기점으로 홍무제는 공백이 생긴 요동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403년 영락제 즉위 직후부터 여진의 귀순을 중용하는 칙유를 반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오도리(吾都里)·울랑합(兀良哈)·울적합(兀狄哈) 등을 초무하여 조공을 바치게 요구했고, 조선은 여진이 본래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삼부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하게 된다.¹⁰⁹⁾ 명의 여진정책은 동북지역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을 확대하고 조공체제를 통해 여진과의 교역을 독점하려는 것이었으며 적대적 동맹체결을 막기 위해서 몽골이나 조선 같은 주변국과 여진의 교류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그 최종 목적은 요동지역을 고대의 느슨한 통치전통으로 묶어놓는 위(衛)를 설치하는 것이었다.¹¹⁰⁾ 결과적으로 1403년 여진의 대추장 아하추(於虛出)를 입조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건주위지휘사라는 고위직에 임명하여 명의 조공국으로 편입되었음을 과시한다.¹¹¹⁾

조선의 반격 역시 강렬했다. 태조 이성계부터 오도리, 오랑합 등 여진에 대한 초무와 회유 그리고 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조와 투화를 통한 여진의 유입이 계속되었고, 태종 4년에는 건주여진의 오도리 아족이자 두만강 지역 최대 세력가인 통몽케테무르(童孟哥帖木兒)가 내조하여 회령에 숙영하면서 조선은 몽케테무르를 상호군(上護軍)을 제수하여 가신으로 삼는다.¹¹²⁾ 조선의 선제적인 대처로 인해

107) 『高麗史節要』 卷33, <辛禡 14年>, “太祖曰, 今者出師有四不可. 以小逆大一不可.”

108) 김영수, “위화도 회군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1999), 35-36쪽.

109) 『太宗實錄』 <3年 6月 25日>.

110) Clark(1998), Op. cit., p. 286.

111) 정동훈(2018), 앞의 글, 128쪽.

112) 『太宗實錄』 <4年 3月 13日>.

몽케테무르는 명의 회유와 만산군 임팔라실리와 같이 쇄환하겠다는 협박에도 순응하지 않았고, 태종 역시 몽케테무르를 동북면의 번리(藩籬)라는 점에서 명나라 사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효유한다.¹¹³⁾

동시에 태종은 영락제의 권위를 존중하고 명의 여진정책에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지성사대의 태도를 취한다. 태종은 예문관 대제학 이행을 북경으로 파견하여 몽케테무르가 울적함의 침략으로 인해 동북면으로 이동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왜적방어 등의 공역이 있고 홍무제가 이미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조선에 귀속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일시동인(一視同仁)했기 때문에 “동맹가첩목아가 공험진 이남인 경성지방에 살고 파아손과 착화 등은 경원지방에 살고 있으므로 모두 명의 동인지내(同仁之內)에 있다는 점에서 예전대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은택을 베풀 것”을 요청한다.¹¹⁴⁾

그런데 몽케테무르는 태도를 돌변하여 명에 입조한다. 사실 몽케테무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의 후원을 받은 아하추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 입조요구를 거부할 경우 아하추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정세판단으로 입조를 결정했던 것이다.¹¹⁵⁾ 이런 상황에서 몽케테무르의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주변 여진부족들 역시 명에 귀순하면서 1406년쯤 여진을 둘러싼 경쟁에서 조선의 패배는 분명해졌다.¹¹⁶⁾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정조사를 보낼 때 그동안 몽케테무르의 입조를 권유했다고 완곡히 변명하지만, 명의 예부는 “당신 나라에서 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일본과 교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지금 중국 사신이 일본에서 돌아와 고하기를, 조선 사신이 먼저 거기 와 있더라고 했다. 또 황제가 이미 동맹가첩목아를 초안한 것이 당신네 나라 때문이 아닌 것을 당신이 아시오? 당신네 나라에서 곧 맹가첩목아를 입조시키겠다고 말하니, 이는 당신네 나라의 간궤(奸軌)”¹¹⁷⁾라고 강한 의심을 표명하고 조선을 일본보다 아래에 놓는 처우를 보여줄 정도로 불쾌해 한다.

오히려 이제 조선-여진 관계는 적대와 우호가 교차하는 전형적인 기묘교린의 패턴을 정착시킨다. 태종 6년 하정사로 갔던 강사덕이 북경에서 돌아와 몽케테무르가 건주위 도지휘사에 제수되었음을 태종에게 알린다.¹¹⁸⁾ 비록 명 왕조로 내조했지만 건주위지휘사인 아하추, 몽케테무르, 그리고 천호 어허리(於虛里) 등은 동북면 찰리사에게 비단 등의 공물을 태종에게 바치며 여전히 조공하는 태도를 유지하자 태종 역시 저포나 마포 등 의복과 술 등을 하사한다. 그것은 규범적 틀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여진은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생필품의 지속적인 조달이 필요로 했던 상황이고, 조선은 여진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조치를 취

113) 『太宗實錄』 <5年 3月 14日>.

114) 『太宗實錄』 <5年 5月 16日>.

115) 『太宗實錄』 <5年 9月 13日>.

116) Clark(1998), Op. cit., p. 287.

117) 『太宗實錄』 <6年 1月 6日>.

118) 『太宗實錄』 <6年 3月 6日>.

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진은 이후 변경침탈을 감행하고 조선 역시 태종 10년(1410) 길주 찰리사 조연 등이 건주위지휘사인 몽케테무르가 모련위지휘사인 파아손(把兒遜)·아고거(阿古車)·착화(着和)·하을주(下乙主) 등과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기에 그 네 사람을 죽이고, 부족 수백 인을 섬멸하고 가옥을 불사르는 응징으로 반격함으로써 기미정책의 전형을 보여준다.¹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몽케테무르를 무마시키기 위해 길주 찰리사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이었다고 위무하는데 몽케테무르의 경원, 경성 침략으로 수포로 돌아간다. 또한 함경도 병마사 곽승우가 울적함과 전투에서 대패하는데 몽케테무르가 성을 포위하고 오도리 부족의 지휘사를 왜 죽였는지 추궁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후 몽케테무르가 화해를 요청하자 이젠 태종이 그 저의를 의심하고 거절하며 경성방어에 전력할 것을 강조한다.¹²⁰⁾ 그리고 연말부터 몽케테무르가 사자를 보내 공물을 바치며 다시 교린을 요구하자 태종은 약탈해간 백성과 소, 말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당시 여진 내부의 기근과 굶주림에 대한 현지 보고를 듣고 곡식 150석을 하사한다.¹²¹⁾

왜 이렇게 순간마다 모순된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 조선-여진의 기미교린 관계는 사실상 조선이 상국(上國)으로 자리하고, 여진의 조공에 따라 회사품을 시혜하는 또 다른 차원의 조공체제이자 사소-사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명 왕조가 입공한 조선에 그랬듯이 조선 역시 입공한 여진을 후대했고, 규범에 의한 자발적 복종을 기대했던 것이기도 하다.¹²²⁾ 이런 맥락에서 태종은 영락제에게 명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의 처벌이 불법이 아니라 “병마사 한홍보와 군사 15명을 죽이고, 우마와 전곡을 약탈해 돌아갔습니다 … 파아손 등이 울적함과 공모하여 우리 변장과 군민을 살해하고, 지금 또 군사를 잠복시켜 요격하다가 도리어 그 몸이 중상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¹²³⁾라고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여진의 변경침략과 약탈행위를 응징하는 정당한 대응이었음을 설득하여 지성사대의 불변함을 승인받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명-조선 양자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양자 모두 내부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였고, 지성사대의 조선에 대해 명 왕조의 책봉과 회사를 통한 사소는 중화문명의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시에 양자 모두 대외적으로는 북방문제가 우선순위였기에 군사적 충돌보다 오히려 여진-왜구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공동대응의 사례가 더 많았다는 특징을 갖는다.¹²⁴⁾ 즉 영락제는 북변경략과 남방경략이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요동지역까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온 이상 조선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고, 조선-여진 간

119) 『太宗實錄』 <10年 3月 9日>.

120) 『太宗實錄』 <10年 6月 1日>.

121) 『太宗實錄』 <11年 2月 5日>.

122) 최동희(2004), 앞의 책, 48쪽.

123) 『太宗實錄』 <10年 3月 25日>.

124) 김경록(2012), 앞의 글, 233쪽.

불협화음을 방임하는 것이 동북지역의 안정에 방해요소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도리어 여진을 누르기 위해 조선에 군사적 연합을 제안할 정도였다.¹²⁵⁾ 결국 양자 간 조공-책봉체제는 규범의 토대 위에 사대-사소의 명분을 주고받음으로써 쌍방 모두 왕조의 안정성을 보장받은 결과물이다.

반면 세종 시기에 이르러 조선-여진의 사소-사대관계의 교린이 보다 물리적 폭력사용의 양상, 즉 기미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 역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다. 즉 여진에 대한 외교적 인식과 판단의 기준은 당시 호조 참판 심도원의 견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에 야인의 걱정이 있는 것은 중국에 용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어하는 방법과 방책에 갖추 실려 있으니, 대요는 정벌과 화친 두 가지에 불과”¹²⁶⁾하다는 규범과 폭력의 선택 모두가 합리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세종 15년(1433)에 이루어진 최윤덕의 1차 과거강 여진정벌은 조선의 북방정책에 대한 명 왕조의 위기감을 불러왔고 전주여진의 후원으로 조선을 압박하는 대외 정책을 가져왔으며, 이 지역 지배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세종의 북방정책으로 인해 세종 16년 과거강 여진의 귀순과 왕래문제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이제 그들을 토벌한 후에 귀순해 오니 예의상 후하게 해야 마땅하나 우리 족속이 아니라서 그 마음이 반드시 검은 면이 있을 것이니 어찌 귀순하는 마음만을 믿고 출입의 방지를 엄중히 하지 않겠는가?”¹²⁷⁾라고 계고하는 세종의 모습은 사소의 기본원칙을 계승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기미로의 전환이 기본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자면 “중국 조정이 이적에게 도둑 이하의 관직을 아낌없이 제수하는 것은 시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난폭한 짓을 기미(羈縻)하고자 하는 것. 또 우리나라 초기에도 만호와 선략장군이라는 직계를 멀리에서 제수하기를 아끼지 않았음은, 또한 그들을 기미하고자 한 것”이라는 함길도 감사와 도절 제사의 전통적인 이해를 최선의 외교정책으로 동의했던 세종의 대 여진정책은 서북의 사군과 동북의 육진설치에 의해 이만주의 세력을 압록강에서 축출하고 변경의 소요를 잠재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¹²⁸⁾ 명-조선의 사소사대 관계와 조선-여진의 사소사대 관계를 일치시키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다.

한편 조선-일본의 관계는 ‘왜구’의 존재로 인해 대마도 정벌과 같이 변질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시혜적인 정책은 지속적이었다. 양자의 관계 변화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내부변동에 기인한다. 이미 1580년에 이르러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서 조선을 통해 중국에 조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125)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협력을 요청하고 여진을 공동으로 정벌하자고 제안한 것은 조선이 달단, 여진과 합세해 명나라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신감을 갖고 있던 영락제가 친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천하질서를 구축했다고 자축하는 성지를 조선에 보낸 후부터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여진 협공은 태종이 추구한 중화공동체 전략이 실현되어 간다는 증험이었다. 박흥규(2021), 앞의 책, 231.

126) 『世宗實錄』〈15年 2月 15日〉.

127) 『世宗實錄』〈16年 1月 12日〉.

128) 『世宗實錄』〈19年 12月 24日〉.

조선의 입장에서 그 언사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¹²⁹⁾ 그것은 조선-일본의 교린 관계를 뛰어넘어 명-일본이라는 관계형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사대조공의 예제에서 이탈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사소의 대상인 일본이 사대의 일차대상으로서 조선을 무시한 데 따른 불쾌감의 표현일 수 있다.

조선은 초기부터 일본의 중앙정부에 대한 외교적 관계를 통해 왜구통제의 기대와 더불어 “더욱 교린의 신의를 두텁게 하고, 다시 도적을 금하는 의에 힘써서, 영구히 추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뒷근심이 없게 하고, 사로잡혀 간 인구로서 귀하의 경내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를 두루 추쇄하여 모조리 돌려보내서 수혜를 영구히 하기 바란다”¹³⁰⁾는 교린의 기초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세종 즉위와 함께 단행된 이종무의 1차 대마도 정벌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보다 대마도주의 순응의 사에 따른 조기철군으로 마무리되었다.¹³¹⁾

추후 계속 진행

IV. 확장된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 관계

추후 보완

1. 서로부터 동으로의 파장: 청-조선의 냉소적 사소와 사대

동아시아 질서의 기본 틀이 흔들린 것은 누르하치에 의해 여진 내부의 정치적·군사적 통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 조선-여진 관계는 ‘누르하치 형제(奴兒哈赤兄弟)’¹³²⁾라는 표현을 통해 교린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왜적만 걱정이 될 뿐 아니라, 누르하치도 틈을 엿보아 동병하고자 한 지 하루이틀이 아니”¹³³⁾라는 현실적 판단을 동반한다. 반면 여진의 대명 관계단절과 조선의 정권교체(선조로부터 광해군으로의 승계)라는 양자 모두 내부 변동으로 인해

129) 『宣祖實錄』〈13年 12月 21日〉.

130) 『太宗實錄』〈2年 7月 11日〉.

131) 세종 1년(1419) 6월 19일 단행된 대마도 정벌은 7월 3일 이루어진 철군 직후 3일 소청도와 4일 안흥량의 공물운반선 약탈과 같은 연속적인 사건발생으로 다시 2차 대마도 정벌이 논의되었고, 7월 7일 대마도 공격과 왜구 요격을 위한 지휘부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명 연해에서 왜구가 섬멸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조선은 대마도 재정벌 계획을 취소하고 정벌군의 소속 포구복귀를 명령함으로써 대마도 정벌을 종결했다.

132) 『宣祖修正實錄』〈29年 2月 1日〉.

133) 『宣祖實錄』〈29年 4月 3日〉.

서로의 정책전환이 맞물리면서 관계는 악화된다. 특히 내부문제에서 적통성과 북 인기반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광해군의 왕권계승은 명 중심의 사소사대와 여진에 대한 기미교린의 균형자로서 조선의 합리성이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적대세력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노정했다. 이로 인해 조선-여진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판은 합리적 판단과 선택의 행위자로서 광해군의 권력유지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누르하치 토벌을 위해 명나라에서 조선에 군병을 청한 일에 대해 “우리나라가 천조에 대해서 의리상으로는 군신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정리상으로 부자지간과 같다. 더구나 임진왜란 때 위급한 상황을 구제해 준 큰 은혜가 있는데 말해 무엇하겠는가? … 이번의 누르하치는 실로 천하의 강적이니 결코 건주위의 이만주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 지금 만약 깊이 들어가 선불리 행동하며 진격한다면 만전의 계책이 못될 듯 하니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¹³⁴⁾는 광해군의 외교적 실천지는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순기능을 기대하게 한다.

반면 조선의 인조반정(反正)은 조선-여진 관계를 교린에서 사대로 변질시킨 단초로 작용했다. 사실 외교의 측면에서 인조반정은 합리적 조정자로서 광해군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명 중심 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그것은 “사대교린은 각각 그 도가 있다. 지금 여진과 화친을 행하는 것은 교린이고, 황제를 섬기는 것은 사대이다. 사대교린 두 가지는 병행하는 것이고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¹³⁵⁾라는 전통적인 사대교린의 질서관으로 표출되었고, 조선의 새로운 정책결정자들이 갖는 불합리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미 여진이 후금(後金)이라는 국가로의 선언을 통해 명 왕조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재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국제관계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원이 우리와 원수진 것이 이미 깊은데도 선한(先汗)이 사망하고 신한(新汗)이 즉위한 것을 이유로 오히려 차인이 와서 경조 예를 행하였는데, 조선은 어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가”¹³⁶⁾라는 후금의 1차 침략(1627년) 명분은 조선-여진의 교린관계를 조선 스스로가 부정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1차 호란 결과 “오늘 이후로 두 나라는 각각 맹약을 준행하여 자기의 국경을 지키면서 작은 일로 다투지 말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今後兩國, 各遵約誓, 各守封疆, 無爭競細故, 無非理徵求)는 조선-후금 간 맹약이 체결되는데, 그것은 맹약이 갖는 춘추의 규범성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후금 중심의 질서편입을 의미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차 호란의 결과 맹약체결이 기존 관계의 전도(顛倒)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만약 조선이 금나라에 원수 갚기를 계획하여 맹약을 저버리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하면 하늘이 화를 내릴 것이고, 금나라가 여전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져 맹약을 저버리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

134) 『光海君日記』(정초본) <10年 5月 1日>.

135) 『仁祖實錄』 <5年 2月 5日>.

136) 『仁祖實錄』 <5年 2月 10日>.

하면 역시 하늘이 화를 내릴 것”¹³⁷⁾이라는 맹약의 내용으로 보자면, 조선-여진의 관계를 제후-이적의 관계로 설정하고 사소-사대의 연장선상에서 기미-교린했던 역사성이 맹약이라는 제후-제후 간 대등관계로 전환되었을 뿐, 사소-사대의 기본 구조와 춘추대의의 이념성을 와해시킨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기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악화시켰던 조선의 불합리한 판단과 선택이었다. 그것은 인조반정으로 인해 권위의 정통성을 반정세력에 의지했던 국왕의 취약한 권력기반이라는 내부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사실 대외정책을 둘러싼 광해군과 신료, 특히 서인세력 간 긴장은 명분론에 입각한 후금 강경책이라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비변사의 구성은 서인과 남인계가 장악했고 광해군의 지지세력인 대북세력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정부분 광해군의 중립적 외교노선이 채택될 수 있는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를 중심으로 후금과의 교섭을 반대하는 강경론이 제기되었던 반면 광해군은 후금과의 교섭을 기대했고 배금론을 주장하는 비변사와의 의견불일치로부터 후금과의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 결과는 광해군의 외교노선에 대한 비변사의 비협조로 귀결되었다. “위에서 기미책을 굳이 고집하도록 하려는 계책은 곧 뒷날 임금에게 모든 죄를 돌리려는 뜻”¹³⁹⁾이라는 광해군의 판단은 내외의 문제해결기제가 일원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조선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비변사의 대응은 광해군의 유연한 대응을 권도(權道)의 채택으로 수용하는 타협책을 제시함으로써 신료의 공론이 현실을 중시한 군주의 의도를 압도하고 그의 선택을 권도로 평가절하 해버리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결국 호란의 발생원인이 반정세력의 시대착오적 명분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기존의 평가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불합리한 판단과 선택 자체가 조선의 자치가 붕괴했던 근본적인 원인에 있었던 것이다.¹⁴⁰⁾

137) 『仁祖實錄』 <5年 4月 1日>.

138) 당시 비변사는 영의정 박승중(소북), 좌의정 박홍구(대북), 우의정 조정(대북), 호조판서 김신국(소북), 예조판서 이이첨(대북), 병조판서 장만(서인), 형조판서 한찬남(대북), 공조판서 이정구(서인), 대사헌 남근(대북), 대사간 유숙(대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박승중 계열은 광해군의 외교노선에 대한 지지세력으로 기능했다.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 외교노선 논쟁의 실재와 그 성격,” 『역사학보』 193집(2007), 5-6쪽.

139) 『光海君日記』(중초본) <13年 12月 26日>.

140) 1622년 광해군이 문희현을 후금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국서의 형식에 ‘후금국가한(後金國可汗)’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후금의 불만을 무마하고 모문룡의 일시적인 철군 등 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정묘호란 발발 직전까지 후금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조반정에 따른 광해군의 실각 이후 군신 모두 후금 강경책을 채택한 것은 역설적으로 후금의 침공가능성이 낮아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계승범(2007), 앞의 글, p. 15; 박현모는 정묘호란 발생원인으로 내외의 구조적 요인을 거론하는데, 내부적 요인으로 인조정권의 승명배금책과 더불어 반정에 대한 명의 반발 그리고 반정공신들의 경제적 비리와 민심의 동요를, 외부적 요인으로 후금의 황태극 일인지배체제 구축과 명의 모문룡 문제 그리고 변경의 관시와 만주지역의 한인이탈문제 등을 살피고 있다. 더욱이 정묘호란의 패인은 인조의 우유부단함과 후금의 치밀한 사전전략이 결국 인조정권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현모, “정묘호란기 국내외정치,” 『국제정치논총』 42집 4호(2002)를 참조.

2차 호란은 후금이 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 중심의 사대조공 체계의 공고화를 시도한데서 비롯한다. 그것은 조선-후금 간 기존의 교린이라는 틀을 유지한 채 후금 중심의 질서로 편입할 수 없다는 형용모순을 완전한 사대로 전환하여 명실상부 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척화와 화의의 분열로 전개되었으며 “지난번 오랑캐 사신이 왔을 적에는 별다른 혼단이 없었는데도 조야가 두려워하고 묘당의 모책이 허둥지둥하여 일을 처리함에 타당성을 잃고 계책을 씀이 소략했습니다. 그 후에 조정 신하들이 척화하자는 의논을 드리자, 온 나라 사람들이 충의를 고취하고 적세를 꺾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 제왕이 국사를 도모하고 적을 제어하는 계책을 세우면서 어찌 일정한 견해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¹⁴¹⁾라는 이시해의 힐난처럼 외교적 실천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칸은 남쪽을 향해 앉고 상은 동북 모퉁이에 서쪽을 향해 앉는”¹⁴²⁾ 사대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2. 남으로부터 동으로의 파장: 조선-일본의 역전된 사소와 사대

일본의 전국시대가 마무리되는 시점(1587년)에서 관백(關白)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중국침략을 위한 조선경략의 방법으로 대마도주의 의견에 따라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다. 당시 조선은 “일본국은 국왕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바로 찬역의 나라”¹⁴³⁾로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교린관계를 위협에 노출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찬역의 국가이기에 “그 흉역스럽고 경망한 자들이 스스로 예의의 나라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아 원망하고 부끄럽게 여기어 하루아침에 화친을 단절한 뒤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그 유감을 풀려고 한다면, 이 다음 변방의 걱정거리를 이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기존의 사대관이 도전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찬역의 국가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이유 없이 사신을 보내 역적의 뜰에서 이마를 조아리며 조공하는 것”이라는 기존 사소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었다.¹⁴⁴⁾

선조는 포로송환을 전제로 한 통신사 파견을 해답으로 제시한다.¹⁴⁵⁾ 그렇다면 포로송환이 이루어질 경우, 과연 통신사를 파견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대의 규범을 일탈하는 반면 교린의 실용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대체로 이적(夷狄)을 대하는 데는 도(道)가 있으니 그들의 소란 여부는 우리의 자치(自治)에 있을 뿐”¹⁴⁶⁾이라는 유성룡의 답변은 사대와 교린의 유지야말로 조선의 내부기제가 그 합리성을 유지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는 근본적인

141) 『仁祖實錄』 <14年 11月 26日>.

142) 『仁祖實錄』 <15年 1月 30日>.

143) 『宣祖實錄』 <20年 10月 20日>.

144) 『宣祖實錄』 <22年 8月 4日>.

145) 『宣祖實錄』 <22年 8月 4日>.

146) 『宣祖實錄』 <22年 9月 9日>.

이해를 반영한다. 즉 조선의 ‘자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조선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일본 관계의 안정성이 조선의 안정성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적시이다. 그것은 조선-일본의 교린유지가 일차적 관심이 아니라 조선 내부기제의 안정적 운영이 일차적 관심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조선 내부의 안정적 운영은 명-조선을 관통하는 규범적 질서관에서 비롯하기에 사소사대의 질서관을 유지하는 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선택은 합리성을 결여한다. 통신사로 파견된 황윤길과 김성일은 정반대의 행보를 취하는데, 그 상반성은 귀국보고 과정에서 드러난다. 선조의 하문에 황윤길은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 김성일은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의에 매우 어긋” 나다고 답변하는 상반된 원인이 “일본에 갔을 때 윤길 등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것에 분개하여 말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라는 기사로부터 “대체로 (황)윤길의 말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두가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별하여 배척했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당대의 평가로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¹⁴⁷⁾

더욱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공언한 일본의 서계와 사신의 의사전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 내외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미 조선의 ‘자치’가 상실되었음을 반영한다. 우선 일본의 침략전망에 대한 엇갈린 보고와 마찬가지로 명에 대한 보고여부가 사대의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조정의 엇갈린 해석은 외교적 실천지의 상실을 보여준다. 만약 황윤길의 보고를 받아들일 경우, 명에 질서의 위협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미교린의 조정자로서 조선의 역할이 방기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대로 김성일의 보고를 받아들일 경우, 조선의 기미교린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에 사대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명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결국 조정의 의론은 하절사에게 “행차가 요동 지경에 이르거든 소식을 탐문해 중국에서 만약 전혀 알지 못할 경우 편의대로 정지하고 자문은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¹⁴⁸⁾는 것으로 집약된다.

또한 조헌(趙憲)이 일본침략에 대비할 것을 상소한 비왜책(備倭策)에서도 “신은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 스스로 반성하여 보아도 늘 정직했고 전하께서 사대하는 정성은 신명에 질정할 수 있고 전하께서 이웃 나라를 돌보는 의리는 먼 데 사람을 회유시켜 오게 한다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고 전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인자함은 늘 필부라도 손상이 있을까 염려하였고 전하께서 변방을 공고히 하는 모유(謀猷)는 늘 스스로 잘 지켜 침략 받는 일이 없게 하였으니 … 이를 확대해 나간다면 진나라, 초나라 같은 부강도 두려워할 것이 없

147) 『宣祖實錄』 <24年 3月 1日>.

148) 『宣祖修正實錄』 <24年 3月 1日>.

는데 더구나 수길 같은 필부의 용맹이겠습니까?”¹⁴⁹⁾라는 건의를 통해 선조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치를 위한 선행조건의 완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권고인 동시에 조헌의 상소조차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조의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의 합리성이 결여된 결과는 동아시아 질서를 흔들어 놓은 전쟁의 발발이었다.

왜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선조가 비변사에 전교한 비망기의 내용은 또 다른 충격에 대해 조선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이라는 방증일 수 있다. 즉 여진의 동정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올린 장계의 답변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예비책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난리를 만나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대는 꼴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서쪽 변방의 일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하여 해빙기까지 군사를 보충시키고 장수도 더 뽑아 보내는 등의 일을, 임진왜란 때 왜적은 염려할 것도 못된다고 하면서 순변사를 혁파하고 왜적을 근심하는 사람을 배척하던 것처럼 하지 말라. 유비무환이니 변란은 소홀히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¹⁵⁰⁾이라는 명종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향후 대 여진 기미교린 정책이 실패로 전개될 것임을 예단한다.

추후 계속 진행

V. 마무리하며

추후 계속 진행

149) 『宣祖修正實錄』 <24年 5月 1日>.

150) 『宣祖實錄』 <31年 12月 7日>.

< 참고문헌 >

『論語』, 『孟子』, 『春秋左氏傳』, 『史記』, 『明史』, 『日知錄』,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정초본), 『仁祖實錄』.

계승범. 2007. 「광해군대 말엽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역사학보』 193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조선시대 군사전략』.

김경록. 2012.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軍史』 83호.

김경록. 2015. 「朝鮮時代 外交文書 咨文의 行移體系와 변화과정」. 『고문서연구』 46호.

김경록. 2017. 「홍무년간 명의 봉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 106집.

김구진. 2001. 「조선 초기에 한민족으로 동화된 토착 여진」. 『백산학보』 58호.

김문준. 2001. 「춘추사상의 국제평화정신과 민족국가의 자주정신」. 『범한철학』 23집.

김선민. 2008. 「명말 요동 변경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중국사연구』 55집.

김영수. 1999. 「위화도 회군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김한규. 2000.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 50호.

남의현. 2000. 「명대 요동정책과 대외관계」. 『강원사학』 15-16집.

노재봉. 1984. 「외교와 Prudence」. 『세계정치』 8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문성재 역주 2021. 『정역중국정사-조선 동이전 1』. 우리역사연구재단.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박원호. 1975. 「명초 문자옥과 조선표전문제」. 『사학연구』 25호.

박정민. 2013. 「조선 세종대 여진인 통교체제의 정비」. 『한국사연구』 163호.

박현모. 2002. 「정묘호란기 국내외정치」. 『국제정치논총』 42집 4호.

박홍규. 2021. 『태종처럼 승부하라』. 푸른역사.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송진. 2020. 『중국 고대경계와 그 출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 옮김. 2022. 『제국과 의로운 민족』. 너머북스.

유재춘. 2012. 「여말선초 조명 간 여진 귀속경쟁과 그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42집.

윤대식. 2010. 「이천의 문무겸전 리더십」. 정운재 외 지음, 『세종과 재상: 그들의 리더십』. 파주: 서해문집.

- 윤대식. 2013. 「『춘추좌씨전』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 『정치사상연구』 19집 2호.
- 윤대식. 2021. 「고대 중국의 서진(西進) 전략에 혼재된 공사 동기의 실체」. 『한국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권 1호.
- 윤성익. 2001. 「명대 왜구론에 대한 재고찰」. 『명청사연구』 14집.
- 윤정분. 2006. 「명초 경연제도의 배경과 그 특징」. 『명청사연구』 25집.
- 윤훈표. 2005. 「조선전기 북방개척과 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집.
- 임상훈. 2020. 「명대 국제관계의 기틀-홍무제의 15개 부정제이국 구상과 그 형성 과정」. 『한중관계연구』 6권 3호.
- 정동훈. 2018. 「15세기 조명 관계와 조선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동희. 2004. 『조선의 외교정책』. 집문당.
- 최종석. 2018. 「태조대 대명관계의 양상과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헌 옮김. 2014.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 Brook, Timothy&van Praag, Walt&Botjes, Miek ed.. 2018. *Sacred Manda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rk, Donald N. 1998.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8,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선의 외교 관념(윤대식)”에 대한 토론문

송재혁(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 주요 주장

이 발표에서는 조공-책봉이라는 전통 동아시아 외교에 동반되는 개념인 ‘사대(事大)’ 개념을 통해 조선의 외교 관념을 살펴보고 있다. 발표자는 명나라를 정점으로 하는 규범적 위계질서의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원칙이 사소-사대를 통해 조선의 외교 관념을 추출하려고 한다. 발표 요약에서 보이는 저자의 주요 전제이자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대에 대한 개념화와 이해는 고대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의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즉 조선은 그 시작점이다. (조선을 다루는 이유)
- ② 조선의 사대는 보편사적 흐름과 일국사적 흐름, 즉 즉 명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 사소-사대의 국제관계와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 사소-사대의 국제관계라는 이중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 ③ 조선의 외교는 종속적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자주적이었다. 조선은 항상 사방으로 팽창하려는 동서남북의 파장을 흡수하여 분열을 질서로 전환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몇 가지 전제들을 통해 저자가 발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조선의 대외정책이 단순히 사대주의로 매도되기보다 얼마나 외교의 정의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발표자는 요컨대 이 주장을 “당대 동아시아 질서의 참여자들이 생각한 외교 관념과 대외정책에서 추출”하려고 한다.

2. 발표문의 내용: 이중적 구조와 독자성, 자주적 역할

발표자는 순서대로 이러한 전제와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②번과 ③번이다.

- I. 들어가며 1~4
- II. 동아시아 질서 관념의 두 경로와 이중성
 1. 동서 간 긴장의 쌍방향성 4~10
 2. 남북 간 긴장의 쌍방향성 10~14

- II-1. 조선은 사대의 규범성을 통해 내부체제의 공고화라는 실용성을 추구했다. 결국 사소·사대의 관념은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내부의 질서를 부합시키는 합리적 선택, 즉 외교적 실천지(prudence)였던 셈이다.
- II-2. 명-조선의 조공체제, 명-여진의 책봉체제 속에서 조선-여진의 관계는 조공사대(朝貢事大)와 기미교린(羈縻交隣)을 모두 수용하여 연계하는 중층적 성격을 지녔다.

Ⅲ. 축소된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 관계

1. 서로부터 동으로의 파장: 명의 과시적 사소와 조선의 지성적 사대 16-22
2. 동으로부터 남북으로의 파장: 조선과 여진-일본의 전략적 사소-사대 23-32

“천자국을 자처하는 명을 중심으로 제후국으로 명명된 주변부 국가들과의 의례로서 사대사조의 조공-책봉체제를 유도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독자성과 역할

Ⅳ. 확장된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 관계

1. 서로부터 동으로의 파장: 청-조선의 냉소적 사소와 사대 32-34
2. 남으로부터 동으로의 파장: 조선-일본의 역전된 사소와 사대 35-37 (미완)

V. 마무리하며

3. 평가와 조언

발표자는 발표에서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반 원명 교체기 조선의 외교 정립과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 명청 교체기 조선의 외교적 대응을 다뤘다. 이를 통해 조선의 독자적 외교와 담당 역할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질서를 담당하는 행위자로서 조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간발표문으로서 다소 정리되지 않은 글과 설명들을 추후 정리한다면, 좋은 원고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한 자료가 많지만, 도움이 되는 자료 두 개를 제시하고 토론을 마칠까 한다. 하나는 한국사 분야의 최근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정동훈의 논문들이다. 예를 들어, 정동훈의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정동훈 2019)”은 발표자의 첫 번째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피터 윤의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이다. 그는 신유학의 이념보다 정치적 이익의 측면에서 사대외교의 정립과정을 해석하고 있다. 사대의 이념보다는 지정학적 실리주의의 관점에서 고려 말 조선 초의 외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자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완범(고려대)

“일본 고·중세의 ‘외교사’: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을 중심 소재로”

일본 고·중세의 '외교사'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을 중심소재로-

송완범(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1. 서론

현재 세계는 지난 2월말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이 전쟁으로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 등 회원국들의 반목으로 약해지고 있던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력이 다시 공고해지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의 반(反) 러시아 감정이 전례 없이 강해지면서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그동안 구축해 온 국가적 위상의 추락은 물론, 자칫하면 지역 패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전쟁의 원인이 초보 정치인 출신인 젤렌스키(본명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1978~현) 대통령의 외교 능력 부재 때문이라는 한 대선 후보의 평가와 맞물려 인구에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 기억에 새롭다. 이렇듯 국제전쟁의 원인 중에 국가 지도부의 외교 정책이나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들어지는 것은 현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번 한국정치사상학회·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의 공동연구과제인 <동서양 외교 개념사 연구>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본 고·중세의 '외교사'>에 관한 것이다. 흔히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며,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한다. 특히나 후자는 지금부터 190년 전에 프로이센의 군사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년)의 『전쟁론(Vom Kriege)』이라는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이 경구는 뚜렷한 정책목적 없이 수행되는 전쟁행위의 무모함에 대해 경고한 것이자, 전쟁은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의 방편을 제공해주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라는 말이다. 이처럼 '외교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경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정치사상학회와 국립외교원의 공동연구로서는 현 시국과 어울리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하겠다.

각설하고 일본의 고대와 중세는 대략 12세기를 경계로 구분된다. 보통 일본사의 시대구분은 12세기 말까지는 고대(야마토[大和]이전·야마토·나라[奈良]·헤이안[平安]시대)라 부르고, 12세기 말 이후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막부시대)라고 이른다.

또한 일본이 속한 지정학적 구분은 보통 '동아시아세계'라고 이야기된다. 동아시아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동아시아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지금의 중국 및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일본열도를 포함한 지역이 포함된다. 이상의 지역에 고대 이래로 다양한 나라들과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런 이유로 동아시아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나라와 세력 사이에 얽히고설킨 분쟁이 존재하는데, 이를 '국제전쟁'이라 불러도 대과 없을 것이다. 이중 본고가 다루는 범위는 일본의 고대와 중세이므로, '백촌강 싸움'과 '몽골의 내습'이 주된 소재가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개의 국제전쟁, 전자인 '백촌강 싸움'은 고대의 야마토시대의 후반부에 일어났고, 후자인 '몽골의 내습'은 가마쿠라막부의 후반부에 발생한 전쟁이다.

두 전쟁의 후과(後果)는 컸다. 먼저 전자는 동아시아세계의 재편을 초래했다. 663년의 전쟁에 참전한 동아시아제국은 당나라와 신라가 한편이었고, 이에 대항하는 또 다른 한편은 고구려와 백제 부흥군 그리고 왜국이었다. 전쟁 이후 남은 세력은 승자인 당과 신라 그리고 패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왜국만이 살아남았다. 왜국은 나중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8세기의 나라시대로 이어진다. 전자의 결과, 동아시아세계라는 외교 무대에서 얻어진 각자의 다양한 경험은 '전후처리'의 과정 속에서 이후 당·통일신라·발해·일본 각자의 국내정치로 내재화된다. 이를 동아시아제국의 경계 재설정에서 고대일본의 외교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중국에서는 몽골에서 원으로의 대제국의 건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서는 이른바 약 40년간의 '대몽항쟁'의 종식과 함께 고려가 원의 '부마국'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열도에서는 전자의 국제전쟁에서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다. 이는 다름 아닌 대륙의 몽골과 한반도의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에 걸쳐 내습한 것이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일본의 가마쿠라막부는 군사정권인 막부답게 대몽 항전을 주도하지만, 이는 결국 가마쿠라막부의 쇠퇴로 이어진다. 그런데 가마쿠라막부는 전쟁의 처리과정에서 몽골보다 더 고려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배양한다. 이는 전자의 전후 보다 다소 비현실적인 '이국(異國)정벌'이라는 외교관을 갖게 된다. 이를 중세일본의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고대와 중세에 발생한 두 개의 국제전쟁을 통해 일본의 외교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일본 고중세의 외교개념 및 인식에 관한 이해에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일본과 '동아시아세계'의 이해 -히로세 노리오의 '동부(東部)유라시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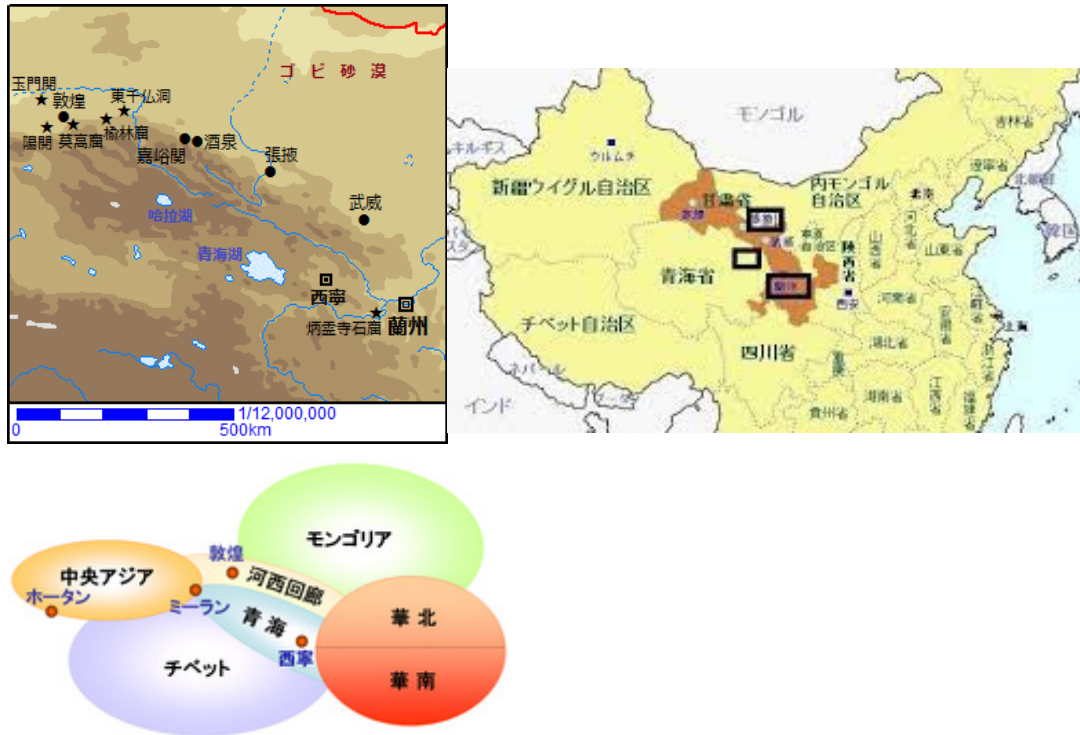
본장에서는 고대의 왜국의 국가 형성 이래 일본으로의 국호(國號)의 변경, 완성된 고대국가로서의 평가를 얻는 8세기 이래의 일본율령체제, 그리고 중세로의 진전과 더불어 일본열도를 둘러싼 주변에 대한 인식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본 공동연구의 '해당기의 외교개념 혹은 관념이 등장하는 역사, 문화적 배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새롭게 보아 종래의 '동아시아세계'에 관한 재해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¹⁾ 이 책의 저자 히로세(廣瀬憲雄)는 1960년대 이래 주창되어온 종래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체하는 '동부유라시아론'을 전개하고 있다.

종래의 동아시아세계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에 치우친 것으로 방향으로 따지면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이었다. 지역적 범위는 전통적인 관점으로서의 '중국의 내지(內地)와 한반도, 일본, 베트남'에 더하여 몽골고원과 티벳고원 사이에 끼인 '하서회랑지대동부(河西回廊地帶東部)'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1) 廣瀬憲雄, 講談社選書メチエ569 『古代日本外交史：東部ユーラシアの視点から読み直す』, 講談社, 2014 참조.

[그림1: 하서회랑지대(河西回廊地帶)]



이에 비해 '동부유라시아론'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고원의 이동을 이른다. 파미르 고원이라 하면 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걸치는 평균 5.000미터 이상의 고원을 이른다. 그 동쪽에 미치는 내부 외교관계는 남방의 농경왕조와 북방의 유목왕조, 시기에 따라 서방의 유목왕조를 포함한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거기에 더하여 실증적 이해를 겹쳐 종래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농경민족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오히려 북방의 몽골고원(흉노, 동호[선비, 유연], 돌궐)과 서방의 티베트고원(토번)의 유목민족을 중시한다는 입장이 바로 '동부유라시아론'의 골격이다.

1945년의 패전과 더불어 전후(前後) 일본 역사학계는 전전(戰前)과 전중(戰中)의 획일적이고 군국(軍國)적인 역사 이해로부터의 탈각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성과로서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받아들인다던지, 한편으로 '세계제국론'을 구상한다던지 해서 패전과 함께 찾아온 냉전(冷戰) 이후의 세계사로의 복귀에 따른 합리적인 이해를 모색한다.

특히 전쟁의 배경에 냉전이 도사린 전쟁으로서 '한국전쟁'(1950~53년)과 1955년부터 시작되고 60년대에 본격화한 '베트남전쟁'(1955~75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전자의 한국전쟁이 패전 후 경제적 공황 상태의 일본을 수렁에서 건져낸 것이었다면, 후자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해는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전후 일본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래서 1960년대의 일본은 항상 세계사를 의식하려고 했다. 어쩌면 이게 지금의 일본보다 더 글로벌한 시각이었는지 모른다.

이에 대해 히로세는 현재의 일본사를 "로컬화하는 일본사"라는 표현으로 비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글로벌화와 함께 냉전 후의 세계분쟁의 확대 속에 일본 지위의 상대적 저하가 지적될 수 있다. 이 입장에 섰을 때 8세기 고대일본의 수도 나라(奈良)는 '실크로드의 종착역'이 아니라 단순한 '지선(支線)의 종착역'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60년대의 세계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1919~98년)가 제창한 동아시아세계론은 1962년의 책봉체제론과 1970년에 주장한 공통의 문화권으로 구성된다.²⁾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은 지금도 일본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본적인 동아시아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이 왕성하다.

이러한 니시지마설의 문제점에 대해 히로세는 시기적으로 수/당 전반기의 분석이 중심이며, 지역적으로 중국의 북방과 서방의 설명이 부재하고, 역사상(歷史像)의 문제로서 주변세력의 주체성이 경시된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비판점에 대한 대안으로 非君臣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중심의 복수성이라는 입장에서 중심과 주변 간의 상하관계를 상대화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부유라시아의 외교관계를 규정하는 국제질서는 주변세력을 포함한 복수의 질서가 병존하고 있고, 중국왕조의 국제질서가 큰 영향력을 갖는 시기는 '당의 전성기'에 불과한 오히려 특이한 시기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은 상대적 상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항상적 상위국에 두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더불어, 왜국/일본의 율령법 도입을 종래의 당의 한반도에의 진출에 대항하기 위한 외부적 시선에 의한 설명보다는, 일본열도 내부의 자율적인 역사발전에 주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정리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히로세의 '동부유라시아론'은 히로세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2000년대 들어 1960,70년대의 동아시아론에 대체할 수 있는 역사연구자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주변을 외교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세계사 속의 일본의 자타인식 찾기인 것이다.

3. '백촌강 싸움'과 '몽골의 내습'에 보이는 일본외교

본장은 2장의 해당 외교의 배경에 이어 실제적인 외교상이 노출되는 사례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고대의 '백촌강 싸움'과 '적국(敵國)' 신라

왜국의 백촌강싸움에의 참전이유에 대한 종래의 견해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백제가 이전부터 왜를 '대국시'하고 있는 한편 왜는 백제를 조공국 즉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가 한반도의 백제에 출병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고대제국주의전쟁설」로 일본인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야마토왕권의 지배층이 한반도계, 특히 백제계의 사람들이었다는 관계로 조국인 백제의 해방을 위한 출병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조국해방전쟁설」로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일본서기』편찬 때의 일본 율령국가의 한반도 여러 나라에 대한 「번국관」으로부터 나온 이해이고, 후자는 막연한 추측으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에서 양설은 각각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의 안으로서 645년 「개신」 전후의 야마토왕권의 대외관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떤 이유로 야마토왕권이 백촌강싸움에 참전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구하는 견해가 있다.

2) 니시지마 사다오 저/이성시 편/송완범 역 『일본의 고대사 인식-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2008 참조.

이상과 같이 663년의 백촌강싸움에서 왜국과 맞붙은 敵國은 당과 신라였던 것이다. 이후 7세기말의 왜국은 일본으로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신라에 대한 적대감을 유기(遺棄)하지 않았다. 이 증거가 8세기 나라시대의 두 번의 절도사(節度使) 체제의 원인이 신라였던 사실에서 드러난다.

먼저 일본 측은 신라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강한 적대감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쇼무(聖武)조의 대 신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건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덴표(天平)4년(732)의 절도사체제이다. 절도사체제는 같은 해 발해가 당을 공격하자, 그 틈을 노려 다음 해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여 동아시아 동란의 조짐이 있었던 때의 일본의 반응이라고 보인다. 또한 진키(神龜) 연간까지의 대 신라외교의 성격이 덴표기에 들어서면 변화되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덴표9년(737) 3월정축조·덴표13년(741) 3월 을사조의 국분사(国分寺) 창건이 신라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표13년 9월 ‘후지와라노 히로쓰구(藤原広嗣)의 난’ 후에 시작된 쇼무천황의 방황이 덴표17년(745) 5월 헤이조쿄(平城京)로 돌아올 때까지 5년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천도를 했던 배경에는 히로쓰구의 반란군과 신라의 연계(連繫)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8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점에서 신라에 대한 문제가 현재화(顯在化)되고 있다. 이러한 신라에 대한 적대감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백촌강 싸움을 언급하지 않고는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백촌강 싸움에의 참가와 패배의 아픈 기억은 나라시대의 대외관계의 설정에 있어 사문화된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러한 대 신라인식이 표면화된 대표적 사건은 8세기 중엽의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麻呂)에 의한 신라정토계획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신라였던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전쟁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비록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3년간의 기간을 상정해 놓고 지방 각지에 전선의 건조(북륙도 89척, 산음도 145척, 산양도 161척, 남해도 105척)와 군대 인원의 할당(동해도 15,700명, 서해도 12,500명, 남해도 12,500명) 및 군장비의 마련을 위한 실제 로드맵을 가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 전쟁계획이 실제적인 것이었음을 웅변한다. 전쟁준비에 관련하는 기사들을 망라하면, 모두 『속일본기』덴표호지(天平宝字)3년~6년(759-762)의 기사들이다.

이 전쟁계획을 두고 나카마로의 집권을 위한 긴장의 고취였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다시 말해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구체적인 사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쟁을 위한 분위기의 고조, 무가와 무구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군인의 정비 등이다. 이것으로 볼 때 역시 대 신라전쟁을 실제로 의도한 치밀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헤이안(平安)시대의 對 신라관은 나라시대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하의 전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고닌(弘仁)연간(810-823년)에는 쓰시마(對馬) 해상에 나타난 신라선들의 출몰(811년12월)에 의해 다자이후(太宰府)는 규슈(九州) 관내와 이즈모(出雲), 이와미(石見), 나가토(長門)에 요해의 게이고(警固)를 지시(게이고 해제는 812년정월5일)하고 있다. 또한 813년에는 신라인 110인이 5척의 배에 타고 고토(五島)열도의 북단에 있는 오치카(小近)섬에 상륙(동 2월29일)하고 있는데 이에 조정은 추포된 신라인을 신문하여 귀국 희망자는 방환하고 귀화 희망자는 선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 탓인가. 후속조치가 빈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815년에 쓰시마에 신라어 통역을 둔다. 둘째 835년(承和2)에는 이키(壱岐)섬에 330인의 사키모리(防人)를 배치한다. 셋째

838년(동5)에는 이키에, 849년(嘉祥2)에는 쓰시마에 도시(弩師)를 배치한다.(『일본후기』)

다음은 조간(貞觀)연간(859~876년) 중에 발생한 869년(동 11년)5월22일의 사건기사이다. 신라해적선 2척이 하카타(博多)항에 정박해 있던 부젠(豊前)국의 공조선을 습격하여 연공물인 견면(絹綿)을 약탈하여 도주한 것이다. 이에 조정은 7월 엄한 견책 조치를 취하고, 12월의 설표(宣命)에 의하면 일본은 신명(神明)의 나라이기에 신라에 군사적 변고가 생기더라도 일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괘가 보이고 있다. 또 이는 일본 고유의 신국(神國)사상의 발현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괘의 배경에는 신라해적 사건에 이은 조간대지진(동년 5월26일)³⁾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일본삼대실록』)

이어 간표(寬平)연간(889-897년)에는 893년5월11일에 신라 적(賊)이 히젠(肥前)국 마쓰라(松浦)군에 출현하는데 다자이후는 히에키시(飛驒使)를 발령하고 조정은 추토(追討)를 명하고 있다. 또한 894년2월28일, 3월13일, 4월14일에는 신라인에 의한 침구(侵寇)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신라 적도(賊徒)가 탄 배 45척이 쓰시마에 출현하고 있다.

이는 또 한반도의 후삼국시대와 연동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892년에 견훤이 백제의 부흥을 위한다는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에는 궁예가 역시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후고구려를 건국하여 후삼국시대를 열었다. 이어 후고구려에서는 918년에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고치고, 935년에는 후백제에서 왕권을 둘러싼 내분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신라가 고려에 귀순하였다. 다음 해인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함으로써 고려에 의한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것에 의해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임한다지만, 일본에게는 어디까지나 고려는 신라의 후계자였던 셈으로 신라에 대한 적국 인식을 고려에 대해서도 계승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고려에 대해 강한 불신감과 경계심 그리고 여전한 공포심을 보이게 된다.

2) 중세의 '일본 습래'와 이국(異國) 고려

13세기는 몽골의 세기라 말해진다. 몽골은 원래 몽골 고원의 유목민을 통합한 칭기즈 칸에 의해 1206년에 만든 유목국가로 시작한다. 몽골제국의 영토가 최성기일 때는 서쪽으로는 유럽, 터키, 시리아까지,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티베트, 버마, 동쪽으로는 중국과 한반도까지를 아우르는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규모였다. 당시의 영토면적은 약 3300만km²로 지구상의 육지 면적의 약 25%에 이르며, 당시 인구는 1억 인을 넘는데다가 3대양 전체에 면하는 엄청난 제국이었다.

1260년에 즉위한 제5대 칸 쿠빌라이는 1271년에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하고 지금의 북경인 대도(大都)에 도읍을 두었다. 이 도읍은 1368년에 명(明)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대제국의 수도로서 기능한다. 14세기 중반에 해체된 대제국은 1634년의 북원(北元 ; 1368-1634년)의 멸망까지 역사상 그 명맥을 남기게 된다.

당시의 몽골은 주변국들에 비해 압도적이고 월등한 강자의 모습이었다. 그런 만큼 몽골은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일변도의 전쟁의 수단만을 강요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이해에 가깝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사실 몽골은 초유(招諭)라는 외교수단인 유화책도 함께 구사했다. 한자어 초유란 “불러서 타이른다.”는 뜻이다.

어쩌면 십 수 차례의 초유 사이에 제1, 2차 몽골의 일본습래가 위치한다는 사실은 초유와 습래 자체를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몽골의 일본습래와 동시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일본습래 이후 어김없이 반복하여 출현하는 일본에 의한

3) 송완범, 「일본율령국가의 天災異變과 정책의 전환」 『일본사상』 제25호, 2013 참조.

이국(異國)정벌계획이다. 여기서의 이국은 고려를 뜻한다. 그렇다면 가마쿠라막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일본은 직접 쳐들어온 몽골보다 그 곁에서 몽골을 돕고 있는 고려를 더 원망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이국정벌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채로 폐기되고 만다. 이 미실행의 이유로는 이국정벌계획 자체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국 즉 고려를 친다는 것은 몽골을 공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니 말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초유/습래/이국정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을 전개해 가도록 하자. 먼저 초유에 대해서이다. 초유의 시작은 1265년 고려인으로 몽골의 관리가 된 조이(趙彝)라는 사람이 몽골 조정에서 일본과의 통교를 건의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⁴⁾ 이후 몽골의 일본 초유는 고려를 통해서건 아니면 직접 일본에 통하든 끊임없이 전개된다. 이것들은 1266, 67, 68, 69, 71, 72, 73, (74), 75, 79, (81), 83, 84, 92, 99년 등과 같이 거의 매년의 페이스로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74년과 81년의 몽골의 일본습래의 전후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로 초유와 습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각설하고 1265년의 고려인의 조언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의 몽골의 초유와 습래가 번갈아 발생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몽골의 화전(和戰) 양면책인 것이다. 이 이유로는 고려와의 싸움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 북쪽이 약 40년이나 걸린 것은 바로 고려왕실이 몽골 기병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다 건너 강화도에 은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눈에 보이는 섬 강화도도 그리 취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현해탄이라니, 몽골은 일본을 어르고 달래는 외교수단의 일종, 즉 초유하는 것에 의해 일본을 복속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가마쿠라막부는 고대 헤이안(平安)시대 이래의 신라의 해적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전통적 입장을 취해 오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좀처럼 고려의 몇 차례의 외교재개를 위한 사신의 왕래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고립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가마쿠라막부의 대외적 입장은 아무리 이웃나라 고려가 전쟁을 피해보고자 노력하거나 혹은 삼별초가 함께 몽골과 대항해 보자는 편지를 보내거나⁵⁾, 세계의 패자 몽골이 자세를 낮추어 찾는 초유라는 외교적 수단을 썼건만 소귀에 경 읽기였던 셈이다.

다음은 습래에 관해서이다. 제1차 습래는 1274년 10월에 시작하는데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 2만3천명의 규모였다. 전선은 대소 900척 규모로 해전에 능숙치 못한 몽골에게 있어 일본으로 가는 원정군의 결성에 있어 고려는 다시없는 조력자였던 셈이다. 이는 또 입장을 바꾸어 놓자면 일본 측에 있어서는 몽골보다 고려 쪽이 더 증오스런 대상이었던 것이다. 쓰시마와 이키를 파죽지세로 장악한 고/몽연합군은 규슈북부의 관문 하카타 연안에 상륙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무사단은 몽골군의 신무기와 진법 등에 상당히 고전한 것 같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치만구도쿤(八幡愚童訓)』의 기사가 참고가 된다.

당시의 무사단은 가마쿠라에서 파견되어 온 게 아니라 규슈 지역에 자신의 영지가 있는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가마쿠라막부나 간토(關東)의 무사들은 몽골의 일본습래는 어디까지나 “몽골의 규슈습래”였던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 무사단 전체의 동원이 아닌 조직적인 대응은 애당초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몽골의 제1차 내습 목적은 일본을 놀래게 해주려는데 있었다고 한다. 일본을 끝까지 제압해 중앙정부의 항복을 받아내게 할 작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어 퇴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때에 마침 가을 기압골의 변화에 의한 바람이 불어 그 퇴선을 방해하

4) 『元史』 卷208, 列傳95 外夷1 日本國. “元世祖之至元二年、以高麗人趙彝等言日本國可通、擇可奉使者。三年八月、命兵部侍郎黑的給虎符、充國信使、禮部侍郎殷弘給金符、充國信副使、持國書使日本。” 참조.
5)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 『東京大学史料編纂所報』 12, 1978 참조.

는 것이었다. 이때 그 동안 수세에 물려있던 스에나가를 포함한 규슈의 고케닌들이 들고 일어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후세의 호사가들이 말하는 대규모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히나 대단한 ‘가미가제(神風)’가 분 것도 아닌 것을 후세의 미화를 거친 전쟁담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습래는 사정이 달라진다. 제1차 습래의 전반적인 패배의 기운을 안고 규슈무사단은 가마쿠라막부의 지도하에 후속 습래에 대비한 방비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해석축지(要害石築地, 원구방루(元寇防壘)라고도 여기서는 원구방루)이다. 그 원구방루의 규모는 하카타만을 따라 서쪽의 이마즈(今津)에서 동쪽의 가시이(香椎)까지의 해안선 약 20킬로미터에 이르는 돌담이었다. 이 방루는 대개 높이가 2-3미터에 바닥부분의 폭이 약 3미터로 몽골군의 상륙을 해안선에서 저지하기 위해 백사장 가장자리 끝 부분의 모래 위에 축조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대응이 착착 속도를 내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몽골의 제2차 일본습래는 시작된다.

[그림2; 몽골습래에코토바(蒙古襲来絵詞)]⁶⁾



[그림3; 원구방루]



우선 전선 900척의 동로군이 고려의 합포를 출발한 것은 1281년 5월 3일이었다. 그러나 대소선 3500척 규모의 강남군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상보다 늦은 6월 중순경 경원(慶元, 현 영파寧波)·정해(定海, 현 주산舟山)를 출발하고 있다. 원래 양군의 계획은 6월 중순경 이키(壱岐)에서 합류하여 다자이후(大宰府)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으니 원래의 약속과 많이 어긋난 것이다. 이는 제2차 몽골의 일본습래의 실패를 알리는 전주곡이기도 했다. 게다가 건설된 20킬로미터

6) 김수미, 송완범, 『일본역사를 그림으로 읽다: 몽고습래에코토바』, 한국학술정보(주), 2017 참조.

의 원구방루는 갈 길 바쁜 원정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들이닥친 7월의 태풍은 규슈의 고케닌들에게는 진짜 ‘가미카제’였던 셈이다.

다음은 이국정벌계획이다. 앞에서 이국정벌계획이 두 차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제1차 습래가 끝난 다음 해인 1275년에 異國(고려) 정벌계획이 세워진다. 그 실행은 다음 해인 3월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몽골의 일본 초유가 있었음도 확인된다. 그 뒤인 1276년에는 남송 수도 임안이 함락되어 남송은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279년에 남송이 멸망한다. 이에 자극을 얻어 1281년 5월에 내습이 행해진 것은 앞에서 확인한바 대로이다. 그 이후 역시나 이국정벌계획이 출현한다. 이번에도 고려에 대한 미움의 뿌리가 깊었던 것인지 82, 83, 84, 92년에 이은 연속적인 이국정벌계획이 세워진다. 물론 이도 실제로 고려 나아가 몽골을 겨냥한 정벌계획이었다기보다는 국내의 규슈와 서국 무사단을 격동시키기 위한 혹은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13세기의 후반에 몽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변 농경민족들의 제압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몽골제국의 목표는 남송, 고려, 베트남, 일본의 정복이었다. 몽골의 이하 각 나라들에 대한 침입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남송(36), 고려(31), 베트남(58), 일본(74)이다. 이 순서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아닐지 예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몽골에게 있어 중요도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몽골이 침입을 시작한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다시 말해 지리적 혹은 물리적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몽골에게 있어 남송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몽골의 기병이 유럽을 휩쓸다 해도 원 중국의 패자 송을 완전히 제압해 몽골의 수하에 둔다는 것은 몽골제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금을 정복한 34년 이후 바로 남송 공격에 뛰어든 시점이 36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송과 관련해서 요 및 금의 시대부터 송의 후방에 위치하고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는 고려도 역시 손에 넣어야 송의 후방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남방의 맹주답게 58년과 83년에 연속해서 몽골에 패배를 안겨주었고 몽골의 결정적인 패배는 88년의 백등강(白藤江)싸움⁷⁾이었다. 바로 이 백등강의 대패가 없었다면 몽골의 제3차 일본습래는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현재적 의미

1) 고대의 함의

당과 신라는 한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양국은 배후의 안정을 위해서 왜와의 국교정상화를 노리고 다투어 통교를 구하게 된다. 그 때문에 왜는 실제의 전쟁에서는 졌지만 동아시아세계의 위상에서 보면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입장이 강화된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왜의 입장은 후의 일본율령국가의 대외관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율령국가의 성립의 배경에는 7세기의 대외적인 위기감을 기회로 한 많은 지방호족층의 선진문물에 대한 강한 욕구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위에 백촌강싸움과 672년의 ‘임신(壬申)의 난’이라는 미증유의 대혼란이 열도의 구성원들을 자

7) 1288년에 베트남과 원이 벌인 싸움으로 이전에 두 번이나 패전하고 있는 쿠빌라이는 1287년에 세 번째의 싸움을 준비하고 아들인 도간(鎮南王)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9만의 대군을 통솔하게 했다. 백등강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베트남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원군은 궤멸적인 심대한 타격을 입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극하고 일본율령국가 확립의 궤도를 깔게 하였던 것이다. 일본율령국가의 대외관은 중국으로부터의 중화의식을 흉내 낸 「소중화제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對반도우위관」의 형성은 8세기 이후의 일본율령국가의 부동의 연설로서 자리 잡아 9세기 중반 이후에는 「반도멸시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율령국가의 「對반도우위관」은 실태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번국을 동반하는 데에는 실패한 관념상의 「중화제국」이었다. 그래서 일본율령국가가 집착했던 것이 망국 백제의 왕인 「백제왕」을 「항상적인 번국(蕃國)」의 역할을 하는 「백제왕씨」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에 의해 비로소 「동이(東夷)의 소제국(小帝國)」의 체면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2)중세의 함의

다음으로는 몽골의 일본습래라 하더라도 몽골과 일본의 양국 관계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이는 역시 동아시아적 시점을 받아들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범주에는 제1차 습래를 전후해서는 고려(삼별초)와 몽골, 몽골과 일본, 일본과 고려와의 설명들이 각각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2차 습래를 전후하자면 남송과 몽고, 몽골과 일본, 일본과 고려, 몽골과 베트남 및 일본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몽골의 일본습래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가마쿠라막부가 제창한 이국정벌 계획은 막부를 중심으로 한 對 몽골 항전의 군사적 심리적 수단이었던 셈이다. 한편으로 이국정벌계획이 초래한 결과는 이후 고려에 대한 적대적인 적국의식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중세한 일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한다. 이는 나아가 실제적인 적대적 관계였던 백촌강싸움의 잔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의 반증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처럼 초유와 습래라는 화전(和戰) 양면의 상황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가마쿠라막부가 초강대국 몽골의 내습에 대해 강 대 강(強 對 強)으로 맞대응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당시 일본 국내의 지배계층의 이반, 다시 말해 조정과 가마쿠라막부가 몽골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가 노정된 것임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원래 율령법에 의거한 조정의 천황과 공경들이 외교권도 갖는 것이지만 13세기 중엽의 가마쿠라막부가 외교적 행위도 장악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는 각각의 초유의 개별 상황에 대해 어떤 이가 왔고 어떠한 경과를 거쳤는지 또한 국서의 내용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자면 조정은 대체로 몽골에 대해 유연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비해 막부는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막부의 권한이 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막부의 본래적 성격이 무력적 기반 위에 형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초유와 습래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같은 맥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13세기 후반의 몽골과 일본의 관계는 그 중간의 고려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제국의 관계를 함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동아시아세계라는 일국의 범위를 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국제전 중 일본이 관계된 전쟁은 고대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차례 있어 왔다고 말해진다. 먼저 7세기 중반경의 ‘백촌강싸움’ 13세기 중엽의 ‘몽골습래’ 16세기말의 ‘임진왜란’ 19세기말의 ‘청일전쟁’ 이후 1945년의 일본패망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전쟁의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은 일본이 관계하고 있는 이상의 전쟁은 예외 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익과 관계가 무척 깊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전쟁터가 거의 모두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⁸⁾ 특히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지만, 미국과 패권 경쟁하는 중국⁹⁾의 타이완 침공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唐史』, 『宋史』, 『元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日本書紀』, 『続日本紀』, 『日本後紀』, 『続日本後紀』, 『日本文徳天皇実録』, 『日本三大実録』, 『平安遺文』, 『大日本史料』, 『大日本古文書』, 『扶桑略記』, 『善隣国宝記』, 『蒙古襲来絵詞』, 『鎌倉遺文』 등.

송완범, 「백촌강싸움'과 왜」, 『한국고대사연구』 45, 2007

동, 「'임신의 난'과 日本」, 『史叢』 83, 2014

동, 「7세기 왜국의 外征과 内戰의 '戰後처리'와 일본의 탄생」, 『일본사상』 33, 2017

동, 「8세기 중엽 '신라정토'계획으로 본 고대일본의 대외방침」, 『韓日關係史研究』 25, 2006

동, 「고대일본의 '동국'과 '한반도유민'-8세기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4, 2017

동, 「고·중세일본의 국제전쟁과 동아시아-白村江싸움'과 '몽골襲来'-」, 『史叢』 92, 2017

김재천·윤상용, 「클라우제비츠 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5권 2호 (통권 48호), 2009년

김수미, 송완범, 『일본역사를 그림으로 읽다: 몽고습래에고토바』, 한국학술정보(주)』, 2017
廣瀬憲雄, 講談社選書メチエ569『古代日本外交史: 東部ユーラシアの視点から読み直す』, 講談社, 2014

Frank, Andre Gunder 著/山下範久 訳, 『リオリエントーアジア時代のグローバル・エコノミー』, 藤原書店, 2000

니시지마 사다오 저/이성시 편/송완범 역 『일본의 고대사 인식-'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2008

이성시 저/ 이병호·김은진 역,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2022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国家』, 岩波書店, 1971

金鉉球, 『大和政権の対外関係関係』, 吉川弘文館, 1985

北啓太, 『天平4年の節度使』 『土田直鎮先生還暦記念奈良平安時代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1984

井上薫, 『奈良朝仏教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66

鄭淳一, 『九世紀の来航新羅人と日本列島』, 勉誠出版, 2015

송완범, 「일본을령국가의 天災異變과 정책의 전환」 『일본사상』 제25호, 2013

한국고대사학회 편, 『한국고대사학회20년 1987-2006: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007

倉本一宏, 『戦争の日本古代史』, 講談社現代新書, 2017

8) 宋浣範, 『東アジア安全共同体論』序説 - 戦争・災害・災難 -, 學習院女子大學國際學研究所叢書 『調和的秩序形成の課題』, お茶の水書房, 2016 참조.

9) [2022 새해특집/글로벌 석학 인터뷰] <1> 미어샤이머 미시카고대 석좌교수 “한국은 中과 무덤 위서 춤출지, 美 핵우산 유지할지 자문해야”/“中, 한미 가까워질수록 보복할 것... 한국이 치러야할 불가피한 대가”(『동아일보』, 워싱턴 문병기 특파원/입력 2022.01.01. 03:00); “한국, 폴란드처럼 지정학 위치 최악, 미중 갈등 대비를”(『중앙일보』, 입력 2011.10.10.) 참조.

石井正敏, 「文永八年来日の高麗使について」『東京大学史料編纂所報』12, 1978
新井孝重, 『戦争の日本史7 蒙古襲来』, 吉川弘文館, 2013
石井正敏, 近藤強ほか 編『石井正敏 著作集第3巻: 高麗・宋元と日本』, 勉誠出版, 2017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송완범, 『동아시아세계 속의 일본을령국가 연구-百濟王氏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20
金野純 編, 學習院女子大學國際學研究所叢書『調和的秩序形成の課題』, お茶の水書房, 2016

송완범, <일본 고·중세의 외교사-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을 중심소재로> 토론문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김태진

본고는 일본 고중세의 ‘외교사’를 ‘백촌강 싸움’과 ‘몽골의 내습’이라는 국제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세와 중세의 일본의 사료들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일본이 당시 한반도의 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너무 현대적 개념들, ‘국제전쟁’, ‘전후처리’, ‘외교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동서양 외교 개념사 연구라는 주제하에서 외교 개념이 이른바 ‘전통’ 시기,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관념, 구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때, 오히려 너무 현대의 이해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나 ‘국경’의 개념, 혹은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했다고 할 때, 즉 근대적인 방식과 다른 양상으로 국제관계가 존재했다고 할 때 이 시기에 일본의 외교사를 근대적 개념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전통 시기 일본에 근대적 개념으로서 ‘외교’라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째 질문은 첫째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2장에서 다루는 히로세 노리오의 ‘동부 유라시아론’은 흥미있고, 국가를 포함한 기타 행위자들간의 비군신관계에 주목하고, 복수의 질서가 병존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은 2장에서의 소개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적어도 적절히 설명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부유라시아론과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세계’라는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장의 ‘동부유라시아론’을 본고의 분석에 적용했을 때 기존의 해석과 다른 일본의 외교사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본론에서 중간중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만, 과연 그런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혹은 어떤 생각의 단서 정도만 제시하고 아직은 제대로 논증되지 않은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렇게 신라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고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왜 신라정토계획을 세웠는가? 이를 백촌강 싸움에의 참가와 패배라는 아픈 기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추정은 보이지만, 이를 추정, 물론 그런 논리적 추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사료를 통해서 전쟁이 한반도의 국가들에게 보이는 적대감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미있어 보이며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본론에서의 분석 속에서 제대로 이야기되었던 내용인지는 약간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아시아세계 속의 일본을령국가 연구-백제왕씨를 중심으로』에서 주장하신 부분인데,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오히려 대외인식을 강하게 규정한 면이 있다는 지적일 겁니다. 본고에서도 몽골의 내습에 이은 이국정벌계획 역시 국내적 차원에서 규슈아 서국 무사단을 격동시키기 위한 혹은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전후처리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국내정치로 내재화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서 함의로 제시하시는 “일본의 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익과 관계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국내정치적 요소가 일본의 대외관을 강하게 규정할 때, 혹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의 전쟁을 함께 봐야한다는 논리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 2 부

근대 서구의 외교 관념

오영달(충남대)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전후 근대유럽
외교개념의 등장과 변천”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전후 근대유럽 외교개념의 등장과 변천

오영달 (충남대학교)¹⁾

I. 서론

국가들 간의 관계로서 외교 개념은 한 국가 정부의 외교 담당 부서가 다른 국가 정부의 외교 담당 부서와 상호 교섭, 업무를 처리하는 현상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들에는 보편적으로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는 오늘날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교류의 확대에 힘입어 인류 삶의 범위가 지구촌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 개인들 또는 기업을 포함한 단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인간 삶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외교라는 용어 앞에 기존의 국가 행위자 외에 다양한 행위자들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더해져 표현되기도 한다. 그만큼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중심의 외교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위자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최근 새로운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취임 직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에 당선자의 특별외교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유럽 또는 동양의 전통적인 외교에 있어서 왕조 또는 오늘날의 주요국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략의 전개과정은 외교의 한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또 하나의 전통적인 외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외교와 전쟁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해왔던 전통적 개념에서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 17세기 이래 등장한 국가 중심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레이몽 아롱이나 한스 모겐토가 국가들의 관계를 전쟁과 평화의 관계로 바라보면서 전쟁은 군인들이 담당하고 평화관계는 외교관들이 담당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²⁾ 바로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국가 내의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국가 외교부의 직업외교관 외에 국가 정상 간의 외교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달리는 서로 다른 국가들의 민간신분의 개인들이나 단체들 사이에 학문, 예술, 스포츠, 기술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교류들로서 민간외교도 오늘날 외교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이에 더하여 한 국가 정부들이 상대방 국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목표를 두는 공공외교도 새로운 접근으로 중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사용되는 공식외교의 등장과 변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베스트팔렌강화조약 전후 시기에 초점을 두어 외교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견이 존재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베스트팔렌 강화조약을 전후하여 등장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확대, 전파과정을 거쳐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주권국가 중심의 교섭관계로서 외교는 여전히 외교개념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지구 사회에 존재했던 행위자들은 씨족사회, 부족국가, 고대국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근대국가 형태 등 참으로 다양하였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속해있는 동양에서도 중국 중심의 외교질서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명청 시기에 중국에서는 예부와 이변원에서

1) 이 글은 아직 작성 도중에 있으니 인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환영합니다.

2) Raymond Aron, Hans Morgenthau

조선에서는 예조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하였었는데 이는 오늘날과 개념적 차이가 있는 제국주의적 조공외교 관념 하에서 운용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를 통하여 청국의 외교관념도 서양의 외교관념과 제도에 편입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등장하고 변천을 보여준 국가정부 외교의 성격과 지향점에 대하여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이후 등장한 주권국가들은 곧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 즉 ‘제국성’이 강조되기도 한다.³⁾ 그러나 이 논문은 외교사의 긴 시간적 맥락에서 그리고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베스트팔렌강화조약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무정부상태의 시작이 아니라⁴⁾ 인간 개인들 그리고 그 집합체로서 국가 공동체의 자유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 과정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유의 의미는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강대국의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성에 기초한 국가의 생존과 이익 추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근대 유럽에서 국가주권 개념의 공식화를 통해 국가 외교관계의 초석을 놓은 베스트팔렌강화조약 전후 시기의 외교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러한 외교 개념이 어떠한 시대적 변천을 보여주는 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개념 정의와 경쟁성(係爭性, contestedness)

오늘날 국가 또는 그 정부들의 중심적 기능 중의 하나로서 외교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概念, concept)이다. 일반적으로 학문 세계에서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개념들을 동원하게 되고 이때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하여 제한적인 일정한 의미로 이미 정의(定義)되었다고 가정하거나 그 개념을 논의하는 주체가 그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 논자들은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화자(話者)들 간에 객관적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처럼 개념정의는 하나의 주관적인 의미부여(subjective meaning-giving)로 이해될 수 있다. 자연세계와 달리 사회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들은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세계와 달리 사회세계의 개념들은 인간 개개인들 그리고 그 함으로서 인간 공동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그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 개인과 그 공동체 전체의 삶 그리고 그 국가의 이웃 국가들 그리고 나아가서 지구사회 전체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개념 정의 자체가 어떤 논자의 세상에 대한 관점(觀點, perspective)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관점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다른 것은 그르다고 확정적으로 말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 분야에 있어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맑시즘, 여권주의 등은 이처럼 경쟁하는 대표적인 관점들이다.

외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많은 행위자들 중에서 주권 국가들의 고유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개념적인 면에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자면

3)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의 제국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4) 이러한 의미에서 구성주의자인 웬트가 ‘무정부상태는 국가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1992), pp. 391 - 425.

그것은 주권, 영토, 국민 등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 구성요소들 중에서 영토, 국민 등은 비교적 가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그 의미에 대하여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개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슬리(H. F. Hinsley)는 그의 주권론이라는 저서에서 매우 확고한 정의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주권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이며 그 국가 밖에 또 다른 같은 권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⁵⁾ 힌슬리는 이러한 정의를 장 보댕과 토머스 홉스의 논의에서 도출하였는데 그만큼 그는 이 두 사상가들의 논의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힌슬리는 보댕과 홉스 두 사상가들이 주권에 관한 논의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았으며 이후 주권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제시한 논의의 재사용 또는 오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그러나 사회세계의 개념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둘러싸고 필수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외교라는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권 국가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 예를 들면, 일찍이 갈리(W. B. Gallie)는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사회 세계의 많은 개념들이 그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갈리에 따르면, 어떤 개념이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녀야 한다.

첫째, 어떤 종류의 가치있는 성취를 나타내거나 인정한다는 의미의 평가성(appraisal), 둘째, 비록 그의 가치가 전체로서 그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 성취는 내적으로 복잡한 성격의 것임, 셋째, 그리하여 그의 가치의 어떤 설명도 그의 여러 가지 부분들 또는 측면들 각각의 기여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야 함, 넷째, 그 인정된 성취는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상당한 변경을 시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것이어야 함.⁷⁾

이에 네 가지에 더하여 갈리는 어떤 개념이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범주에 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위에 이어서

다섯째, 각각의 화자는 그의 용어 사용이 타 화자에 의해 계쟁되며 문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타 화자의 기준에 비추어 최소한 상이한 기준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여섯째, 해당 개념의 경쟁적인 모든 사용자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개념의 본래적 전형으로부터 그러한 개념이 파생됨, 일곱째, 이러한 용어들의 적절한 의미에 있어서 해당 개념의 경쟁적 사용자들 간의 경우처럼 인정을 받기 위한 지속적인 경쟁이 최적의 방식으로 본래적 전형의 성취를 유지하고/또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⁸⁾

갈리의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외교라는 개념 그리고 외교라는 개념과 직결되는 개념들이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라는 용어는 위 갈리의 기준에 볼 때 국민들을 구성원으로 갖는 국가 공동체의

5) F. H. Hinsley,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26.

6) *Ibid.*, pp. 125, 144.

7) W. B. Gallie,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Vol. LVI(1956), 171-2.

8) *Ibid.*, pp. 172, 180.

이익 성취라는 목적이 있다. 또한 ‘외교’라는 용어는 그를 수행하는 주체나 주제 분야 등 내적으로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다. ‘외교’라는 용어의 가치를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 자체 외에도 다른 관련 요소들의 기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추구하는 이익이 국수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의 견지가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식적 외교에 더하여 공공외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외교’라는 용어가 달성해냈다고 주장하는 어떤 성취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변화하는 국내 정치상황 또는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외교’ 활동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종종 견해차가 존재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각 화자들이 외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타 화자의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각 화자가 최소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양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외교 활동이 오로지 단기적 국가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조건에서 볼 때, 각 화자들이 서로 다른 의미로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외교’라는 용어일지라도 이러한 용어들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화자들 모두에게 권위가 인정되는 본래의 전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교는 국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하나의 전형이 있고 그로부터 다른 의미를 갖는 외교에 대한 파생 활동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외교’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양한 경쟁적 이해들을 고찰하는 것 자체가 이 외교 개념의 재확인을 통한 전형의 유지 또는 발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III.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전후 시기의 외교 개념

1. 베스트팔렌 이전 시기

흔히 주권국가들 간의 교섭관계로서의 외교는 1648년에 30년 전쟁을 종결하며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있어서 타자 또는 타국과의 교섭 또는 교류의 의미로서 외교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교섭 또는 교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주권 국가라는 행위자와 다른 형태였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전쟁사가 잘 보여주듯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사이 그리고 이러한 도시국가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외교가 있었다. 이러한 외교는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상주외교와는 다른 임시외교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주외교는 15세기 르네상스 시기 근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1450년에 베니스에서 피렌체로 상주외교사절을 파견한 것이 그 효시라는 것이다. 이때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오늘날의 영토, 국민, 주권 등의 기본요소를 갖는 주권국가와는 다른 정치공동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기독교세계에서 주요 정치공동체의 단위들로서 도시국가들, 왕국들, 도시 연맹, 신성로마제국, 오토만 터키 등과 교황청이 있었다.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공동체를 통제하는 권력의 정점을 놓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로마 교황청의 교황 사이에 양검론으로 표현되는 경쟁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가 서기 313년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되고 이어서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오랫동안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

속 권력에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16세기에 들어서 마르틴 루터 등이 주도한 가톨릭 종교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프로테스탄티즘의 신교가 등장하여 가톨릭, 곧 구교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기독교 세계를 지배해왔던 가톨릭의 로마 교황청과 그 세속적 보호자 역할을 했던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왕가를 한편으로 하고 이러한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세계를 연 루터 등의 신교 종파 그리고 이러한 신교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신성로마제국 내의 영방 제후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 핵심적 추동력에는 정치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촉발적 요인은 바로 신앙의 자유라는 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틴 루터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존의 가톨릭 위계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측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경과 양심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자유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2. 베스트팔렌강화조약과 주권국가 외교의 등장

1648년 보헤미아 지방에 완고한 가톨릭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 대공이 왕위계승자로 지명되자 그 대다수가 신교도인 귀족들이 향후 예상되는 종교 탄압을 두려워하여 페르디난트 대공의 보헤미아 왕위 계승을 거부한데서 신교와 구교 양측 간의 갈등과 무력충돌이 촉발되었다.⁹⁾ 이렇게 시작된 크고 작은 전쟁들은 1648년 30년간 까지 지속되다가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의 뮌스터와 오스나뮈르크 두 도시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종결되었다. 이 전쟁에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직을 유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이탈리아, 네덜란드연방,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였고 전쟁터였던 신성로마제국에서 많은 인명살상과 파괴가 있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신생 국가들은 제국들에, 반란 제후들은 신성로마제국에, 자유도시들은 제국 도시들에, 그리고 가톨릭은 신교파들에 대립, 상쟁하였다. 이 전쟁의 끝무렵에 4년에 걸쳐 진행된 강화협상의 결과로 체결된 베스트팔렌강화조약에 대하여 당시 교황은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 이유는 이 강화조약의 결과는 곧 루터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내 분파주의를 확인하였고 신성로마황제의 정치적 권위를 크게 감소시켜으며 나아가 기독교 세계 통일의 상징이었던 교황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베스트팔렌조약은 유럽을 가톨릭 하 단일한 세계가 아니라 특수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직함을 의미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세계사회에 국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들을 위한 외교질서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로마 교황과 신성로마황제가 정점에 위치하고 있던 위계체제 하 법적 기독교를 대체하였던 것이다.¹⁰⁾ 이 강화조약은 유럽의 역사에서 주권국가에 기초한 대륙의 외교질서를 수립하는 최초의 성공적 시도였다.

30년 전쟁의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은 종교적 관용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패권적 야망 문제였다. 종교적 관용에 관한 문제는 오스나뮈르크 협상에서 폭넓게 다루어졌는데 신교파 연합의 지도국으로서 스웨덴은 이 문제를 신성로마제국의 개별적 제후와 다른 구성원들의 관할권 하에 두는 해결책을 고집하였다. 그 해결 방식으로 1555년의 아우그스부르크 화의(Peace of Augsburg)로부터 ‘제후의 종교는 국가와 그 주민들의 종교가 된다’는 원칙을 차용하였다. 이

9) 김준식, “30년 전쟁의 역사사회학: 불균등결합발전론을 중심으로,” 『주권과 비교지역질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37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 77.

10) Kalevi J. Holsti,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25.

러한 방식 또한 보편적 종교적 관용을 위해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는데 이유는 그 방식이 종교적 관행의 규제 문제를 국가에 남겨놓았으며 합스부르크 왕가 영토에서의 관용은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은 사적인 신앙생활의 권리를 분명히 확인하였고 어떤 통치자에 의한 추후의 종교변경이 이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신민들은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사적 신앙으로 인하여 민간적 권리의 차별을 당하거나 종교적 장례의식을 거부당해서는 안되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항들을 통해 베스트팔렌조약의 종교적 관용에 관한 해결책은 1955년 아우그스부르크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패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베스트팔렌강화조약의 결과는 대체로 스웨덴과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하였는데 스페인, 신성로마제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중부 유럽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영토들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분할하는 것이었다. 뮌스터조약 하에서 아직 프랑스와 전쟁 중에 있었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스페인에 대하여 원조 제공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오스나뷔르크조약과 뮌스터조약 모두는 페르디난트 3세 황제와 그의 후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제국적 야망이 없음을 규정하면서 스웨덴과 프랑스에 이러한 약속의 강제와 관련하여 제국의 문제에 관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¹¹⁾

제국의 패권 가능성을 종식시킬 주된 방안은 제국의 개별적 구성 단위체들의 권리를 확립하고 제국 외교정책에 그들의 통제권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오스나뷔르크조약은 사실상 신성로마제국의 헌법을 재작성하였는데 외교정책에 대한 황제의 대권을 제국 의회의 감독과 효과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하였다. 예를 들면, 오스나뷔르크조약의 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입장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후들, 제후들, 신성로마제국의 영방들 모두와 각각은 여기에 어떤 방식이나 구실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거나 손상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유구한 권리들, 대권들, 자유들, 특권들, 그리고 영토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분명히 확립되고 확인된다.¹²⁾

또한 오스나뷔르크조약 65조는 다음과 같이 주권을 시사하는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제국 구성원들의 제국과 황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였다:

제국 의회의 구성원들은 저촉됨이 없이 제국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심의에 있어서 투표권을 향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하여 당장의 업무가 법의 제정이나 해석, 전쟁 선포, 군대의 징집이나 숙영, 영방들의 영토 내 새 요새 구축, 또는 낡은 주둔지의 보장일 때; 또한 강화조약이나 동맹관계이 체결되어야 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하여 다루어질 때 등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또는 유사한 것들의 어느 것도 제국의 모든 영방들의 자유로운 집회의 투표와 동의 없이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무엇보다도, 제국의 각 영방들이 그들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 낯선 사람들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영원히 자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맹이 황제와 제국에게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¹³⁾

11) *Ibid.*, pp. 34-5.

12) Symconx, 1974, pp. 46-47, Holsti, *op. cit.*, p. 35에서 재인용.

13) Symconx, 1974, pp. 46-47, Holsti, *op. cit.*, p. 35에서 재인용.

이 오스나뉘르크조약 65조에 의하여 유럽의 국제관계의 유형은 크게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제 300개가 넘는 정치체들이 동맹을 체결하는 등 외교관계를 수행할 자격을 갖게 되었고 신성로마황제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거나 또는 심지어 동맹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국의 각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른 조항들에서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이러한 두 조항의 원칙들을 특히 강제하기 위해 제국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조항들은 패권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협상 대표단은 또한 미래에 있어서 분쟁 관리 절차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뮌스터조약의 113조와 124조는 서명당사자(국)들이 분쟁문제를 우호적인 중재 또는 법적 수단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하였다. 또한 이에 더하여, 3년의 지체 후에 손상을 입은 국가가 부드러운 수단과 정의에 의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을 때 이 피해당사국에 대해 공동으로 원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경우, 피해를 가한 국가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의무의 중대한 단점은 어떤 손상이 일어났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조항들이 갖는 의미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주권국가들의 등장을 조약문서로 인정함으로써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정부상태의 도래가 아니라 여전히 유럽 세계의 상호공존의 원칙에 의한 운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고 보다 빈번하게 국가들 사이에 힘의 경쟁으로 결국은 전쟁으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베스트팔렌강화조약 이후 유럽의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개인 및 그 공동체로서 국가들의 자유와 평화로운 공존노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이기적 성향이 전면에 드러나곤 하였다.

III. 스페인왕위계승전쟁 및 나폴레옹전쟁 이후 시기

이후 유럽의 국제사회는 베스트팔렌강화조약에 의거하여 비교적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유지하다가 1701년에 발생한 스페인왕위계승전쟁에서 다시 유럽의 국가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영국은 1689년 명예혁명 이후 프랑스와 유럽 국제사회의 주도권 경쟁을 벌였는데 1700년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가 사망하자 프랑스의 루이14세가 그의 손자 앙주공 필리프를 후계자로 앉히자 이를 반대하는 영국이 신성로마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함께 스페인 및 프랑스에 대하여 전쟁을 한 것이다. 이 전쟁의 종결을 위해 체결된 유티레히트조약은 유럽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세력균형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력균형원칙은 유럽 국제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으로 현실주의에서 평화성취의 원칙으로 제시한 세력균형원칙과 내용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혁명전쟁 과정에서 등장한 나폴레옹 그리고 그가 주도한 나폴레옹전쟁 중에 나온 오스트리아의 외교관 프리드리히 쾨츠의 세력균형론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그는 1804년에 출판한 『유럽의 세력균형』이라는 저술에서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어떤 한 국가가 세력을 급속히 키워서 유럽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나머지 국가들이 단합하여 이 질서 파괴국가에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유럽 근대에 있어서 오랫동안 유지되

14) Holsti, *op. cit.*, pp. 35-36.

었던 세력균형론은 그 실제적 의미에서는 오늘날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집단안보원칙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근대 유럽의 세력균형론이 제국주의적 경쟁을 전제로 제시되거나 운용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평화공존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자유주의적 상호 공존논리가 유럽 내 국가 내의 운영원칙에서 더욱 진전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국가 밖에서는 다시 정통주의 또는 기존 왕정들의 복고 정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것이 비엔나회의의 결과 나온 유럽협조체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프랑스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감행된 것으로 이에 간섭하는 이웃 군주국들에 대하여 프랑스 시민들은 전쟁을 수행했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시민혁명 정신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점령하여 그 자신의 일가들을 통치자로 봉하는 등 전제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모순성을 보여주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퇴출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하여 이웃 군주국가들인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개입하자 프랑스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였다. 이 프랑스 시민혁명 결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nation-state)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국민개병제가 실시되어 이전에 용병이나 귀족 등이 전쟁을 수행하던 것이 바뀌어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유럽협조체제 하의 정통주의와 복고주의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 1822년 그리스의 독립, 1839년 벨기에의 독립을 보게 된다. 이후 1853년 크림전쟁을 통해 오스만 터키가 유럽 국가들에 의해 주권국가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이어서 1861년 이태리의 통일, 1871년 프러시아에 의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한편으로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정착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정치적으로 자유주의는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국가들 간에 경쟁이 가열되어 민족주의적 경쟁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트가 저격됨으로써 촉발된 제1차세계대전이다. 독일의 빌헬름2세에 의한 제국주의 정책은 결국 영국, 미국 등 자유주의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혀 전쟁에서 패배하고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해 종결되었다. 이때 전쟁의 종결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도 민주적으로 공개리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약소민족들의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자유주의적 변화는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자유의 정신이 더욱 높아져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독립국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IV. 결 론

이 논문은 오늘날 운용되는 주권국가 중심의 외교 개념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근대 유럽의 국제사회에서 등장, 운용되어왔음에 유의하여 특히 베스트팔렌강화조약 시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주권국가들이 중심적 주체가 되는 외교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 논문은 유럽국가들이 자유주의적 이념 노선을 꾸준히 확대시켜왔음을 주장한다.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자체가 가톨릭

력의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청의 위계적 질서체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후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베스트팔렌 강화조약에서 시작된 유럽 국제사회의 평화공존원칙으로서 세력균형은 이후 종종 국가 통치자들의 힘의 경쟁 성향에 의하여 무너지기도 했지만 유트레히트조약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프리드리히 겐츠의 저술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럽에서 평화를 위해 상호 공유하는 중요한 원칙이었던 것이다. 근대 유럽외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원리로서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한 상호존중 외교와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국력배양을 바탕으로 상대국가에 대한 경쟁 중심의 국수주의 외교정책은 최종적으로 자유주의의 승리와 확대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주주의 외교원칙과 민족자결주의는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했다. 이후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향은 계속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으로 나타났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정치체제가 후퇴하고 제한적이거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전세계에 걸쳐 전파되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경향은 아직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작지 않은 국가들에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외교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전쟁은 베스트팔렌 강화조약이 체결된 지 400여년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자유주의적 외교 개념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새롭게 형성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의 단층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자유주의 정신의 확대가 오늘날 국가들의 외교개념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주권국가

힌슬리

전재성

자유주의 관점의 접근

강진옥(성균관대)

이 글은 베스트팔렌 강화조약 이후 근대 유럽에서 등장한 외교개념과 그 변천과정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베스트팔렌 강화 조약 이후의 국제관계를 국가 간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해, 국가공동체의 자유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노력, 행위자간 상호성에 기초한 국가의 생존과 이익추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오늘날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지배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맞서, 대안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이론적·현실적 쓸모를 제기하고 있는 글이다. 현실주의 이론이 지배적인 국제관계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정치이해에 이론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발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익추구, 국가 간 경쟁 등 현실주의적 관점과 그 대안이 지배적인 작금의 국제정세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공존, 상호성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서의 인식론적 전환과 그 해결방안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 글이 가진 현실적 함의 역시 높다고 여겨진다.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외교 개념의 등장과 변천과정을 강대국의 통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관점의 역동성을 추적하기 보다 그 일면만을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이론에서 자유주의는 개인, 비정부기구, 국제레짐과 같이 국가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가와 별이는 갈등과 투쟁이 국제정치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논점인데, 이 글에서는 국가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이 국가와 별이는 역동성에 대한 이 같은 자유주의적 논지가 탈각된 채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제기한 외교개념의 계쟁성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여지를 준다. 갈리의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의 명제 중 일곱 번째, 즉 계쟁성이 개념들간의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유지 또는 발전되는 것이라는 필요조건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강대국의 억압에 맞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단순화한 저자의 단순화한 자유주의적 해석은 자유주의적 관점이 강조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가와 별이는 갈등과 투쟁이 외교개념의 변천을 이끌어내면서 외교개념의 계쟁성이라는 특징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강조하는 국가이외의 행위자에 주목한다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시기, 즉 주권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했던 이 시기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저자 역시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시기 신앙의 자유의 원리가 신교교간의 갈등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논의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작으로 제시한다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주권을 명시한 근대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본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안으로서의 자유주의의 쓸모가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문의 제 3장 “스페인왕위계승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 이후 시기”를 보면, 외교개념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기 보다 자유주의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 시기에 대한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변화의 맥락이 곧 외교인가? 저자가 정의하는 외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외교 개념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시기 구분의 문제이다. 본문의 내용은 조약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조약의 타결과 레짐 형성에 대해 자유주의적 해석은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약이 파괴되고 다시 조약이 맺어지는 시기에 대한 분석은 자유주의 보다는 현실주의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약 중심의 시기 구분이 아닌, 조약이 파괴되고 타결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자유주의적 해석의 가능 여부가 외교사에 대한 통시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접근에 대한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여겨진다.

최형익(한신대)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 불간섭, 중립,
비동맹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 불간섭, 중립, 비동맹 개념을 중심으로

최형익(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I. 서론

미국은 독립한지 250년이 채 안되는 비교적 신생국에 가깝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은 이보다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시대와 독립전쟁을 경과하며 체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전쟁과 헌법제정기를 전후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미국의 대외인식에 끼친 영향을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의 외교적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원천이 국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지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¹⁾

이 연구는 건국 이후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적 인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사는 기존 유럽나라들과는 결이 다른 정치문법을 채택해온 역사였다. 외교정책 상의 변형과 변주, 이론과 실천 상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외교정책을 떠받치는 외교 개념과 전통이 내재해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미국은 혁명적 사건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독립에 성공한 최초의 식민지이자 ‘최초의 신생국가’라는 점에서 예외적이었다(Lipset, 2006:14). 따라서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혁명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거기에 내포된 이론적 함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 글은 미국 외교 개념의 핵심을 불간섭과 중립, 그리고 비동맹으로 요약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미국의 외교개념과 대외인식이 탄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 연방헌법, 『독립선언』, 워싱턴의 ‘고별연설’을 중심으로 독립과 건국시기 미국의 외교개념에 대해 분석한다.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 연구의 중요성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군사동맹 이상이

1) 이것은 또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change and continuity)”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가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뿐 아니라, 국가에 내재하고 있는 요소로 인한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독립과 건국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지탱해온 이념적 원칙과 권력자원에 대한 분석으로는 케글리(Kegley et. al., 2008:29~74) 참조.

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계질서에 접근해왔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을 연구하는 일은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외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II. 독립 전쟁과 건국시기,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의 역사·문화적 배경

특정 국가가 직면하는 국내외적 상황 및 결정요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째서 일정기간 동안 그 국가의 외교적 특성이 지속되어 유지되는가? 아마 그 해답의 하나가 특정 외교정책의 배경지식으로 작용하는 그 나라의 지적 전통으로서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이다. 한 나라가 국제정치적 사안을 다룸에 있어 역사적 시공간을 통해 축적되어 꾸준히 유지되는 대외인식의 전통이 존재한다면 정치지도자와 국민들 간에 공유되는 외교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처럼 태생적으로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국내 정치와 긴밀히 연관된 민주주의 정치체제일 때 국가 구성원들 간 공유된 신념과 외교정책 사의의 상관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Rosenau, 1980:113).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에 대한 고찰은 미국의 외교사가 마이클 헌트의 외교정책의 지적 전통을 이루는 “비공식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 헌트(Hunt, 1994:10)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란 국제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책결정자나 대중이 세계를 보는,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미국을 보는 시각에 구조와 의미를 더해주는 상호 보완된 사고들의 일관된 실체를 지칭한다. 이런 사고들의 비공식적 체계는 문화적 가치와 관행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며, 이는 다시 정책결정자들의 지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때 비공식적 이데올로기는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미국민족주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계층적, 지역적, 그리고 윤리적 배경을 반영하며,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그리고 왜 결정하는지를 일러주는 근본적인 출발 또는 배경적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정책을 통해 표현되는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은 일정기간 역사 속에서 유지되다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초기 내용과 상당정도 유사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외교정책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의 한 유형이며, 그것은 정치사회 구조 및 역사문화적 특성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외교의 역사적 경험은 그 외형만 놓고 보았을 때, 200년도 채 안 되는 시기 동안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패권적 지위를 갖는 세계최강국으로의 부상이라

는 놀라운 진폭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전 양상 자체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행태는 유럽 국가들의 외교행태와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띠었다. 요컨대, 미국 외교는 무정부성을 띠는 국제정치체제에 속해 있는 국가행위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수성 또한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다.²⁾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을 포괄적으로 드러내주는 정치문화적 개념이 바로 ‘미국 예외주의’이다.³⁾ 미국 예외주의의 탄생은 독립과 건국시기의 미국인들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한다.⁴⁾ 한마디로,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이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미국인들의 신념을 의미한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통해서 구대륙의 국가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의 국가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은 그 이전 200년 가까이 영국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상당한 자치권과 시민적 자유를 이미 향유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바로 영국 국왕의 칙허장이 자리하고 있다. 영국국왕이 식민지에 내린 대표적인 칙허장이 바로 1606년 제임스 1세가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한 버지니아 제1칙허장이다.⁵⁾

버지니아 제1칙허장의 핵심은 식민지 정착민을 내국인에 준해 대우한다는 것이다. 곧 식민지 정착민을 영국신민으로 간주하여, 그에 준해 식민지 영국인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본국 정부로부터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영국정부가 식민지 정착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치적 자치권을 일찍부터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독립 전쟁 이전까지 식민지 인들은 영국인들과 자신이 동일한 모반에서 태어난 형제, 곧 동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대륙에서의 삶을 영위했다.⁶⁾

2) 미외교사 연구영역에 있어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는 이리예(Iriye, 1991), 존슨(Johnson, 1994) 참조.

3) 김기정(2009:48)에 따르면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 고립주의 대 국제주의라는 대립적 양면성을 가진 미국 외교가 그들의 대외관계사의 경로에서, 또 국내정치의 변동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미국의 역사문화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데, “외교적 영역에 있어 이 양면성의 외교이념을 존속시켜 주었던 하나의 이념이 바로 미국 예외주의”였다.

4) 립셋(Lipset, 2006:17)은 미국예외주의에 끼친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을 통해 고무된 도덕주의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반대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대외관계에서 나타나는 미국만의 독특한 양식을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도 포함했다. 전쟁에 대한 저항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지지 역시 도덕주의적이었다. 전쟁을 승인하고, 국민들에게 타 국민을 살해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요청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분쟁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사탄에 대항하여 신의 편에 서는 것—악에 무리에 대항하여 도덕을 수호하는 것—으로 정의해야만 한다. 적어도 미국인들은 미국이 물질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거악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선다고 인식했다.”

5) 1606년 제임스 1세가 식민지에 하사한 ‘버지니아 칙허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eb.archive.org/web/20050301092128/http://www.yale.edu/lawweb/avalon/states/va01.htm> 참조.

평생 독신으로 지낸 엘리자베스 여왕에 착안하여 명명한 버지니아 주에 1607년,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 도시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제임스타운은 두 세기 가까이 영국과 우호적이며 형제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식민지인들은 자치에 영국법, 특히 대의제를 준용했고, 영국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모국이 영국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뉴잉글랜드 보스턴을 중심으로 건설된 식민지 도시 이름을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라는 영국 도시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만 해도 식민지 미국과 모국 영국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버드대(1636년 창설)나 예일대(1638년 창설) 등 아이비리그 대학의 역사가 근 400년 가까이 된 것은 식민지 당시,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식민지시기에 미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경험했다.⁷⁾ 19세기 중반,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의 생활수준을 뛰어넘었다. 미국 식민지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개인에게 물리는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았고 시민적 자유와 자치권이 인정되어 폭정 및 억압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대서양이라는 천혜의 방벽에 힘입어 유럽 국가들의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대중정치의 승리는 일상생활에 커다란 한 가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미국 본토 미국 본토 식민지는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싼 곳이 되었다. 실제로 식민지 시대의 미국은 역사상 제일 세금이 싼 나라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매우 작고 권한이 한정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었다. 벌금, 금융기관의 수익, 또는 토지 불하에서 조달되는 예산도 많았다. 뉴햄

6) 브링클리(Brinkley, 2005:151)에 따르면, 식민지의 독립을 일찍부터 특징지은 것이 바로 자영농 사상이었다. “식민지 경제의 중심은 영국처럼 상업이 아니라 농업이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농업은 남부와 북부 할 것 없이 17세기와 18세기 내내 식민지 전역에 걸쳐 지배적인 경제활동이었다. 바로 이것이 유럽 국가들과는 비할 데 없이 새롭고 역동적인 대륙 아메리카의 활력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독립적인 자영농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자영농의 확고한 경제적 독립이념이 대륙주의의 핵심인 제퍼슨주의를 형성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7) “미국 본토 식민지는 대영제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1750년에는 반세기 만에 500퍼센트나 성장했다. 유럽에서 가장 근대적인 경제를 자랑한 영국의 당시 성장률은 25퍼센트였다. 1700년 미국 본토의 생산량은 영국의 5%에 머물렀으나 1775년에는 5분의 2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역사상 최고의 성장률이었다. 모든 것이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영토 확장 속도는 10년마다 40퍼센트 또는 심지어 그 이상을 기록했다.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가구당 면적이 크다는 뜻으로 60에이커 이하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100에이커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대지주에 속했다. 남녀는 젊어서 결혼할 수 있었고, 40세까지 산 기혼여성은 평균 6~7명의 어린이를 낳았으며 그중 4~5명이 성년을 맞았다. 생활수준은 높았는데, 특히 식량사정이 좋았다. 남자는 한 해에 200파운드 이상의 고기를 먹었고 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덕분에 영국인과 비교해 2인치 이상이나 키가 컸다. 양질의 유제품도 섭취했다. 1750년 무렵 코네티컷의 전형적인 농장은 소 10마리, 양 16마리, 돼지 6마리, 일소 한 쌍을 소유했다. 한편 농장에서는 옥수수, 밀, 메귀리 등이 자랐는데, 수확의 5분의 2는 시장에 내다팔아 영국 수입품이나 점점 늘어나는 현지 일용품 구입에 썼다”(Johnson, 2016:159-160).

프셔와 펜실베이니아 정부는 몇 십년간 법정 세금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 미국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았던 이유 가운데 첫째는 사람들이 수입의 거의 전부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세금은 요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안되는 인두세, 무역상이 부담하는 수출관세, 또는 비교적 값비싼 수입품 가격에 붙는 수입 관세에 의존했다. 하지만 모두 액수는 크지 않았다.....어쨌든 1760년대까지 아메리카 본토 식민지 사람 대부분은 세금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아마 세계에서 이미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 제일 세금이 없는 사회에 가까웠을 것이다”(Johnson, 2016:179-180).

여기에서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이 식민지를 보호하여 대륙의 유럽 강대국들이 영국과의 일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식민지에 함부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었던 사실 또한 식민지 미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모든 사태를 한 순간에 변화시킨 국제적 사건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7년 전쟁(1756~1763년)이었다. 7년 전쟁은 프랑스가 유럽의 패권 장악을 시도하자 이에 맞서 영국을 위시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페인, 러시아 등이 연합하여 벌인 세력균형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쟁의 사후적 영향력은 식민지 미국에 게까지 미쳤다. 왜냐하면, 7년 전쟁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역사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7년 전쟁은 미국에서는 프렌치인디언 전쟁으로 불렸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모국인 영국 편을 들어 프랑스와의 전쟁에 가담했다. 토지측량 기사였던 워싱턴은 이 당시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영국군에 배속해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전쟁이 끝난 직후 발생했다.

지금까지 누려온 영국 식민지의 이점이 7년 전쟁이 끝난 뒤 식민지인들의 시민적 자유 및 자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무기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영국정부가 200년간 이어져온 식민지의 자치권을 철회하고 폭정으로 간주 할 수 있을 정도로 식민지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정부가 식민지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각종 과세입법을 새롭게 제정한 데에는 7년 전쟁시기의 전비조달로 인한 재정악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 세수부족 사태를 식민지 미국인들에 대한 과세로 메우려는 발상에서 영국의 폭정이 시작된 것이다.

7년 전쟁은 영국에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유럽 최강국 프랑스에 맞서 영국의 안정보장은 물론, 유럽 평화를 지켜냈지만, 엄청난 전비로 말미암아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영국의회와 식민지 미국의 법적 소유자였던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국가부채를 식민지인들에 대한 과세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76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역시 그 이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정부의 갑작스런 징세 결정에 분노했다. 7년 전쟁은 영국이 이전까지 치른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전비를 소요했다. 7년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영국의 채무는 6천만 파운드에 머물렀다. 그것이 7년 전쟁이 끝난 직후인 1764년에는 1억 3,300만 파운드로 배 이상 늘어 지불 이자가 거액으로 치솟았다. 영국 재무성은 영국인 1인당 18파운드의 공채를 가진 데 비해 식민지인의 부담 분은 불과 18실링이라고 계산했다. 영국인의 납세액은 1인당 평균 15실링이었으나, 식민지에서는 그것의 50분의 1인인 6펜스에 불과했다(Johnson, 2016:213-214).

설탕 법(1764년)을 필두로 인지세 법(1765년) 등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새로운 과세 결정은 미국인들의 저항을 초래했다. 미국인들은 전비 부채 충당을 위한 세금 징수에 있어 본국 시민들과의 차별 대우에 분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관계악화는 단순히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식민지 입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영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독립 전 펜실베이니아 식민지 의회 대표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미, 사고방식이나 정치체제에서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만큼이나 넓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랭클린이 ‘인지세 법’ 철폐를 위해 면담한 영국 왕의 총복이자 추밀원 의장이었던 그렌빌 백작은 다 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내뱉었다. “추밀원을 다스리는 국왕이 식민지 입법자요. 국왕의 지시가 바로 그곳의 법이요.” 프랭클린은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응수했다. 그에 따르면 “허가서에 따라 이해하기로는, 미국의 법은 각 식민지 의회에서 제정되어 국왕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데, 일단 왕의 재가를 받으면 국왕으로서도 폐지도 수정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 의회가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 영구적인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왕도 식민지의 동의 없이는 입법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그렌빌 경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고 단언했다”(Johnson, 2016:222-223).

두 세기 동안 자신들을 영국의 일원으로 간주해온 식민지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미국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과세 정책에 저항하자 영국의 폭정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급기야 식민지인들이 200년 가까이 누려온 자치와 시민적 자유를 철회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그런 의도로 제정된 대표 법안이 바로 ‘타운셴트 법(Townshend Acts)’이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할 법한 제국주의 정책을 연상케 하는 ‘선언법(Declaratory Acts)’은 1766년 영국 의회가 “사정이 어찌되었던 모든 경우에” 식민지를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 하원결의안에 기초했다(Middlekauff, 2017:155). 이 법안은 각종 칙허장에 근거해 식민지 주 의회가 제정한 기존 입법 조치를 영국 의회의 법안으로 철회 할 수 있는 주권적 결정을 담은 문서였다. 따라서 향후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영국의 각종 입법은 ‘선언법’에 기초했다. 보스턴 차(茶) 사건 당시, 과세와 정치적 대표권을 연계한, ‘대표없이 과세없다!(No Representative, No Tax!)’는 구호가 자연스레 나온 것도 바로 ‘선언법’의 효력정지를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독립이 혁명으로 전환 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라 하겠다.

선언법에 기초해서 영국의회는 식민지 수입물품에 관세를 매긴 타운센트 법(1767년)을 제정했다. 타운센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관련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첫째, 영국군대의 미국주둔을 규정한 숙영법을 준수하기로 동의할 때 까지 뉴욕식민지 의회의 기능을 정지한다. 둘째, 식민지는 납, 유리, 종이, 그림물감, 차 등의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를 물어야 한다. 셋째, 각 식민지 주에 본부를 둔 아메리카 관세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제안은 입법으로 구체화됐고, 타운센트 법이라는 이름하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식민지에 대한 영국 의회의 오랜 우월적 태도를 잘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인은 영국 의회에 예측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로 마련된 입법조치였다(Middlekauff, 2017:199).

타운센트 법 제정은 식민지들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보스턴 항구에서 하역 중이던 동인도 회사 소유의 차(茶)를 바다에 내던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이었다. 이것은 식민지 사람들이 저항한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왕과 의회는 1774년 더욱 더 강력한 식민지 통제법을 시행했다. 식민지통제법은 영국의회가 제정한 보스턴 항구법, 매사추세츠 통치법, 정의와 불편부당한 시행법으로 이름 부쳐진 재판권 법, 숙영법, 퀘백법 등 다섯 가지 법안으로 이뤄졌다.

영국의회가 새롭게 제정한 위 법안은 식민지인들의 자치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주된 목적이었다. 미국인들은 이를 한데 묶어 ‘참을 수 없는 법’(Intolerable Acts 또는 Coercive Acts, 1774년)로 명명했다. 이 법안들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보스턴 항구법에 따라 1774년 6월 15일, 보스턴 차 사건으로 손상된 차를 배상할 때 까지 보스턴 시의 모든 해상무역이 중지됐고 식민지 최대 항구였던 보스턴이 폐쇄됐다.

보스턴 차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지 3세는 식민지를 굴복시킬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노스 총리는 그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몇 주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역내세와 역외세, 세입의 목적을 위한 세금과

무역 규제를 위한 세금, 대표와 과세 등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국정부가 식민지에 권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지만을 논의할 것이다”(Middlekauff, 2017:294).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각종 악법 및 과세정책에 대한 저항과 함께 미국인들의 대영 감정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사건이 영국 육군의 보스턴 파병 조치였다. 영국 육군의 파병은 영국 군대가 민간가옥에 숙영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민간인은 주거와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新)숙영법에 기초했다. 이 결정을 미국인들은 자치권 및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통치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영국 육군의 식민지 주둔에 대한 나쁜 기억은 독립 후에도 시민의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상비군에 대한 혐오 등 미국인들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폭발한 미국인들의 저항은 급기야 13개 식민지 자치주들의 연합항쟁으로 확산일로를 걷게 됐다. 식민지 자치주가 연합하여 영국정부의 폭정에 저항하는 사태는 대륙회의의 개최에 함께 독립선언 및 연합헌장 채택으로 식민지의 독립을 기정사실화 하는 형국으로 발전했다. 8년에 걸친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782년 파리강화조약 체결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하여 조만간 북미 대륙 전체를 아우를 연방공화국으로의 첫발을 뒀다.

1차 대륙회의를 개최할 때 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영국으로부터의 완전 독립과 새로운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1차 대륙회의 결정은 과거 영국 국왕의 칙허장에 근거한 식민지들의 자치와 자유를 새롭게 보장하는 청원이 주종을 이뤘다. 하지만 식민지 자치권을 철회하고 직접 통치를 목표로 하는 영국정부의 폭력적인 억압 일변도의 대응이 식민지인들의 대영감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그래서 2차 대륙회의에서는 독립선언을 채택하여 대륙국가로의 발전을 천명하는 완전분리로 혁명의 발전 경로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영국정부가 식민지에 대한 유화책을 거부하고 강경노선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의 전개만은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영국의 억압정책에 저항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이미 보스턴 차 사건을 경과하며 새로운 정치적 사유를 시작한 능동적 시민주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바로 ‘대표없이 과세없다!(No Representative, No Tax!)’는 구호의 채택이다.

미국인들의 정치의식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구호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으며, 이전까지 자신들이 향유했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새롭게 제기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독립전쟁을 경과하며 그 구호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사유방식 자체가 급격히 전환했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구호 저변에는 독립을 경과하며 향후 미국에서 전개될 주요한 정치 논쟁의 대강이 함축되어 있다. 독립전쟁과 연방헌법 제정이라는 주요 정치적 사건과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될 치열한 논쟁 및 숙의과정을 통해 미국인들의 집단기억이 형성되며, 이러한 집단기억이 미국만의 독특한 외교개념 탄생과 대외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Ⅲ.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의 탄생: 불간섭, 중립, 비동맹 외교 노선

영국의 폭정에 대한 저항은 독립전쟁이 됐고, 독립전쟁은 혁명이 됐다.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독립과 혁명의 연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보스턴 차(茶)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보스턴 차 사건과 함께 식민지에서 새로운 정치적 사유가 진전되고 있음을 영국 정부는 간과했다. 미국인들의 대영항쟁과 독립의지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적 사유의 등장이었다.

1. 토머스 페인의 『상식』에 드러난 독립과 미국혁명

독립을 단언하고 나선 미국은 스스로를 새로운 유형의 세력으로 설정했다. 1787년 출간된 『연방주의자 교서(The Federalist Papers)』 첫 번째 논문에서 해밀턴은, 신생공화국 미국을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사회가 성찰과 선택에 의해서 좋은 정부를 설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연과 무력에 의존해 정치체제를 만드는 게 인류의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 여부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이 나라 사람들의 행동과 모범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왔다”(Madison, Hamilton and Jay, 1961:33).

해밀턴은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익히 알려진 ‘상식’의 문제로 다루었다. 바로 그 ‘상식’을 체계적으로 처음 주창한 인물이 바로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이다. 페인의 『상식』이 미국의 독립전쟁과 건국과정에 미친 사상적

영향은 지대했다. 미국에서 독립은 혁명, 곧 자치 및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표체계를 건설하는 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식』은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의 형성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혁명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페인은 원래 영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1737년 영국 노퍽 주 셰퍼드에서 퀘이커 교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다가 서른일곱이 되던 해인 1774년 벤저민 프랭클린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지 2년만인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의 기폭제가 된 『상식』을 발간한 걸 감안하면 영국정부의 압제와는 별개로 영국인과 식민지인들의 문화·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알 수 있다.

50쪽 남짓의 『상식』은 출간 2주 만에 1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1776년 한 해만도 15만부가 판매됐으니 그 명성이 자자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대륙회의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 장군 역시 『상식』이 출간된 지 20일 후인 1776년 1월 31일, 그 글을 탐독하고서 찬성의사를 밝혔다(Johnson, 2016:247). 페인은 두 세기가량 유지되던 영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와 믿음을 몰상식으로 규탄했고, 반면 이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이던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곧 독립을 상식으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사유의 혁명을 달성했다. 페인은 1774년 1차 대륙회의 개최 이후, 독립할 것인가 식민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 반반으로 갈린 미국 내 여론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페인은 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다.

페인은 미국 혁명의 특성상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곧 대외인식과 국가건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논증했다. 페인은, 조지3세에게 보낸 대륙회의의 청원서에 잘 나와 있듯이 ‘고약한 영국의회와 선량한 국왕’이라는 구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기존 상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오래된 영국의 헌정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의 이해는 영국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에 의해 보호받아 왔다고 확신했다. 페인은 그런 확신을 “환상”으로 일축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영국의 헌정체제는 영광스런 문화의 소산이 아니며, “낡은 전제 정치의 비천한 유산인 군주제와 귀족제에 새로운 공화제적 요소와 혼합되어 있는”(Paine, 1995:8) 괴이한 정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정체가 서로 견제하는 세 권력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으며, 그런 말은 전혀 무의미하거나 터무니없는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Paine, 1995:8).

대륙회의에 참여한 주 대표들은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영국 왕과 군주제에 대한 공격만큼은 자제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군주제가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왕이 비양심적인 내각과 후안무치한 의회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다고 믿었다. 페인은 이런 주장을 ‘헛소리’로 경멸했다. 그는 군주제를 “악마가 우상숭배를 위해 세상에 세워 놓은 발명품 중 가장 변창한 제도”(Paine, 1995:11)이며, 왕위세습제 역시 자연에 위배되는 관습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페인은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유대민족의 군주제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군주제를 “교황제 정부(the Popery of government)”(Paine, 1995:15)로 결론지었다.

“우리는 군주제라는 악폐에다 세습이라는 악폐를 더했다. 군주제가 우리 자신의 격하와 왜소화를 의미한다면, 세습은 그것이 권리로 주장될 경우 후손에 대한 모욕이지 기만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원래 평등하므로 누구나 출생에 의해 자기 가문을 다른 가문보다 영구히 우월한 지위에 둘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자연은 세습을 승인하지 않는다. 만약 승인한다면 자연이 사자대신 노새를 인류에게 보내 것처럼 자주 왕위계승권을 웃음거리로 만들지는 않았으리라”(Paine, 1995:15).

페인의 『상식』은 미국과 영국이 1763년, 곧 영국군 소속으로 프랑스의 대륙침공에 맞서 함께 싸웠던 프랜치인디언 전쟁 이전의 관계로 돌아 갈 수 없다는 점을 각성시켰다. 페인의 주장대로라면, 식민지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영국 왕도 의회도 영국 국민도 예전의 제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식민지를 노예화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인데, 페인에 따르면, 기존의 영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규율하던 영국의 헌정질서 또는 군주제 그 자체가 음모이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에게는 독립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독립을 선언해야 했다. 독립은 ‘상식’이 되었고, 페인은 이것을 역사 속의 위대한 단절로 이해했다. 미국 예외주의의 원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노아의 방주 이후 지금까지 없었다.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 우리 눈앞에 있다”(Paine, 1995:53).

페인은 독립된 아메리카를 “새로 글을 쓸 수 있는 하얀 종이”에 비유했다. 그는 “아메리카가 하느님을 제외하고 두려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음으로써 “세속의 갈등에서 멀리 떨어진 아메리카는 그 땅을 둘러싼 바다와 그 내륙에 풍부한 개척지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Middlekauff, 2017:404)”고 확신했다. 페인

은 대외인식과 관련해서도 기존 상식을 뒤집었다.

“독립만이 우리를 단결하게 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독립을 이뤄야 우리의 목표를 보게 되고, 음험한 음모와 잔인한 적에게 합법적으로 등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적절한 발판을 던고서 영국과 상대할 수 있다”(Paine, 1995:53).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한다면 영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 식민지에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의 추론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의 전쟁이 영국과 식민지 13개주 연합에 의해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아메리카는 과거에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과 싸웠지만,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에게 과거와 같은 영국과 식민지의 연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Paine, 1995:48-49). 특히, 영국에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프랑스는 크게 안도할 것이다. 대륙회의 대표들은 프랑스로부터 군자금과 무기를 들여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실제로도 대륙회의는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 등을 협상 대표로 파견하여 1778년 프랑스와 통상조약 및 동맹조약을 성사시켰다.⁸⁾

『상식』의 핵심 주제는 식민지는 왜 독립해야하는가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떻게 독립을 완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것은 공화정의 관건인 새로운 대표체계의 건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페인은 “독립이 두려운 참된 이유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계획의 성패가 독립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역설했다.

“영국이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든 법률에 우리 스스로 복종해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아메리카에서 필요한 법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노예가 된다.....우리의 번영을 질투하는 권력이 과연 우리를 지배하기에 적당한 권력인가? 이 물음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독립주의자’이다. 왜냐하면 ‘독립’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대륙에 현재의 적이자 미래의 적일 수 있는 영국 왕이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Paine, 1995:29).

8) 독립전쟁 및 건국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페인의 사상적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봉중(2007) 참조.

스스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 독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페인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우리는 차후 미국의 독립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차 미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첫 번째는 대륙회의를 통한 인민의 합법적인 의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군사력에 의해, 마지막은 폭도의 위력에 의해서다.”

페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첫 번째 경로가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경로이다.

“우리 군대가 언제나 시민으로 구성되며, 대중이 이성적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덕성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니다. 독립이 첫 번째 방식에 의해 일어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헌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을 갖게 된다.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세계를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진다”(Paine, 1995:52-53).

페인은 새롭게 제정할 헌법의 핵심을 “대규모의 평등한 대표체(large and equal representation)의 건설”로 요약한다. “그것보다 더 정치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치적 문제는 없다. 유권자와 대의원의 수가 적으면 위험하다. 대의원 수가 적고 불평등할 경우 위험은 배가된다”(Paine, 1995:42). 그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지닌 정치적 대표체계의 형성을 혁명의 완성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입법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가 인정하는 군주제가 있다면, 아메리카에서는 ‘법이 왕’인 군주제다. 왜냐하면 절대국가에서는 왕이 곧 법이듯이, 자유국가에서는 법이 반드시 왕이어야 하지 다른 것이 왕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관이 앞으로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식을 마치면 그 왕관을 깨뜨려 인민들 사이에 뿌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인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Paine, 1995:34).

페인은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새로운 정치체, 곧 정부 건설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독립전쟁을 “어느 민족에게든 단 한번 나타나는 시기, 즉 하나의 정부로 자신을 형성하는 특별한 시기”로 규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족이 이런 기회를 흘려보냈기에 스스로 법을 만드는 대신 정복자가 만든 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약이나 헌장을 먼저 작성한 다음 그것을 집행할 사람에게 위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먼저 세운 다음 정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인은 “올바른 방향에서 정부를 시작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오류에서 지혜를 배우고, 현재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자”(Paine, 1995:43)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미국혁명의 대의: 『독립선언』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에도 독립과 혁명을 한 데 연결한 페인의 『상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독립선언』은 독립과 자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국 건설을 위해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한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여기서도 키워드는 역시 독립과 대표이다.

『독립선언』은 영국 왕을 폭정(absolute Tyranny)을 행한 압제자(tyrant)로 규탄하면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 할 수밖에 없는 열여덟 가지 근거와 영국의회가 제정한 아홉 개의 악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여기서 열여덟 개 근거의 대부분이 식민지 의회의 입법권과 자치권, 곧 식민지 고유의 대의제도를 붕괴시킨 영국정부의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앞의 다섯 개 근거는 모두 식민지 자치권 및 대표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영국의회가 제정한 식민지 관련 입법 역시 선언법 등 식민지 의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그 권한을 영국정부에 귀속시킨 조치에 해당한다.⁹⁾ 자치, 곧 식민지 대표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왕이 저지른 압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영국 국왕-자주]는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고 필수적인 법률들을 승인하지 않았다.

He has refused his Assent to Laws, the most wholesome and necessary for the public good.

9) 『독립선언』은 ‘선언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고유한 식민지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우리와 관련된 법 제정을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선언하는 법. For suspending our own Legislatures, and declaring themselves invested with Power to legislate for us in all cases whatsoever.” 이 글에서 인용할 『독립선언』 본문으로는 <https://kr.usembassy.gov/education-culture/infopedia-usa/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democracy/declaration-independence-1776/> 참조.

그는 긴급하고 절실한 법안 통과를 식민지 총독들을 통해 금지했으며, 자기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됐을 때조차, 해당 사안에 관한 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He has forbidden his Governors to pass Laws of immediate and pressing importance, unless suspended in their operation till his Assent should be obtained; and when so suspended, he has utterly neglected to attend to them..

그는 주 의원들이 입법부에서의 대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역 대표자들을 수용할 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부했다. 대표권은 폭군에게나 성가실 뿐 대표자들에게는 비할 데 없이 소중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He has refused to pass other Laws for the accommodation of large districts of people, unless those people would relinquis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a right inestimable to them and formidable to tyrants only.

그는 의원들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록보관소에서 멀리 떨어진 생소하고 불편한 장소에서 의회를 소집했다. He has called together legislative bodies at places unusual, uncomfortable and distant from the depository of their public Records, for the sole purpose of fatigu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his measures.

그가 자행하는 시민권 침해를 용감하고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식민지 의회를 해산했다.

He has dissolved Representative Houses repeatedly, for opposing with manly firmness of his invas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의회 해산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의원 선출을 거부했다. 선출을 통해서만 결코 폐지할 수 없는 입법권을 의원들에게 부여하여 여하히 행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의회 정부가 부재한 기간 동안 그 주는 외부 침략과 내부 소요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He has refused for a long time, after such dissolutions, to cause others to be elected, whereby the Legislative Powers, incapable of Annihilation, have returned to the People at large for their exercise; the State remaining in the mean time exposed to all the dangers of invasion from without, and convulsions within.”

결국, 『독립선언』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정부를 구성하는 목적과 그것의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독립선언』은 인간사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방해될 때에는 그것을 개혁하거나 타파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여,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원칙 위에 정부의 토대를 세우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권력을 조직하는 일은 바로 시민의 권리”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정부의 권력이 시민의 동의로부터 발생한다는 미국 독립선언의 발상은 ‘정당성’의 문제를 이후 전개될 모든 근대 정치논쟁의 한 가운데 자리 잡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식민지 모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독립의 근거를 정당성을 지닌 정부 구성에서 발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국가의 대외적 행위를 의미하는 외교 역시 국내 정치, 곧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시대 유럽의 외교문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¹⁰⁾

시민적 동의라는 정부구성원칙은 실제 현실에서는 대의제로 구현된다. 결국 미국의 독립과 혁명과정에서 제기한 시민적 동의의 원리는 헌법제정을 통한 새로운 대표체계의 형성으로 압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의제를 놓고 격렬한 파열음을 내며 갈등을 분열을 표출

10)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국내정치 및 여론이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특유의 외교문법은 미국외교정책의 특징을 조약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도덕주의와 법률주의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케난은 ‘도덕주의’와 ‘법률주의’가 미국이 국가이익과 세력균형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방해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저는 우리가 과거의 정책수립에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잘못은 제가 말하는 이른바 국제문제에 관한 법률주의·도덕주의적 접근법에 있다고 봅니다.....이 접근법은 법의 지배와 제약으로 이루어진 모종의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간 영역에서 각국 정부의 혼란스럽고 위험한 열망을 억제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이 믿음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정치체제의 기원에 관한 기억에서 유래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제도적, 사법적 틀을 받아들임으로써 처음의 13개 식민지 사이에 존재한 이익과 열망의 충돌을 무해한 차원으로 줄이고, 서로에 대해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묶을 수 있었다는 기억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13개 식민지가 이룰 수 있었던 결과를 더 넓은 국가 간 영역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Kennan, 2012:102).

한다. 하지만,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것이 민주적 대의제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3. 미국 헌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외교 개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구호에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만이 과세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구호는 미국인들이 식민지 시절부터 과세문제를 시민적 자유의 척도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독립과 혁명을 총괄하는 헌법제정 과정은 결국 새로운 대표제 창설로 요약 가능하다.¹¹⁾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은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¹²⁾

1)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대표하는가의 문제부터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식민지 시기, 미국인들을 대표할 권한은 명목상으로는 영국의회에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주 의회가 미국인들을 대표했다. 이러한 대표권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 왕이 반포한 칙허장에 근거했다. 따라서 과세 문제 등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민감한 사안 역시 주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했다. 이러한 입법권한에 대해 영국 왕은 거부할 권한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영국 의회가 설탕세, 인지세, 차 세 등 새로운 과세정책을 시작으로 주 의회를 무시한 채 식민지 미국인들을 직접 통치할 의도로 선언법을 통과시키자, 이제 쟁점은 단순한 과세권이 아닌 대표권과 정치체제, 곧 주권의 소재를 따지는 정당성의 문제로 일이 커지게 된 것이다.

선언법에 근거한 식민지에 새로운 과세조치를 계기로 식민지인들은 대표의 주체 및 객체, 곧 주권의 소재지와 이를 위임받은 정치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심도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전쟁과 헌법제정기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인들을 대표할 주권적 조직체는 영국 왕이나 영국의회가 아니라 식민지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 의회 정부 및 입법, 행정, 사법부를 포괄하는 연방정부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시민적 위임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대표성

11)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설』 제10편에서 ‘연방헌법’의 핵심이 새로운 대표체계 창설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제간의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점은 첫째, 공화제의 경우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Hamilton, Madison & Jay 1961:82).

12) 헌법제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는 로시터(Rossiter, 1966) 참조.

은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곧 외교정책 전반에 미친다는 외교개념 및 대외인식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누가 대표할 것인가는 결국 그 핵심에 있어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제정을 통한 새로운 대표제 창설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유민(free people)을 대표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쟁점은 누가 독립적 자유민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독립 전쟁의 특성을 따져 봤을 때, 기존 유럽 국가들의 전쟁과는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상비군 대 상비군, 곧 정규군의 전투였던 반면, 미국 독립 전쟁은 영국 상비군 대 식민지 민병대, 곧 시민군의 싸움이였다. 독립전쟁에 참여한 미국 시민들이 바로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새롭게 건설할 연방 정부는 바로 이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 전쟁과 헌법제정을 경과하면서 식민지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식민지 시절에는 하나의 정부 아래 결속된 미국인들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13개 식민지에는 주 의회를 중심으로 주 정부가 존재했지만, 주 지사는 영국 국왕이 임명했으며, 주 의회는 식민지 주민에 의해 선출됐다. 13개 주 사이의 결속과 집단적 정체성이 부재했으며, 오히려 영국 정부와 개별 주 간의 친밀성이 식민지 주들 사이의 친밀성보다 더 강력했다. 대륙회의의 개최를 통해 처음으로 미합중국 인민, 곧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했다. 여기서의 쟁점은 그렇다면 누가 미국인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자유민으로서의 미국인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독립 당시 미국인 주류의 사회경제적 구성은 백인 남성, 자유농, 노예주 그리고 식민지 시절 영국 이민자 출신의 프로테스탄트가 주종을 이뤘다. 이들 대부분은 독립전쟁에서 영국 군대에 맞서 싸운 민병대 출신이었다. 따라서 참정권에는 두 가지 자격요건이 필수적이였다. 하나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참정권 자격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1790년에는 남성 납세자에 대해 대부분의 주가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선거인 자격을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간 해당 주에 거주한 시민에게 부여했다.¹³⁾

13) “이것은 유럽인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조상 대대로 천 년 동안이나 그 땅에 살았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선거권이 일절 주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빈털터리로 이주해 뉴욕에서 배를 내려 허드슨 강을 따라 뉴저지로 가면, 그다음 해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 5년 이내에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었다. 뉴저지는 특히 자유롭고 관대했다. 1776년 이후 1년간 거주하고 50파운드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얻었고 여성 또한 같은 자격만 갖추면 투표가 허락되었다(1809년까지). 결국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전의 재산자격이 별 의미 없어지자, 노스캐롤라이나와 뉴햄프셔 같은 주는 인두세와 납세자 자격에 따라 남성에게 사실상 보통 선거권에 가까운 제도를 적용했다. 1783년에는 모든 주가 유권자 수가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증가했고, 거의 모든 주가 100퍼센트를 향해 점차 상승했다”(Johnson, 2016:319).

미국 헌법은 자유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제도화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free people)’을 ‘자유로운 백인남성(free white men)’과 등치시켰다. 연방헌법과 주 헌법 모두 시민권 대상을 백인에 한정했다. 자유민이라도 흑인이나 부족 단위의 인디언은 암묵적으로 배제되어 외국에 귀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백인 여성은 참정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시민으로 인정됐다. 여성참정권은 1920년에 돼서야 처음으로 실현됐다. 흑인에게 참정권을 명시하지 않은 시민권이 주어진 것은 1868년 노예해방 이후의 일이며, 인디언에게는 1924년까지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노예제는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인종주의는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상당한 모순을 노정했다. 노예는 참정권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에 반해 노예주는 각종 선거에서 노예를 대신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¹⁴⁾

건국시조들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았지만,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노예제 문제를 헌법 논쟁의 한 가운데로 불러낼 경우, 식민지 주가 연합한 새로운 국가건설이 실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노예제의 존속이 기왕의 미국인들의 인종적 사고를 한층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¹⁵⁾

미국인들의 인종적 사고의 구조에는 앵글로 색슨 계열의 미국인과 영국인들이 특이한 자질과 공통의 이해에 의해서 결합된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이 중심 위치를 점했다. 19세기 전반기에 몇몇 영향력 있는 대서양을 가로지른 영어공동체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양 민족의 우세한 인종적 특징은 그들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근면함과 지성, 도덕성 및 통치를 위한 자질을 포함했다(Horsman, 1981:12).

2)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

헌법 제정 당시,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는 비교적 용이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았음이 현실에서

14) 수정헌법이전 미국 연방헌법 제3항은 5명의 노예를 3명의 자유민으로 산정해서 노예주들에게 차등적 투표권을 부여했다.

15) 헌트(Hunt, 1994:13-14)에 의하면, 인종적 사고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전통으로 다음 세대에까지 전승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인종을 다른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범주이자 그들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기초로 삼았다. 미국에서의 민권 운동이 점점 명백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시킨 반면에 정책입안자들은 다른 민족을 인종적 서열의 관점에서 파악하던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각국의 민족에 대해 과거의 평가와 놀랍게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 위계서열을 유지하고 있다.”

입증됐다. 특히, 시민적 자유와 관련하여 연방파와 공화파 사이에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커다란 이견이 발생했다. 헌법 제정을 주도한 연방파는 시민적 자유를 주로 경제, 곧 상업적 자유와 관련지어 해석했다.

이에 반해 공화파는 영국의 폭정에 저항하여 미국이 독립한 근거에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의 보존이라는 대의가 놓여 있다고 간주했다. 요컨대, 연방헌법 제정과 건국을 독립선언의 연장선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 문제는 헌법 기준을 놓고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가 대립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열거한, ‘권리장전’으로 명명된 10개의 수정 헌법 제정으로 양 정파가 타협에 이르렀다.

헌법에 의거해서 연방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격심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외교정책이 갈등의 주된 소재였다. 워싱턴 행정부 하에서 신생공화국의 외교정책을 놓고 연방파와 공화파라는 두 개의 정파가 대립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정책의 갈등을 넘어 신생국 미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물론, 향후 미국의 발전노선과 긴밀히 연관된 문제였다.

미국의 걸어갈 발전노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민적 자유의 증진이라는 견지에서 틀 지워진 민족적 위대성의 추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그들 자신들을 역사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실험을 행하는 사람들로 간주했다. 애국자이자 격문 필자로 토머스 페인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초기에 미국인들은 “다시 세계를 시작할 힘(power to begin the world over again)”(Paine, 1995:8)을 가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 민족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기중심적 인식은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출발점인 1790년대에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 사이의 치열하고 광범위한 투쟁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연방파의 대외인식을 대표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연방주의적 외교정책의 수립자인 해밀턴은 세계에서 미국의 국력 증진과 자유를 위한 국력행사를 강조하면서 국가적 위대성을 추구하는 행동주의자의 비전을 분명히 말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워싱턴 행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그는, 미국을 무엇보다 해외에서의 상업적 자유의 활발한 추구 자체를 선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내 경제성장과 시민적 자유에 대한 촉진제로서 생각하며 헌신하는 역동적인 공화국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시각으로 무장한 해밀턴주의자들은 강력한 연방정부를 건설하고, 해외에서 미국 국력의 행사를 실행하였는데, 그 범위와 규모는 미국의 부와 권력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됐다.

공화파의 대외인식을 대표한 인물은 『독립선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제퍼슨은 워싱턴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이었는데, 외교정책을 놓고 워싱턴 대

통령과 대립했다. 제퍼슨은 해밀턴주의자들의 외교노선을 비판했다. 그 이유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의 정책노선이 국민복지의 증진과 민주주의 완성과 보호라는 미국 건국의 일차적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국주의적 야심과 제국주의 정책의 수행은 공화주의적 이상과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했고, 세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을 파괴적인 환상으로 간주하여 거부했다. 한마디로, 제퍼슨과 그의 동료 공화주의자들이 주창한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었다(Hunt, 1994:18-19).

3)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외교정책을 책임질 핵심기관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은 의회, 특히 그 가운데 상원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권력분립 원칙에 의거해서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헌법제정의 원리 상, 외교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은 일상적인 일로 여겨졌다. 여기에다가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여론의 영향력은 정책의 내용 자체를 바꾸게 할 정도로 지대했다. 이로부터 유럽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외교문법이 만들어졌다.

미국이 새로운 국제정치문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데는 정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뚜렷이 분산한 대표체계 및 여론의 향배에 따른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미국 특유의 정치과정에 기인했다. 외국인들, 심지어 대의정치가 가장 발달한 영국인들에게조차 이 광경은 대단히 낯설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쳐졌다.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권력분립과 아울러 견제와 균형의 체제, 즉 외교적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권 행사에 대한 복잡한 법적, 제도적 제한이었다. 미국의 대표체계는 폭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제도개혁이 어렵도록 설계됐고, 이로부터 대통령의 지배력 또한 상당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Clifford, 1994:21).

연방헌법은 의회에게는 전쟁선포권과 육군 및 해군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대통령에게는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사령관의 지위와 재적 상원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관에게 책임을 골고루 분배시킴과 동시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외교적 대표성을 부여했다. 워싱턴이 1795년, 제이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영국과 주고받은 서신을 공개하라는 하원의 요구를 거부한 이래, 외교정책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으며 때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였다.¹⁶⁾

삼권분립에 의한 의회와 대통령의 일상적 갈등과 관련하여 역사학자 코윈(Corwin, 1957:171)은 미국헌법을 “투쟁으로의 초대”로 정의했다.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월슨의 국제연맹 역시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투쟁으로의 초대’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상원은 월슨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연맹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미국 특유의 정치과정의 산물로 해석됐다. 브랜다이스 판사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외교적 권한을 배분한 목적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권력의 분배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통해 독재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Clifford, 1994:23). 역설적이게도, 여론과 선거를 중시하는 민주적 정책결정과정 덕에 미국은 단기간에 세계적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연방헌법의 핵심 쟁점인 대표체계 문제를 경과하면서 한 세기 이후에 본격화 될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현실주의와 월슨의 이상주의적 국제주의 사이의 경쟁과 갈등의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 행정부 내에서 외교정책을 놓고 펼쳐진 연방파와 공화파 사이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정도는 아니었다. 독립과 건국을 통해 마련된 미국 민족주의의 핵심인 대륙주의 전통과 이에 근거한 연방확대, 중립, 비동맹 원칙 및 자유무역 이념이 미국의 근본 이익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가 일치했다.¹⁷⁾ 따라서 연방파와 공화파 모두 북미 대륙에서 미국의 팽창과 교역확대, 시민적 자유의 보존을 위해 연방정부가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러한 모종의 컨센서스야말로 공화파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는 연방주의 외교노선을 일정 정도 수용하여 루이지애나 매입¹⁸⁾ 등 미국의 대내 팽창에 가장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 역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6) 당시, 공화파가 다수를 차지했던 하원은 제이조약을 철회시키기 위해 워싱턴 대통령에게 영국에게 보낸 제이조약 관련 부속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워싱턴 대통령은 헌법 상 조약비준 권한은 행정부와 상원에 속한 것이기에 하원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로 일축했다. 제이조약 비준을 둘러싼 연방파와 공화파의 갈등에 대해서는 콤브(Combs, 1970) 참조.

17) 1787년, 대륙회의가 제정한 서북영토조례(Northwest Ordinance)는 대륙주의를 확인한 문서이며, ‘1789년 컨센서스(Consensus of 1789)’는 중립원칙과 자유무역 이념을 매개로 연방파와 공화파 간의 초당적 합의가 가능했음을 잘 보여준다. 서북영토조례(Northwest Ordinance)는 오하이오 강 북쪽의 서부지역에 대한 조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연방에 편입되기 이전의 서부영토는 연합의회가 지명한 지사, 서기 및 3명의 판사가 통치한다. 2) 각 영토 내에 성인자유인 남자가 5000명이 되면 양원제 의회를 설치한다. 3) 궁극적으로 서북지역에 3~5개의 주가 생기도록 한다. 각 주가 연방에 편입되려면 자유민의 수가 6만 명이 되어야 한다. 4) 연방에 새로 편입되는 주들은 기존의 13개주와 모든 측면에서 동등하다(권용립, 2010:146)

18) 제퍼슨의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 결정은 미국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결정이었다.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은 미시시피 강 접근권을 확보하여 서북루트를 통해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토대를 마련했고, 프랑스를 미국 본토에서 철수시켰으며, 훗날 영국과의 1812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루이지애나 매입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존슨(Johnson, 2016:396-401) 참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은 독립 전쟁과 헌법 제정 과정을 경과하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라는 대표제 창설의 문제로 표출됐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긴밀히 연계된 미국 특유의 대외정책 문법인 ‘예외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문제에 연루되기보다는 국내발전과 연방확대에 집중하는 ‘대륙주의(Continentalism)’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을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문서가 바로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연설이다.

4. 워싱턴의 ‘고별연설(Farewell Address)’에 나타난 외교 개념: 중립, 비동맹, 상업적 자유

워싱턴의 고별연설은 미국의 외교개념과 대외인식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다.¹⁹⁾ 워싱턴은 독립과 혁명의 대의²⁰⁾에 관해 언급하면서, 연방정부의 존속이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함께 국내평화에 대한 외국간섭을 방어해 낼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²¹⁾ 워싱턴이 추구한 외교노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페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예외주의적 특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19) 길버트(Gilbert, 1970:69)는 워싱턴의 ‘고별연설’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상적 기원을 분석하는 가운데, 해당 ‘연설을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던 정치적 개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구성한 것이며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드러내 준 문서로 평가한다.

20) “여러분의 국민자격을 나타내는 미국인이란 호칭은 언제나 지방의 차이에 기인하는 어떠한 명칭보다도 더 의로운 애국적 긍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여러분은 동일한 종교와 예절과 관습과 정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통의 대의 하에 함께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독립과 자유는 공동의 평의회와 공동의 노력, 공통된 위험과 고난에 맞선 성공의 소산입니다. The name of american, which belongs to you, in your national capacity, must always exalt the just pride of Patriotism, more than any appellation derived from local discriminations. With slight shades of difference, you have the same religion, manners, habits, and political principles. You have in a common cause fought and triumphed together; the Independence and Liberty you possess are the work of joint counsels, and joint efforts, of common dangers, sufferings, and successes.” 워싱턴의 ‘고별연설’ 본문으로는 <https://kr.usembassy.gov/education-culture/infopedia-usa/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democracy/george-washington-farewell-address-1796/> 참조.

21) “우리나라 같이 광대한 국가에서 공동관심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완전한 확보에 적합할 만큼 활력에 찬 정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이 적절하게 분산되고 조정되어 있는 그 같은 정부에서 자유 그 자체는 그 정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호자가 됩니다. Remember, especially, tha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ur common interests, in a country so extensive as ours, a government of as much vigor as is consistent with the perfect security of liberty is indispensable. Liberty itself will find in such a government, with powers properly distributed and adjusted, its surest guardian.”

“유럽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아주 먼 관계에 있습니다. 유럽의 잦은 논쟁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유럽 국가들의 변덕스러운 정치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적과 부자연스럽게 연루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유럽과 분리되고 멀리 떨어진 상황은 우리가 유럽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도록 하며, 그 길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urope has a set of primary interests, which to us have none, or a very remote relation. Hence she must be engaged in frequent controversies, the causes of which are essentially foreign to our concerns. Hence, therefore, it must be unwise in us to implicate ourselves, by artificial ties, in the ordinary vicissitudes of her politics, or the ordinary combinations and collisions of her friendships or enmities. Our detached and distant situation invites and enables us to pursue a different course.”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과 예외적 특성은, 미국인들이 효과적인 연방정부 아래 하나의 국민으로 단결할 수 있다면, 영국 등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할 여지를 그만큼 차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 아래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 존속하는 한, 외세가 우리한테 끼치는 성가신 물질적 손해를 물리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조건에서만, 우리가 결정한 중립이 언제나 신중하게 존중받게끔 만들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아무 것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교전국들은 우리를 쉽게 도발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의가 인도하는 우리 이익이 명하는 바에 따라 전쟁과 평화를 우리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If we remain one people, under an efficient government, the period is not far off, when we may defy material injury from external annoyance; when we may take such an attitude as will cause the neutrality, we may at any time resolve upon, to be scrupulously respected; when belligerent nations, under the impossibility of making acquisitions upon us, will not lightly hazard the giving us provocation; when we may choose peace or war, as our interest, guided by justice, shall counsel.”

워싱턴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1796년, 유럽은 전란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다. 워싱턴은 유럽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지혜를 강조했다. 유럽전역을 휩쓴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게 동맹을 요구받았지만 신생 미국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비동맹, 중립 노선을 힘겹게 지켜냈다.²²⁾

워싱턴은 동맹을 무조건 반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평시에 적절한 군비로 만반의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비상사태에는 일시적 동맹에 안전하게 의지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²³⁾ 하지만, 일반 적으로는 모든 나라와 가능한 한 상호적인 전방위 외교를 추구하고 특정 국가를 적대하거나 항구적 동맹을 체결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²⁴⁾

22) 당시 워싱턴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노선을 놓고 해밀턴, 제이, 애덤스 등 친영국 연방파와 제퍼슨과 매디슨의 친프랑스 공화파로 대립했다. 워싱턴은 중간적 입장을 취했지만 큰 틀에서는 프랑스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 1778년 체결한 동맹조약에 프랑스가 동의하지 않는 한 조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상 영구동맹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주네 주미 프랑스 공사를 통해 유럽 혁명전쟁에 미국이 참전할 것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워싱턴 행정부는 영국과 통상을 재개하며 항행의 자유를 골자로 하는 제이조약(Jay Treaty of 1794)을 체결하는 등 중립을 천명하며 프랑스와의 동맹조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미국의 중립노선은 영국과 프랑스 양쪽의 압력을 견뎌내며 외교적 줄타기와 같이 험난하기 그지없는 과정이었다. 이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워싱턴은 고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세의 음흉한 농간에 대항하는 자유민의 빈틈없는 경계심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경험은 외세가 공화정치의 가장 유해한 적 중의 하나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틈없는 경계심도 쓸모 있는 것이 되자면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피해야 할 바로 그 외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어느 한 외국에 대한 과도한 편애와 다른 어느 외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는 오직 그 전자의 위험만을 보게 하고, 후자에 대한 압력의 술책을 은폐하고 옹호하는 구실을 주게 됩니다. Against the insidious wiles of foreign influence, the jealousy of a free people ought to be constantly awake; since history and experience prove, that foreign influence is one of the most baneful foes of Republican Government. But that jealousy, to be useful, must be impartial; else it becomes the instrument of the very influence to be avoided, instead of a defence against it. Excessive partiality for one foreign nation, and excessive dislike of another, cause those whom they actuate to see danger only on one side, and serve to veil and even second the arts of influence on the other.” 워싱턴 행정부에서 프랑스와의 동맹을 주장하며 중립노선을 놓고 연방파와 갈등을 빚었던 제퍼슨 역시 대통령 취임 후에는 중립원칙이 미국외교의 기본노선임을 기꺼이 인정했다(Paterson et.al., 1977:52). “우리 미국인들은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분열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착과 분열은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양국 모두와 절연하는 게 상책입니다. Our countrymen have divided themselves by such strong affections to the French and the English that nothing will secure us internally but a divorce from both nations.”

23) “평시에 적절한 방위태세로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한다면, 비상시에는 일시적 동맹에 의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Taking care always to keep ourselves, by suitable establishments, on a respectable defensive posture, we may safely trust to temporary alliances for extraordinary emergencies.” 패터슨(Paterson et.al., 1977:52)이 잘 지적했듯이, 이후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워싱턴 대통령은 대외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거나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워싱턴 대통령이 표명한 외교인식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 요소가 다분히 있다. 김기정(2009:45)의 다음과 같은 주장 역시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연설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다. “워싱턴은 미국이 유럽의 세력균형 정치판에 뛰어들어 간여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는 위험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자유가 실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패한 정부와 동맹을 맺게 되면 미국 또한 그들을 닮아가게 될 것이므로 미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4) “외부세계의 어느 지역과도 항구적인 동맹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책입니다. It is our true policy to steer clear of permanent alliances with any portion of the foreign world.”

워싱턴 대통령의 정책노선은 ‘불간섭’, ‘중립’, 그리고 ‘비동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워싱턴의 외교노선을 떠받치는 대외인식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혼재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예외주의라는 미국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동시대 유럽국가의 외교정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긴밀한 관련성, 곧 새로운 대표체의 건설이라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외교정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혼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워싱턴은 “국가 간에 진정한 후의를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일보다 더 큰 과오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관계가 국가이익에 근거한 냉정한 현실정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다른 나라의 사심 없는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다른 나라의 어떤 호의라도 일단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독립의 일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 그런 호의를 수용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호의를 우리도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오히려 왜 그것밖에 베풀지 않느냐는 식의 배은망덕한 비난까지 받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합시다.

constantly keeping in view, that it is folly in one nation to look for disinterested favors from another; that it must pay with a portion of its independence for whatever it may accept under that character; that, by such acceptance, it may place itself in the condition of having given equivalents for nominal favors, and yet of being reproached with ingratitude for not giving more.”

이와 동시에 훗날 윌슨이 주창한 이상주의 외교노선의 토대로 작용할 만한 견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에 대해 선의와 정의를 견지”하고 “모든 국가와의 평화와 화친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숭고한 정의와 전수정신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한”에서 그 과업은 “인류에게 관대하고도 매우 고상한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고 계몽되고 또 머지않아 위대하게 될 한 국민”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다.²⁵⁾

25) 권용립(2016:172-173)은 워싱턴의 ‘고별연설’을 틈새약소국의 생존을 위한 외교철학을 제시한 보편적 지침서로 간주하며, 여기에 집약된 워싱턴의 외교철학을 현실주의에 기초한 독자주의(Unilateralism)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독립전쟁과 혁명, 그리고 건국을 통해 드러난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라는 미국외교의 예외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미덕 또는 도덕이 대중정치의 필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도덕은 힘의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범주의 자유 정부들을 지배합니다. 자유정부의 성실한 동조자라면 누가 이 정부의 기초를 흔들려는 시도를 냉담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 목적으로서, 지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제도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의 구조가 여론으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데 비례해서, 여론의 계발이 필수적입니다.

It is substantially true, that virtue or morality is a necessary spring of popular government. The rule, indeed, extends with more or less force to every species of free government. Who, that is a sincere friend to it, can look with indifference upon attempts to shake the foundation of the fabric? Promote, then, as an object of primary importance, institutions for the general diffusion of knowledge. In proportion as the structure of a government gives force to public opinion, it is essential that public opinion should be enlightened.”

이 견해에 근거했을 때, 미국이 추구하는 비동맹과 중립 노선 역시 국가이익에 기초한 세력균형이 아닌 일련의 의무, 곧 “다른 나라와의 평화 및 우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할 자유를 가진 모든 나라들에게 정의와 인류애가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The duty of holding a neutral conduct may be inferred, without any thing more, from the obligation which justice and humanity impose on every nation, in cases in which it is free to act, to maintain inviolate the relations of peace and amity towards other nations.”

예외주의에서 비롯한 미국의 외교적 이상과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 사이에서 워싱턴이 세심하고 사려 깊은 성찰에 입각해 제시한 정책 대안이 바로 ‘불간섭’, ‘중립’, 그리고 ‘비동맹’이었다. 이 견해는 키신저(Kissinger, 2014:239)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잘 확인된다.

“프랑스 혁명 와중인 1796년에 임기가 끝난 워싱턴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미국이 ‘어떠한 외세와도 영원한 동맹 관계에 가까이 가지 않는 대신 특별한 위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동맹 관계에 안전하게 의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덕적 선언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상대적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심스러운 생각을 제시했다. 대양 뒤에서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던 미국은 세력 균형을 놓고 벌이는 대륙의 논쟁에 스스로 뛰어들 필요가 없었고 그럴 만한 자원도 없었다. 미국은 국제 질서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엄격하게 규정된 국익을 위해 동맹에 가입했다. 유럽의 균형이 유지되는 한 미국은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본토에서 세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더 큰 이득을 얻었다.”

워싱턴이 보았을 때, 미국이 견지할 외교정책의 대강은 모든 나라와 “협조”하고 “자유로운 외교”를 추구하며 평등한 입장에서 외국과의 통상에 힘쓰는 게 최선이었다. 워싱턴의 고별연설을 통해 드러난 외교 개념을 우리는 ‘계몽된 실용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문장은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인식과 관련하여 워싱턴의 견해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결론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에 대한 우리 행동의 대원칙은 우리가 상업관계를 확대하면서, 되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관련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맺어 놓은 계약들에 한해서는 완전한 신의를 지키고 그 계약들을 수행합시다.

The great rule of conduct for us, in regard to foreign nations, is, in extending our commercial relations, to have with them as little political connection as possible. So far as we have already formed engagements, let them be fulfilled with perfect good faith.”

IV. 결론

이 글은 미국 독립과 건국시기의 외교 개념을 독립과 자치, 중립, 비동맹,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독립과 건국 당시 미국은 유럽 열강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국력의 취약성을 미국의 건국시조들은 대서양이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중립과 자유무역이라는 사려 깊은 외교 전략을 통해 보완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건국 초기 미국 외교가 표방한 지향점을 ‘계몽적 실용주의’로 요약했다. 특히, 워싱턴의 고별연설이 미국의 전통적 외교 개념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미국 헌법은 국익과 시민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적 대표체계로서 갈등의 제도화를 표명했다. 건국 초기, 미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연방파와 공화파의 갈등이 극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파와 공화파는 워싱턴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증진을 위해 단결한 애국자들이었다. 일례로 연방파와 공화파의 핵심인물인 해밀턴과 제퍼슨이 협력해서 두 번째 출마를 고사하던 워싱턴을 설득해 재집권의 길을 닦았다는 사실이다. 당파의 지도자였지만 이들이 진정 우려했던 것은 미국의 파괴적 분열이었기 때문이다.

중립과 자유무역, 곧 “상업관계는 늘리되 정치적 관계는 최소화해야한다”는 미국이 따라야 할 행동의 대원칙으로 워싱턴이 제시한 ‘계몽된 실용주의’는 1823년 먼로 독트린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먼로 독트린은 비식민화(non-colonization), 불개입(non-intervention), 고립(isolation) 등 세 가지 원칙에 기초했다. 먼로 독트린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먼로 독트린에 대한 추론corollary 형식을 빌려 자신의 외교정책을 해석하고 정당화했다.

먼로독트린은 1920년대 월슨주의의 등장과 2차 대전 후 나토 등 각종 군사동맹을 맺기 전까지 한 세기 가량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춰주는 개념의 등대로 지속됐다. 루스벨트 추론 등 미국 대통령들의 외교정책이 먼로 독트린에 대한 각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먼로 독트린은 워싱턴 고별연설에 대한 추론이었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워싱턴과 먼로 등 건국시조들의 통찰력 있는 혜안 덕에, 1812년 전쟁 등 외교적 실패가 있었긴 했지만, 19세기 내내 미국은 대외적 안보와 경제번영을 구가했고, 20세기에는 유럽 열강에 견줄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권용립. 1997. 『미국 대외정책사』. 서울: 민음사.
- _____. 2010. 『미국외교의 역사』. 서울: 삼인.
- _____. 2016.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 틸새약소국 외교철학의 텍스트. 『미국사연구』 제44집.
- 김기정. 2009. “미국외교의 이념적 원형과 현대적 의미.” 이범준 외. 『미국 외교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 김봉중. 2007. “미국 초기 외교의 이상과 현실: 토마스 페인과 상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6집.
- 김용구. 2004.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은. 2011. “후기 워싱턴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고별사.” 『역사학연구』 제41집.
- _____. 2018. “1796년 워싱턴 고별사의 사상적 기원.” 『역사학연구』 제70집.
- 김형인. 2003. 『미국의 정체성』. 파주: 살림.
- 박보균. 2005. 『살아 숨쉬는 미국역사』.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이삼성. 2014. 『제국』. 서울: 소화.
- Allison, G. 2018.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정혜윤 옮김. 서울: 세종서적.
- Ambrose, S. E. & D. G. Brinkley. 2011. *Rise to Globalism: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1938*. New York: Penguin Books.
- Brinkley, A. 2005.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제1권. 황혜성 외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 Clifford, G. 1994. “‘They don’t come out where you expect’: Institutions of American Diplomacy and the Policy Process.” in G. Martel (ed.).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London: Routledge.
- Combs, J. A. 1970. *The Jay Treaty: Political Battleground of the Founding Fath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rwin, E. 1957. *The President: Office and Powers 1787-1957*.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ilbert, F. 1970. *To the Farewell Address: Ideas of Early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rsman, R. 1981. *Race and Manifest Destiny: The Origins of American Racial Anglo-Saxo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 M. 1987. *I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Tradition of American diplomacy: from colony to great power." in G. Martel (ed.).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riye, A. 1991. "Culture and International History." *Explaining in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Johnson, P. 2016. 『미국인의 역사』 제1권. 명병훈 옮김. 파주: 살림.
- Johnson, R. D. 1994. *On Cultural Ground: Essay in International History*.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 Kegley, Jr., C. W. and Eugene R. Wittkopf. 2008.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6th ed. New York : St. Martin's Press.
- Kennan, G. F. 2012.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nnedy. P. 1989.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Vintage Books.
- Kissinger, H.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 _____. 2014. *World Order*. New York: Penguin Press.
- Lipset. S. M. 1982. 『미국사의 구조: 국민형성과 민주주의의 사회적 조건』. 이종수 옮김. 서울: 한길사.
- _____. 2006. 『미국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정당이 없는가』. 문지영 외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Madison, James, Alexander Hamilton and John Jay. 1961. *The Federalist Papers*. New York and Toronto: The New American Library.
- Mearsheimer, J. 2004.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춘근 옮김. 서울: 나남.
- _____. 2012. "An New Introduction." in G. F. Kenna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ddlekauff, R. 2017. 『위대한 대의: 미국혁명 1763-1789』. 이종인 옮김. 서울: 사회평론.
- Nordlinger. E. 1995. *Isolationism Reconfigured: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New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ine, T. 1995. "Common Sense." *Rights of man, Common Sense,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terson, T. G., J. G. Clifford & K. J. Hagan. 1977.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Lexington, MA: D.C. Heath.
- Rossiter, C. 1966. *1787: The Grand Convention*. New York: Macmillan.
- Tocqueville, A. 1997. 『미국의 민주주의』. 임효선 외 옮김. 서울: 한길사.
- Zakaria, F. 1998. *From Wealth to Power: The Unusual Origins of America's World Rol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최형익,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 불간섭, 중립, 비동맹 개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미국의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의 탄생을 분석하는 큰 작업의 서두. 그 핵심을 불간섭, 중립, 비동맹으로 정리하고 연원을 추적하고 있음. 미국의 외교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외교 개념과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 독립과 혁명, 건국을 거치면서 전개된 정치적 대표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대외인식과 국가건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통찰이 돋보임.
- 현재 원고는 큰 붓을 들고 빠른 속도로 그려나간 그림의 형태. 향후 작업에서 두 가지 방향의 보완을 고려해주시길.
- (1) 대표체계의 구성과 대외 인식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주장이 제시되었지만, 그 연결고리를 좀 더 밀도 있게 설명할 필요. Paine에 대한 토론을 제외하고는 두 사안이 다소 병렬적으로 전달되면서 ‘관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은 인상. 예컨대 헌법제정 당시의 논쟁에 대한 토론에서는 대외인식의 문제가, Washington의 고별 연설에서는 대표체계의 문제가 다소 빈약하게 다뤄지고 있음
- (2) 식민지 시기에서 Washington의 고별연설에 이르기까지 긴 시기를 짧은 지면 안에 다루면서 여러 계기들(식민지 시기 본국과의 관계, Paine의 정치사상, 독립선언문,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대표체계 논쟁, Washington의 고별연설) 간의 연속성이 전면에서 제시되고, 복잡한 논쟁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 내적 긴장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 각각의 계기들 사이의 연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우선 아래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듯.
- 영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의 대표 관련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은 virtual representation의 문제.
- Paine의 정치사상을 당시의 논쟁 맥락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loyalists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 예컨대 Chalmers의 *Plain Truth*는 특히 영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잘 보여줌.
- 연방정부 수립 이전은 물론이고 연방정부의 권한이 미약했던 건국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참정권, 종교, 노예 등 많은 굵직한 사안들이 사실상 각 주들의 “내치”의 문제로 간주되어 이 문제들이 다뤄지는 방식의 편차가 상당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 Paine의 정치사상은 몇 가지 지점에서 이후 연방주의자들과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예컨대 Paine이 주창한 “large and equal representation”에 기반한 공화정은 연방주의자들이 아니라 반연방주의자들의 구상에 가까움. 연방주의자들이 내세운 compound republic은 인민의 의견과 의지가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대표체계 하에서 걸려져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희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즉 연방주의자들의 입장

을 limited popular government, 반연방주의자들의 입장을 popularly limited government라고 정리해본다면, Paine의 경우는 후자에 더 가까운 측면. (유사한 맥락에서 Paine의 극렬한 군주제 비판과 Hamilton의 대통령제 구상에도 상당한 간극)

- 이 관점에서 미국정치사를 관통(?)하는 두 저류를 Jeffersonian radical liberalism-republicanism (natural rights, democratic republic)과 Madisonian institutionalism-constitutionalism (state-building and maintenance)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적 긴장을 염두에 두고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의 문제를 추적하면 논의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 정치적 대표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미국에서 one people로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추적 또한 외교 개념과 대외 인식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연결될 수 있을 듯. 독립선언문은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로 시작하면서 미국인이라는 “one people”이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당시 맥락을 고려하면 앞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선언의 의미에 가까움. 헌법 제정 당시의 대표체계 논쟁과 이후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깔려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 예외주의가 이 논문의 키워드 중 하나이니 관련된 연구를 좀 더 폭넓게 검토하고 포함할 필요. 그리고 Paine의 발언을 “미국 예외주의의 원형이 탄생한 순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 초기 식민지 시기 청교도들부터 이러한 예외주의적 인식은 미국사의 저류를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을 듯. 예컨대 a city upon a hill의 수사.

